



법무부



Institute of Crime Science
범죄과학연구소

외국 셉테드 사업 추진 사례 연구용역

원고

2016. 12.

연구기관

범죄과학연구소(ICS)
용인대학교 산학협력단

• 연구진 •

<연구책임자>

용인대학교 경찰행정학과 교수
산학협력단 범죄과학연구소 소장
박 현 호

- 목 차 -

제1장 서론	1
1. 연구분석의 범위 및 방법	1
2. 1세대 CPTED와 2세대 CPTED	1
제2장 외국의 CPTED 법규·정책 사례	1
1. 국제연합(UN)과 유럽연합(EU)	
가. UN 범죄예방 관련 표준 및 가이드라인	
1) UN 범죄예방표준	1
2) UN 범죄예방가이드라인 핸드북	1
나. 유럽도시헌장(European Urban Charter) 및 유럽 CLRAE	1
2. 영국	1
3. 미국	1
4. 캐나다	1
5. 호주	1
6. 네덜란드 및 일본	1
7. 요약 및 소결	1
제3장 외국의 CPTED 표준화 사례	1
1. CPTED 표준의 2대 유형 : 시스템표준과 제품성능표준	1
2. CPTED 관련 시스템 표준	1
3. CPTED 관련 방법제품 성능표준	1
제4장 외국의 CPTED 인정·인증 사례	1
1. CPTED 관련 인정·인증	1
2. CPTED 계획·설계 프로세스(시스템) 인정·인증	1
가. 건축물/공간 별 CPTED 인정·인증	1
1) 영국의 SBD인정	
2) 네덜란드의 PKVW	
3) 일본의 방법우량맨션인정	
4) 비교 분석	
나. 주차시설 방법우수환경 CPTED 인정	1
1) 각 국별 주차시설 방법우수환경 인정제도	1
2) 주차시설 방법우수환경 인정제도 비교표	

3. CPTED 관련 방법하드웨어 성능 시험 및 인증	1
가. 영국의 SBD인증과 LPS인증	1
나. 네덜란드의 SKH/SKG 인증	1
다. 일본의 CP인증	
라. 호주의 국가표준 AS5039 인증	
마. 미국의 ASTM 등 인증	
바. 비교	
제5장 외국의 CPTED 실행 사례	1
1. 제1세대 셉테드 사례	1
가. 북미의 셉테드 사례	1
1) 미국	1
2) 캐나다	1
나. 유럽의 셉테드 사례	1
1) 영국	1
2) 네덜란드	1
3) 덴마크	1
다. 오세아니아·아시아 셉테드 사례	1
1) 호주 및 뉴질랜드	1
2) 일본	1
3) 싱가포르	1
4) 말레이시아	1
2. 제2세대 셉테드 사례	1
가. 범죄예방 책임공유(Shared Responsibility)	1
나. 민관 파트너십(Partnership)	1
다. 지역범죄예방 네트워크	1
라. 참여형 범죄위험평가와 범죄안전지도 작성	1
마. 주민자원 범죄예방 프로그램	1
1) 자원방범순찰활동(Voluntary Patrol Service)	1
2) 이웃감시(Neighbourhood Watch)	1
바. 주민 범죄예방 교육훈련	1
1) 지역안전네트워크 교육	1
2) 자원방범순찰대원 교육훈련	1
3) 시민법집행아카데미(Citizen's Law Enforcement Academy)	1
사. 범죄신고 유도 및 범죄예방 홍보 프로그램	1
아. 주민/사법기관 협의회의 활성화	1

제6장 결론 및 제안점1

[부록] '주민 커뮤니티 셉테드' 성공사례1

1. 케이스 1 : 영국 리버풀의 골목게이트(Alley-gating) 설치 사업 1
2. 케이스 2 : 영국 중부 Mansfield 주상복합지구 환경개선사업 1
3. 케이스 3 : 미국 신시네티의 케네디하이츠 지역 마약거래 퇴치 1

[표 목차]

<표 1> 영국 Manchester, 호주 NSW, 미국 Crime Index의 유사점	6
<표 2> 국내 셉테드 관련 인증 사례의 구분 표	16
<표 3> 주요 3개국과 한국의 CPTED인증체계 비교	17
<표 4> 일본의 방범우량주차장 인증 심사기준(동경도, 실내.지하)	22
<표 5> 인천지방경찰청 관내 아파트 지하주차장 현황	23
<표 6> 연구방법론	26
<표 7> 최근 4년간 장소별 범죄발생 통계	27
<표 8> 최근 4년간 장소별 범죄발생 통계	29
<표 9> 범죄발생 주요 장소별 강력범죄발생건수 비교	31
<표 10> 주차장과 편의점의 강력범죄 발생비교(2014년)	32
<표 11> 최근 5년 간 주차장 발생 강력범죄 사건 개요 및 문제점	33
<표 12> 주차시설 진단평가 개발을 위한 해외 문헌자료	37
<표 13> 각 국 별 평가 체크리스트 비교	38
<표 14> 주차시설 진단평가 기준 개발을 위한 국내 문헌자료	39
<표 15> 아파트 지하주차장 안전평가 체크리스트	41
<표 16> 방범환경 우수주차장 인정 평가 항목표	67
<표 17> 평가 분야 별 항목의 개수	70
<표 18> 최종 평가 항목 및 기준 체크리스트	82
<표 19> 평가 분야 별 항목의 수와 배점	86
<표 20> 국가 별 방범환경 우수주차장 인정마크	90
<표 21> 국가 별 방범환경 우수주차장 인정 주관기관	92
<표 22> 국가 별 방범환경 우수주차장 인정 평가 기준 및 방식	96
<표 23> 국가 별 방범환경 우수주차장 인정 심사 탈락 시 조치	97
<표 24> 국가 별 주차장 인정체계 비교표	98
<표 25> 방범시설 우수 주차장 인정제 도입을 위한 세부항목 설계	100

[그림 목차]

<그림 1> CPTED 범죄위험평가의 3대 요소	3
<그림 2> 인정 및 인증체계	8
<그림 3> 영국 SBD 시스템 및 제품 (공식)인증마크	10
<그림 4> PKVW 및 SKG/SKH 인정 마크	12
<그림 5> 동경 및 아이치현의 방법우량맨션 인증마크	14
<그림 6> 영국 Park Mark와 활용사례	19
<그림 7> 호주 멜버른 주차장 인증 및 활용사례	20
<그림 8> 뉴질랜드 주차장 인증 및 활용사례	21
<그림 9> 일본의 방법우량주차장 인증 절차도(좌) 및 인증간판(우)	21
<그림 10> 범죄예방시설 우수 안심주차장 인증패	24
<그림 11> 방법시설 우수 안심마트 인증패	24
<그림 12> 울산 방법시설 우수 안심마트(이마트) 사례	25
<그림 13> 최근 4년간 주차장 총 범죄발생건수	29
<그림 14> 최근 4년간 주차장 죄종별 범죄발생건수	30
<그림 15> 천호역 공영주차장 위치	43
<그림 16> 인력 배치 없이 자동화가 이루어진 천호역 공영주차장	44
<그림 17> 천호역 공영주차장 내 주차장 관리소	45
<그림 18> 천호역 공영주차장의 출입구와 사각지대	45
<그림 19> 천호역 공영주차장의 조도 차이	46
<그림 20> CCTV 녹화중임을 알려주는 표지와 녹화중인 CCTV	46
<그림 21> 천호역 공영주차장의 접근통제시설	47
<그림 22> 지하 1층의 주황색 도색과 지하 2층의 연두색 도색	47
<그림 23> 영역성이 잘 드러나도록 명시한 천호역 공영주차장	48
<그림 24> 비상벨 설치가 필요한 공간에 비상벨 시설의 부재	49
<그림 25> 지하철역으로 이어지는 주차장 출입구의 활발한 활동성	49
<그림 26> 현대백화점 천호점 위치	50
<그림 27> 현대백화점 천호점 주차장의 관리운영 요소	51
<그림 28> 현대백화점 천호점 주차장의 CCTV와 통유리 창	51
<그림 29> 현대백화점 천호점 주차장의 밝고 고른 조명	52
<그림 30> 현대백화점 천호점의 접근통제 및 영역성	52
<그림 31> 현대백화점 천호점 주차장의 비상벨 설치	53

<그림 32> 서울 코엑스 위치	54
<그림 33> 서울 코엑스 주차장의 관리운영 요소	55
<그림 34> 서울 코엑스 주차장의 CCTV	55
<그림 35> 서울 코엑스 주차장의 조명과 사각지대 센서 조명	56
<그림 36> 서울 코엑스 주차장의 접근통제 및 영역성	56
<그림 37> 서울 코엑스 주차장의 방범 및 안전시설	57
<그림 38> 롯데마트 천안아산점 위치	58
<그림 39> 롯데마트 천안아산점 주차장의 관리운영 요소	58
<그림 40> 롯데마트 천안아산점의 주차장의 CCTV	59
<그림 41> 롯데마트 천안아산점의 주차장의 조명과 사각지대	59
<그림 42> 롯데마트 천안아산점의 접근통제 및 영역성	60
<그림 43> 롯데마트 천안아산점의 방범 및 안전시설	61
<그림 44> 광명 IKEA 아울렛 위치	62
<그림 45> 광명 IKEA 아울렛 보안요원	62
<그림 46> 광명 IKEA 아울렛의 벽면	63
<그림 47> 광명 IKEA 아울렛의 CCTV부착 현황	64
<그림 48> 무인상태로 방치되어있는 광명 IKEA아울렛의 주차장 관리 부스	64
<그림 49> 외부 침입에 취약한 광명 IKEA 아울렛 주차장	65
<그림 50> 광명 IKEA 아울렛의 조명	65
<그림 51> 방범시설에 대한 안내가 전무한 주차장	66
<그림 52> 스타필드 하남의 위치	71
<그림 53> 스타필드 하남의 예상 조감도	71
<그림 54> 스타필드 하남의 보안관제센터와 주차관제센터	73
<그림 55> 스타필드 하남 주차장에 설치된 주차공간표시등 내장형 카메라 시스템	73
<그림 56> 스타필드 하남 주차장 출입구에 설치한 CCTV	74
<그림 57> 스타필드 하남 주차장에 설치된 서치라이트 카메라 시스템	74
<그림 58> 스타필드 하남 진입로에 설치된 무적차량검출 시스템	75
<그림 59> 스타필드 하남의 주차장 조명	76
<그림 60> 스타필드 하남의 차량번호인식 시스템	77
<그림 61> 스타필드 하남의 주차장에 설치된 CCTV시스템	77
<그림 62> 스타필드 하남의 경찰 경광등 시스템	78
<그림 63> 스타필드 하남 주차장 내 비상구 최하단층 후면 공간	79

제1장 서론

1. 연구분석의 범위 및 방법

이 보고서는 주로 기존 국내외의 정부 및 공공기관의 통계 및 보고서, 연구 보고서 및 학술저널 등 학술문헌, 관련 웹사이트 등의 자료에 대한 2차 분석(secondary analysis)과 필자가 해당 국가들에 2001년~2015년 사이에 영국, 독일, 네덜란드, 호주, 일본, 미국, 말레이시아 등 현지를 직접 방문하고 관찰하여 수집한 각종 자료, 직접 촬영한 사진 이미지 등을 바탕으로 기술하고 있다. 즉, 질적 연구방법 중에서도 대표적인 비교사례연구를 통해 분석된 내용을 보고서 중간 중간에 포함하였다.¹⁾ 비교연구(Comparative study)는 방법론적으로 명백하고 뚜렷한 개념 정의나 범위가 존재하지는 않지만, 장소(국가 간, 지역 간 등) 및 시간에 따른 비교가 가장 흔하게 활용되는 방법이다.²⁾ 특히 이 연구에서는 사례의 수를 기준으로 한 분류에서는 복수사례설계(multiple case design)³⁾를 적용하였고, 국가 및 제도 간 사례비교에서는 가능한 한 많은 체계에서 유사 사례들을 비교분석하고 체계 간 차이점은 설명변수로 취급되는 최대유사체계설계⁴⁾를 반영하였다.

유럽, 아메리카, 아시아, 오세아니아 등 대륙과 국가 별로 법적, 제도적, 문화적 차이로 인해 상호 비교하는 것은 다소의 한계가 존재하는 것은 분명하나 그런 차이에도 불구하고 국가 간 글로벌 인터넷 구축과 국제화로 인한 정보교류와 UN, EU를 비롯한 국제공동체의 국제 기준의 마련과 보급으로 인한 사례들 간의 격차 해소를 많은 유사점과 공통점이 발견되고 있고 이 연구에서도 그러한 발견점들을 최대한 많이 제시하고자 하였다.

2. 1세대 CPTED와 2세대 CPTED

이 연구에서는 기본적으로 1세대 셉테드와 2세대 셉테드(Saville & Cleveland, 1997)에 관한 외국의 사례를 모두 분석하여 제시하기로 한다. 여기서 1세대 셉테드란 조경, 조명, CCTV, 비상벨, 출입차단기, 잠금장치, 볼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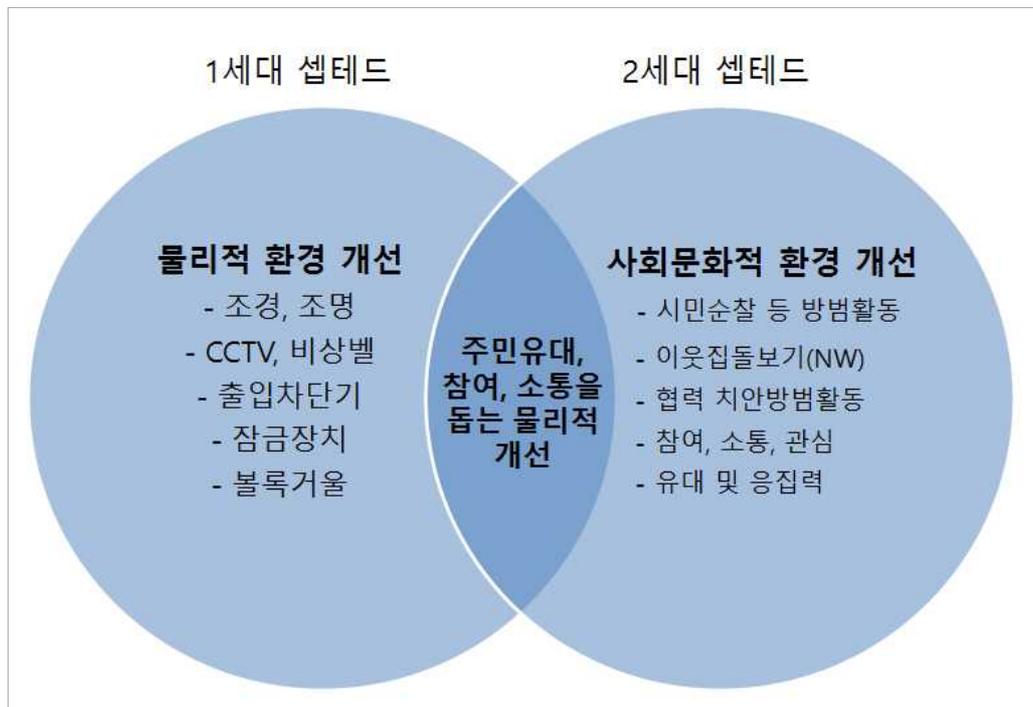
1) 필요시 해외 전문가와의 전화 및 전자우편 연락 등을 통한 면접조사를 병행하였다.

2) Heidenheimer, Arnold J., Hugh Hecl, Carolyn Teich Adams (1983). Comparative Public Policy. St. Martin's Press.

3) Yin, R. K. (2009) Case Study Research: Design and Methods, 4th ed., Beverly Hills: Sage, 2009.

4) 남궁 근(2013) 행정조사방법론(제4판), 법문사. p.412

거울 등과 같은 물리적 환경의 개선이 주가 되는 접근방법을 말하며 2세대 셉테드란 지역커뮤니티의 사회문화적 정체성 확보, 사회적 유대(social cohesion), 공동체 의식(sense of community)의 고양을 통한 비공식적 범죄 통제를 유도하는 폭넓은 사회발전 프로그램 요소인 자위방법(self-policing) 순찰을 포함한 주민의 참여행정, 청소년 건전 활동의 장려 및 유도, 시민 모임 공간 확대 등의 접근을 말한다.



<그림 > 1세대와 2세 셉테드

이를 좀 더 크게 보면 Welsh와 Farrington(2010)이 제시한 상황적 범죄예방(situational prevention strategies)과 지역공동체 범죄예방(community prevention strategies)의 구분과도 일맥상통하는 면이 있다고 할 수 있다. 상황적 예방이란 범죄행위의 기회를 줄이고 범행의 위험도와 곤란도를 높임으로써 범죄발생을 예방하는 개입 전략이며, 지역공동체 예방은 주거 공동체에서 범죄에 영향을 미치는 사회적 조건과 기관들, 단체들(예: 가족, 동료, 사회규범, 모임, 조직체 등) 간의 상호작용과 사회적 프로세스를 자문, 협의, 범죄예방 워크숍, 범죄안전지도 작성, 친교활동, 범죄안전마을 브랜드 사업, 전시회 및 축제, 컨퍼런스, 교육훈련 등 다양한 방법으로 개선하여 공동체 의식을 개선함으로써 범죄를 방지하는 전략을 말한다.⁵⁾

5) Welsh, Brandon C., and David P. Farrington. 2011. "Evidence-Based Crime Policy." In The

주민들 간의 결속과 유대가 활성화되는 것은 여러 주체가 설득과 협의라는 과정을 거치지 않으면 쉽게 이루어지기 어려울 것이다. 먼저 이러한 사업에 대한 필요성과 중요성을 인식하는 정치적인 철학이 바탕이 되어 지자체, 경찰 등 공공기관에서 이 사업을 추진할 수 있는 기반을 갖추어야 한다. 즉 예산을 편성하고 담당 부서를 지정하여 사업을 기획하고 주민들의 동의를 구하는 등 관공서의 노력만으로는 부족하므로 예산이 부족한 부분은 지역의 기업이나 단체 등에서 후원하고 해당 지역의 주민들이 적절히 참여할 수 있도록 담당 공무원들이 주민들을 적극적으로 설득해서 공감하고 따를 때 사업이 제대로 실현될 수 있는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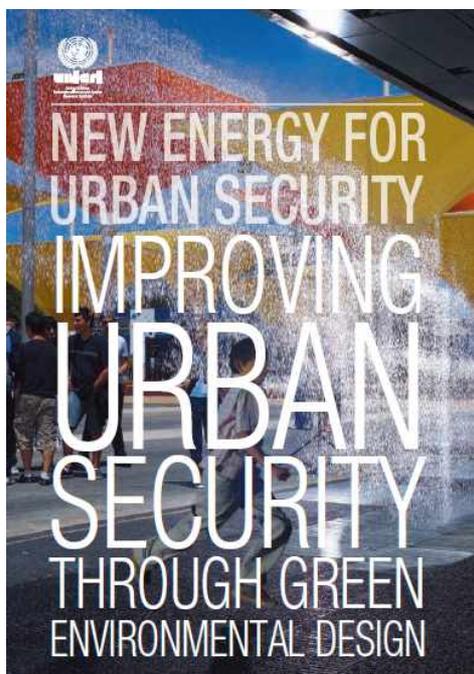
따라서 2세대 셉테드의 방식은 크게 2가지로 볼 수 있다고 생각되는데, 그것은 주민들의 순수하게 자발적인 방식에 의한 셉테드 프로그램과 관이나 제3자의 개입을 통한 셉테드 프로그램이다. 그러나 순수하게 자발적인 경우라도 관이나 관련 시민단체에서 작은 범위 내에서라도 개입 또는 지원하지 않으면 체계성이 약한 단점이 존재할 것이다. 또한 주민들 간의 유대, 참여, 소통을 돕거나 도울 수 있는 형태의 물리적 환경 변화(예를 들면, 정자나 쉼터 등 주민 모임공간 마련, 주민들이 같이 사용하는 뒷마당의 배치)는 사회적 환경 변화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에 1세대와 2세대 셉테드가 중첩된 회색영역(grey area)의 셉테드로 보아야 할 것이다. 주민 참여는 없이 관에서 예산을 지원하여 페인트 업체나 공공디자인 업체에서 직접 페인트 칠을 하거나 벽화를 그려 넣는 것은 1세대 셉테드라고 한다면 서울시 마포구 염리동의 경우처럼 주민들이 사는 집 담장에 자신들이 직접 페인트 칠을 하면서 오랫동안 서로 잘 모르던 이웃주민들끼리 정다운 대화를 나누기 시작하고 즐거운 교류를 하는 상황으로 마을 환경이 개선되는 것은 회색영역 셉테드인 것이다.

이런 맥락에서 이 연구에서는 1세대 셉테드와 2세대 셉테드의 외국사례들을 굳이 엄격히 구분해서 설명하기 보다는 혼합적인 방식으로 서술하고자 한다. 이는 단순히 수명이 다한 가로등이나 보안등 몇 곳의 전구를 교환하는 일 정도를 이른바 '지역 셉테드 사업 또는 프로그램'이라고 보긴 어려우며, 특히 최근의 외국의 셉테드 접근방식은 단순한 조명 개선 등 1세대적 물리적 환경 개선사업 하나만을 하기 위해서도 지자체나 경찰 등 관계기관이 주민에게 의견을 묻고, 범죄위험 관련 진단·평가 단계에 주민들이 참여하여 서로 논의하고

Oxford Handbook on Crime and Criminal Justice, edited by Michael Tonry. New York: Oxford University Press, in press.

소통하는 과정을 거치는 경향들을 볼 때 1세대와 2세대 셉테드를 뚜렷하게 구분하는 것이 용이치 않으며 실익도 크지 않기 때문이다.

한편 3세대 셉테드(the 3rd Generation CPTED)라는 개념도 제시된 바 있는데, 2011년에 UN 산하 지역범죄및형사사법연구소인 UNICRI와 미국 MIT 대학이 공동연구하여 발표한 “Improving Urban Security through Environmental Design”라는 연구보고서에서 구체적으로 제안한 개념이다.⁶⁾



<그림 > 3세대 셉테드에 대한 UN 연구보고서

3세대 셉테드의 기본 개념은 ‘도시의 생활 기준을 제고하고 도시의 이미지를 사용자-친화적이고, 안전/안심한 것으로 개선하기 위한 친환경적이고, 지속 가능하며, 기술적으로 진보된 접근방법’이다. 핵심 내용은 셉테드에 친환경(에코) 디지털 하이테크 솔루션(예 : 방법기능을 하는 다용도 친환경 공공시설물이나 안전감을 높여주는 공공장소의 인터랙티브 공공미술)을 적용하는 것이다.

THIRD-GENERATION CPTED Inspirations: a green, sustainable, technologically enhanced approach to enhancing the living standards of urbanites and improving the image

6) UNICRI(2011) Improving Urban Security through Environmental Design: New Energy for Urban Security.

of the city as user-friendly, safe, and secure.

이 보고서는 사회문화적 다양성을 수용하고 공동체의 참여와 관심을 유도함으로써 집합효율성을 높이려는 사회문화적 셉테드 접근방법인 2세대 셉테드 개념을 최초 제안한 Greg Saville 박사를 통해 2013년에 리뷰되었고, 이 3세대 셉테드 개념에 대한 리뷰 결과는 매우 긍정적이었다. 자세한 내용은 Saville 박사의 개인 블로그에 게시되었다.⁷⁾ 따라서 세계의 선진화된 셉테드는 이러한 2세대 셉테드를 넘어서 친환경-하이테크기술⁸⁾ 중심의 3세대 셉테드를 향하여 꾸준히 정진하고 있는 상황으로 해석될 수 있다.

7) <http://safe-growth.blogspot.kr/2013/06/3rd-generation-cptd-and-eco-friendly.html>

8) 3세대 셉테드는 스마트시티 조성의 개념과 연결된다고 할 수 있다. 스마트 첨단 정보통신기술(ICT)을 이용해 주요 도시의 공공기능을 네트워크화한 이른바 똑똑한 도시로서 언제 어디서나 인터넷 접속이 가능하고 영상회의 등 첨단 IT 기술을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는 미래형 첨단도시를 일컫는다. 실시간으로 교통정보를 얻을 수 있어 이동거리가 줄고, 원격근무가 가능해지는 등 거주자들의 생활이 편리해질 뿐만 아니라 이산화탄소 배출량도 줄일 수 있다는 측면에서 친환경적이다. 스마트 시티 [smart city] (시사상식사전, 박문각)

제2장 외국의 CPTED 법규·정책 사례

해외의 CPTED 관련 법규와 조례는 아래 <표 3-1>와 같이 정리될 수 있다. 전체적으로 보면 범죄와 무질서의 대응과 예방에 대해 범죄의 도시환경적 요인과 변수를 다루는 관계 기관들, 특히 시청, 구청 등 지방자치단체가 범죄의 주무 기관인 검찰, 교정국, 경찰 등 사법기관과 공동으로 범죄예방을 위한 도시환경의 구축과 개선을 위해 책임을 지고 범죄 위험평가(crime risk assessment) 또는 범죄영향평가(crime impact statement) 조사를 하며, 그 조사에 의해 밝혀진 위협 요인들과 그 취약성 및 범죄 발생 확률들을 측정하고 이를 토대로 그러한 위협을 방지하거나 다루기 위한 해결책을 찾아 이를 실행하고 있다.

<표 3-1> 해외의 CPTED 관련 법규·정책·가이드라인

국가	법규·정책·가이드라인 명칭
UN, EU	<ul style="list-style-type: none"> • UN 범죄예방표준(Standards & Norms) • UN 범죄예방가이드라인 핸드북 • 유럽도시헌장(European Urban Charter) • 유럽 지자체총협의회(CLARE) 결의문
영국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범죄와무질서법(Crime & Disorder Act 1998) • 지속가능한주택코드(Code for Sustainable Homes) • 정부도시계획정책고시(Planning Policy Statement) • 건축법 승인문서(Approved Document) Q
미국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아리조나 템페시 셉테드 조례(Ordinance) • 플로리다 주 편의점 안전법(Convenience Business Security Act) • 빌딩(또는 계획) 코드⁹⁾
캐나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온타리오 주 도시계획법 • British Columbia 건축법 개정 • 벤쿠버와 토론토의 주차장 CPTED 법제화
호주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환경계획평가법(EPAA) 2001 • 빌딩 코드(Building Code of Australia) • 셉테드 가이드라인
네덜란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주택법 1999 • 건축법 2004
일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가나자와현 ‘범죄없는 안전·안심 마찌쓰쿠리’ 조례 • 관민합동회의 ‘건물부품의 방범성능 시험규칙’ • ‘방범우량맨션 인증사업지원 요강’ 및 ‘방범우량맨션표준인증규정’

9) Building Code란 주로 건물을 지을 때 필요한 최소한의 보건, 안전 등의 기준을 말하는 것이다. 빌

1. 국제연합(UN)과 유럽연합(EU)

가. UN 범죄예방 관련 표준 및 가이드라인

1) UN 범죄예방표준(UN standards and norms in crime prevention)

UN 범죄예방표준은 유엔범죄예방국(UNODC)에서 유엔 회원국들이 범죄예방과 형사사법 분야에서 지난 수십 년간 동의하고 합의해 온 범죄예방의 원칙적 기준들로서 이 표준을 근거로 회원국들은 범죄예방과 형사 정책을 수립하여 이행하도록 권고되어 왔다. 이 UN 표준의 다음의 8대 기본 원칙(basic principles)을 기초로 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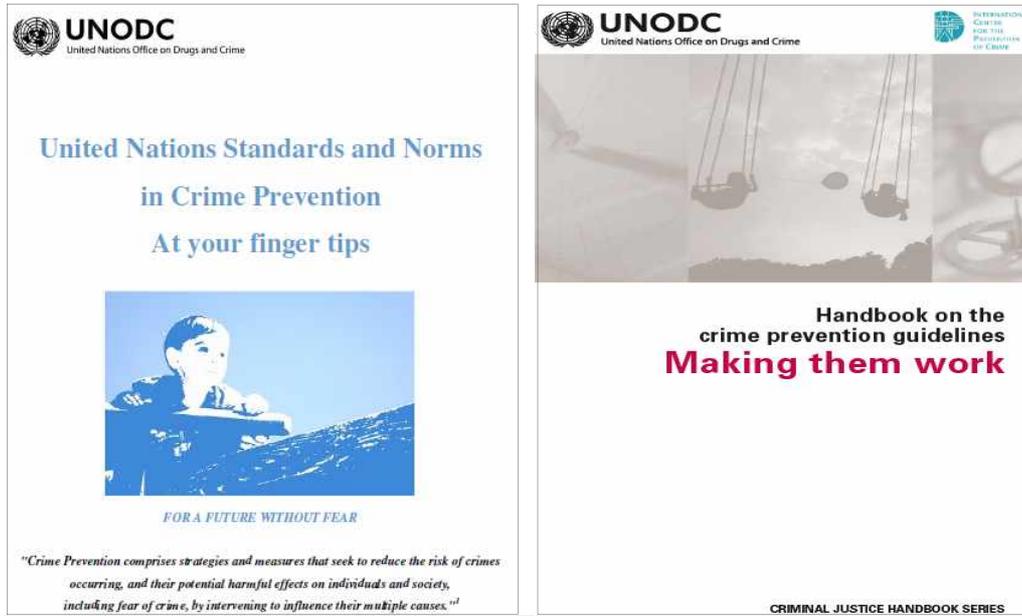
- ① 중앙 및 지방 정부 리더쉽
- ② 사회경제적 발전 및 통합
- ③ 협력/파트너십 거버넌스
- ④ 지속가능성 및 책임성
- ⑤ 지식 기반
- ⑥ 인권/법의 지배/준법문화
- ⑦ 상호의존성(국제성 범죄 대응을 위한 국가 간, 지역 간 의존)
- ⑧ 배려(사회적 취약집단의 고려)

이러한 원칙을 이행하기 위한 조직, 방법, 접근(organization, methods, approaches)의 기준을 구체적으로 제시하고 있다. 먼저, 조직화 면에서 중앙 정부조직에 범죄예방 주무 조직을 반드시 배치해서 거시적 방향과 총체적 모니터링을 하는 것이다. 또한 교육 및 역량강화(capacity-building)을 지원하며 지역 범죄예방파트너십 지원 역할을 배분하고, 지속가능성(효과적인 범죄예방 프로그램의 지속성 확보, 합리적 범죄예방 자원 배분, 예산확보, 프로그램 개발, 조정, 지역사회 참여 독려)을 확보하기 위해 노력하는 것이다. 둘째, 방법론으로는 지식 기반으로 예방 프로그램을 기획(범죄 문제, 그 원인, 위험요인과 영향에 대한 체계적 분석)하고 방법 효과에 대해 단기/중기/장기의 평가를 지속하는 것이다. 셋째, 접근방식은 사회발전을 통한 범죄예방, 상황적 범죄예방, 조직화된 범죄의 방지라는 3대 분야를 동시에 다루면서 균형있는 예방 전략을 접근하는 것이다.

딩코드는 건축자재 뿐만 아니라 공법에 대해서도 언급하고 있는데 건축업자들은 반드시 빌딩코드에 따라 공사를 해야 하며 종목이 끝날때마다 시에서 승인을 받아야 한다.
http://en.wikipedia.org/wiki/Building_code 참고

2) UN 범죄예방가이드라인 핸드북(UN Handbook on the Crime Prevention Guidelines)

UN 범죄예방가이드라인 핸드북은 회원국들이 UN 범죄예방표준에 있는 범죄예방과 형사사법 전략과 원칙적 기준들을 잘 준수하고 이행하는 것을 돕기 위해서 UNODC가 개발한 실무적 도구(practical tools) 중의 하나이다. 여기서 제시하는 4대 범죄예방 유형은 사회발전을 통한 범죄예방, 지역공동체중심 범죄예방, 상황적 범죄예방, 그리고 재통합을 통한 재범방지이다. 첫 번째인 사회발전(social development)을 통한 범죄예방은 지역사회에서 보건, 주거 및 고용의 개선과 소외감을 낮추고 사회 갈등을 해결하며 준법문화 교육을 통하여 가능한 유형이다. 둘째, 지역공동체 중심(local community-based) 범죄예방은 지역공동체의 주민, 기업, 단체가 적극적으로 참여하여 범죄 문제를 발견하고, 예방 대책을 수립하여 공동으로 실천하는 방식으로서 사회적 자본과 관계망, 신뢰, 가치의 공유, 사회적 응집력을 중시하며 범죄문제가 집중되는 도심이나 교외의 주택 개발을 통한 지역 개선이 주를 이룬다. 셋째, 상황적(situational) 범죄예방은 환경설계개선(조명, 조경, 개방적 건축물), 타겟하드닝(target hardening)과 접근통제, 범죄에 대한 자연감시와 전자감시(CCTV), 제품디자인, 피해재발 방지라는 범죄 기회의 회피나 감축을 통한 예방이다. 마지막으로 재통합(reintegration)을 통한 재범예방은 출소자, 비행청소년의 재범방지를 위해 직업훈련, 교육, 대안적 라이프스타일, 롤모델, 주거의 제공, 갈등 해결, 회복적 사법(피해자-가해자 중재, 가족/공동체 그룹 컨퍼런싱 등)에 의한 재범의 예방을 의미한다.



<그림 > UN 범죄예방표준과 범죄예방가이드라인 핸드북

연관되는 패러다임인 “제3자 폴리싱”(Third party policing: TPP)은 범죄예방의 범위를 넓혀서, 범죄자의 환경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영향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의 예방활동을 포함하는 개념이다. 즉, 범죄를 통제하고 예방하는 노력을 지역공동체의 개인, 단체, 조직과 함께하고 상호 협력하는 것을 말한다. 따라서 “제3자 폴리싱” 범죄예방활동을 위해 집주인, 건물 감독관, 환경단속반, 지역사회 단체, 보험회사, 지방공무원 등의 범죄자의 환경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영향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을 경찰활동에 포함하는 개념이다.¹⁰⁾

■ 유럽도시헌장(European Urban Charter) 및 유럽 CLRAE

유럽도시헌장(European Urban Charter)은 유럽 도시들의 시민들의 기본권으로서 ‘범죄, 비행 그리고 공격행위로부터 가능한 안전하고 평온한 도시’를 규정하고 있다. 안전한 도시라는 이 기본권의 취지는 전 유럽에 걸쳐 많은 국가 단위 그리고 지역 단위의 범죄 감소 프로그램에 적용되어 있다.

유럽평의회 유럽지방자치단체총협의회인 CLRAE에서 개최된 총회의 최종선언문(1997)에는 다음과 같이 기술되어 있다:

“유럽의 범죄, 범죄에 대한 두려움, 도시 불안은 대중에게 영향을 미치는 중대한 문제다. 그리고 이들에 대해 만족할만한 해결책을 찾는 것이 시민 평화와

10) 김동복, 김성환(2010) 적극적 시민참여활동을 위한 Third Party Policing의 도입방안, 한국콘텐츠학회, 한국콘텐츠학회논문지 10(12)

안정성의 주요 핵심중 하나이다.”

이 회의에서의 첫 번째 제안은 다음과 같았다:

"유럽의 지방 및 지역 당국들은 끊임없이 대중과 함께하는 총체적 도시 범죄 감소 계획을 발전시켜야 한다. 대중의 참여 속에 범죄 감소는 지역 당국의 책임이 여러 측면에서 하나의 정책으로 포함된다. 그러한 계획은 범죄의 본질과 유형에 대처할 수 있고, 목표화하고, 시간에 따른 행동계획을 세우고, 실행을 위한 제안을 하고, 광범위한 최근 통계와 범죄위험평가 및 진단에 근거하여 정의되어야 한다.“

이런 관점에서, CLRAE는 경찰과 도시 및 건축 설계 전문가와의 협의를 장려하고, 특히 경찰 등 사법기관이 범죄와 건축환경 간의 관계에 대해 조언을 할 수 있도록 훈련받아야 함을 강조하였다.¹¹⁾

2. 영국

영국에서는 셉테드가 도시계획과 설계에 적극적으로 개입하게 된(intervene) 계기가 된 법안이 바로 1998년 통과된 “범죄와무질서법(Crime and Disorder Act)”이다. 이 법은 지방정부(도청, 시청 등)가 주민들이나 지역전문가들의 경험과 지식을 고려하고 해당 지역 내에서의 범죄 수준과 패턴에 대한 조사(crime audit)를 통해 범죄와 무질서 문제를 발견하고, 이를 기준으로 범죄와 무질서에 대한 약 3개년 단위의 종합적 전략(local crime and disorder strategy)을 수립하고, “범죄와 무질서 저감을 위한 협력파트너쉽”(partnership)을 형성하여 그 전략을 시행한 후 이를 검토(review)하고 다시 개선 반복(feedback)하도록 하고 있다.¹²⁾

특히 이 법 17조를 근거로 지역 범죄예방 전략의 구체적인 수행을 위해 지방정부의 모든 기관과 부서들이 예산 및 정책 결정과 세부전략수립에 있어서 지역 내의 범죄와 무질서의 감축과 예방을 통한 지역사회 안전을 고려하여 적용하도록 법적인 의무를 부과하고 있다. 이 법과 지방정부법(Local Government Act 2000)의 파트 1 제4조 제1항 지역 개발 전략 규정으로 인하여 영국 내각 부총리실(ODPM)에서 2004년 2월 '도시계획정책안(Planning Policy Statement[PPG] 1)'에 셉테드 개념을 핵심사항으로 명시하고 그 세부

11) Council of Europe's Congress of Local and Regional Authorities of Europe (CLRAE; 1997)

12) 박현호(2003) 범죄 및 무질서 문제와 지방자치행정, 경찰학연구 제5호

시행규칙(companion guide to PPG1)으로 ‘보다 안전한 장소 : 도시계획체계와 범죄예방(Safer Places: The Planning System and Crime Prevention)'¹³⁾라는 가이드라인을 제작하여 전국 지방자치단체에 배포하여 이를 근거로 지역단위로 도시계획과 설계에 셉테드를 강력히 반영하도록 하고 있다. 2003년 2월에는 '지속가능한 공동체¹⁴⁾ 계획(Sustainable Communities Plan)'이 발표되었는데, ‘도시계획을 통한 범죄의 축출(planning out crime)’을 정부의 핵심 도시계획 가이드라인인 PPG1의 중심이 되는 내용으로 삼고 있음을 분명히 하고 있다.¹⁵⁾

지속가능한 주거를 위한 규정(Code for Sustainable Homes)은 공공주택 설계 시 에너지 저감, 향후 관리방안 등 지속가능한 주택 설계를 위해 영국 정부에서 권장하고 있는 지침이다. 규정은 점수제로 되어 있으며 각 항목당 필수 항목 여부와 함께 취득할 수 있는 점수가 배분되어 있으며 별점으로 1단계부터 6단계까지 표시된다. 규정집은 총 9가지 기준으로 구성되어 있다. 이 중에 주거관리부문은 다음과 같이 구분되어 있다.

- 주거 사용자 가이드(Home User Guide)
- 사려깊은 건설 운영계획(Considerate Constructors Scheme): 건설 중 주변 환경에 사회적 환경적으로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규정
- 건설 대상지 영향(Construction site impacts): 건설 대상지가 생태적으로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규정
- 안전(Security)

이 중 안전에 대한 규정은 SBD를 포함하고 있다. 안전에 대한 규정은 점수 2점이 배정되어 있으며 필수 항목은 아니다. 계획 초기부터 계획 후 건설단계 까지 ALO 혹은 CPDA가 참여해야 하며 SBD Homes 가이드라인 중 섹션 2, 즉 개별 주호 시설제품에 관한 SBD 규정을 충족해야 하며 ALO 혹은 CPDA는 이에 대한 보고서를 제출해야 한다.¹⁶⁾

Greater Manchester 시의 경우에는 모든 개발 및 건축 허가 시에 CPTED 경찰관에 의한 범죄영향을 검토하도록 의무화한 바 있다(SBD Focus

13) http://www.odpm.gov.uk/embedded_object.asp?id=1144724에서 가이드라인을 확인하였다.

14) 여기서 ‘지속가능한 공동체’란 사람들이 현재 그리고 미래에 살고 일하고 싶어 하는 지리적 공간을 말한다. 현재 그리고 미래의 시민들의 다양한 수요를 충족해주면서 환경에 민감하고 높은 삶의 질을 제공하는 공동체이다. 기본적으로 안전하고 사회통합적으로 계획, 건축되어 관리됨으로써 모든 구성원들에게 공평한 기회와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공동체로서 마약, 반사회적 행위 문제, 그리고 범죄율이 낮으며 가시적, 효과적 그리고 공동체 친화적인 치안이 이루어지는 곳을 의미한다(ODPM, 2004: 8).

15) www.northamptonshire.gov.uk 홈페이지 참고

16) 조영진, 김용국(2016) 건축물 범죄안전 디자인 성능에 관한 연구, 건축도시공간연구소

Corporate Magazine¹⁷⁾). 맨체스터 경찰청(GMP)에서 운영하는 DFSC(Design for Security Consultancy) 제도를 통해 개발업체나 건축주가 지자체 도시계획과에 타운이나 규모가 있는 건축물에 대한 개발계획 승인을 신청하기에 앞서 DFSC의 전문가들을 통해서 컨설팅을 받아 작성하는 소위 ‘범죄영향평가검토서(Crime Impact Statement)’를 제출해야만 개발계획에 대한 승인 절차로 진행할 수 있다(Monchuk, 2011: 31-40).



<그림 > 영국 맨체스터경찰청의 CPTED 범죄영향평가 프로그램

건축법(Building Regulations) 상 승인문서 Q(Approved Document Q)는 2015년 10월부터 승인문서 Q의 안전 - 주거지항목에 주택의 안전에 대한 기준이 추가되었다. 영국 최초로 신축 주택의 안전에 대한 부분이 건축법규에 포함되었으며, 이에 대한 문서가 ‘승인문서 Q: 안전’이다. 이를 통해서 주택의 침입 방지를 위해서 창문과 현관문은 일정 기준 이상의 침입 저항 및 방범 성능을 갖추어야 한다(방범성능인증 시설을 갖추어야 한다는 의미임).¹⁸⁾

3. 미국

아리조나 주 템페 시에서는 1989년 한 경찰관이 CPTED 입법화의 필요성을 공개적으로 제기한 이후 약 6년간에 걸쳐 시 당국과 경찰 및 건축업자들 사이에 논쟁과 협상이 이루어진 끝에 1996년 초안이 마련되고 1997년 시 건축, 개발 및 환경관련 법규에 관련조항이 신설됨으로써 현실화하게 되었다. 그 구

17) www.securedbydesign.com 홈페이지 참고. 범죄영향평가에 대해서는 제7장에서 더 자세히 볼 수 있다.

18) <http://www.planningportal.gov.uk/buildingregulations/approveddocuments/>

체적인 내용을 보면, 시 조례집 제11조의 “설계 평가 조례(Design Review Ordinance)”에 4개항의 일반적인 ‘환경 설계 규정(Environmental Design articles)’을 추가하게 되는데, 이 규정들은 다른 지역들은 물론 술집, 성인용품점, 당구장, 호텔 및 모텔과 편의점 등 특히 범죄가 많이 발생하는 장소들에 대한 토지 및 공간 사용을 규제하는 시 조례들과 연계되도록 만들어졌다. 그렇기 때문에, 새로운 규정들은 경찰에 이들 장소들의 범죄예방 계획에 대해 평가하고 승인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하고 있다. 새로운 CPTED 규정들은 이러한 장소들 이외에도 모든 새로운 건축과 현 건축물 가액의 50%를 초과하는 모든 증축, 개축, 개조 및 용도변경은 물론, 기존의 다세대주택을 세대별로 분할등기 할 때에도 적용된다(Tempe Police Department, 1997).¹⁹⁾ 2004년 zoning 및 개발법(Zoning and Development Code(ZDC))으로 제11조 일부 내용이 분리 이관된 이후 현재는 Security Plans에 대한 내용만 포함되어 있다.²⁰⁾ 플로리다 주 편의점 안전법(Convenience Business Security Act)은 1980년대 초 급증하는 야간 편의점 범죄 예방을 위한 법제정을 통해 점원의 안전과 재산을 보장하고자 하였다. 1987년 7월 제정된 플로리다 주 게인즈빌 시(Gainesville City, Florida)의 편의점 범죄예방을 위한 조례가 야간시간대 편의점 대상 범죄율을 낮추는 효과가 입증되자, 플로리다 주는 플로리다 주법에 편의점 안전법²¹⁾을 신설하였고, 캘리포니아 등 다른 지역에서도 편의점 관련 조례를 제정하였다.²²⁾

4. 캐나다

캐나다에서는 전국 단위의 법규는 없으며 주로 자치시 단위에서 셉테드 관련 법규가 엄격히 시행되고 있다. 온타리오주 키치너 시(City of Kitchener)의 경우에는 온타리오 도시계획법(Ontario Planning Act)에 도시개발의 전제 조건으로서 도시개발계획 승인 절차로서 반드시 셉테드 적용을 의무화하고 있다. 공식 셉테드 보고서가 요구되는 정도의 개발계획일 경우에 예외 없이 개발 계획 신청서는 시청 담당자가 경우에 따라 담당 경찰관의 도움을 받아 이를 검토해야 하고, 셉테드 보고서는 자격을 갖춘 전문가에 의해 작성, 제출되어야 한다. 또한 그 셉테드 보고서는 셉테드 원칙들을 해당 개발 현장의 설계에 어

19) 표창원(2003: 81-100)에서 재인용.

20) 조영진·조상규·김승남(2015), 「범죄예방 환경조성을 위한 범죄위험평가 도입 방안 연구」, 건축도시공간연구소.

21) 주요 내용은 최소 2인 이상의 종업원 배치, 투명 폴리카보네이트나 일정 기준 이상의 재질로 만들어진 보안구역 설치, 인상착의 확인이 가능한 보안 카메라 시스템 설치 등임

22) Kitchen, T. & Schneider, R. H.(2004), Planning for Crime Prevention: A Transatlantic Perspective, Routledge, p.142.

떻게 반영할 것인지를 명백하게 나타내야 한다. 벤쿠버에서 첫 CPTED 강좌가 나오게 되었으며, CPTED 기본원리를 노스이스턴 B.C 타운의 설계에 적용하게 되었고 B.C주 건축법 개정도 이루어 졌다. 또한 벤쿠버와 토론토에서는 주차장 설계에 있어서 CPTED 기본원리들이 법제화가 이루어지게 되었다.²³⁾

5. 호주

호주의 뉴사우스웨일즈(NSW) 주정부는 2001년 4월, ‘환경계획평가법 제 79c조(Section 79c of the Environmental Planning and Assessment Act)’를 개정, “모든 건축설계 허가관청으로 하여금 모든 새로운 개발 신청을 평가함에 있어 반드시 범죄위험영향(crime risk impact)을 고려하는 것을 의무화”하였다. 환경계획평가법 제79c조의 핵심내용은 “도시개발 신청에 대하여 개발에 따른 해당 지역의 자연적, 인공적 환경에 대한 영향과 사회적, 경제적 영향(the natural and built environments, and social and economic impacts in the locality)을 고려해야 한다”.

이 법 규정을 근거로 셉테드 가이드라인(Guidelines under Section 79C of the Environmental Planning and Assessment Act 1979)과 매뉴얼을 개발하였고, 주의 모든 지역에서는 지방정부와 경찰, 기타 유관기관들 간의 ‘범죄예방을 위한 협의체’들이 구성되어 건축설계 및 개발계획 단계에서부터 범죄예방차원의 고려를 할 수 있도록 교육, 훈련, 집행을 하고 있다. 이러한 일련의 절차가 체계적으로 진행될 수 있도록 NSW주에서는 호주뉴질랜드 위험관리(Risk Management)표준 ‘ANZS 4360 : 2003’에 의하여, 범죄 위험 영향평가를 위해 물리적·사회적 환경을 구성하는 요소의 질적, 양적 분석과 이에 대한 위험관리의 기법 적용 및 검토 그리고 환류토록 구체적인 기준을 제공하고 있다.

위 셉테드 가이드라인은 크게 2 파트로 구분이 된다. 즉, Part A에서는 교육을 받은 경찰관과 함께 공식적인 범죄위험성평가(CRA)를 실시하는 것의 필요성을 역설한다. Part B에서는 범죄위험도를 최소화하기 위해 계획의 수정안을 정당화하기 위해 자치단체가 활용하는 CPTED의 기본 원칙과 전략을 가이드하고 있다.²⁴⁾ 즉, 제79c조에 근거한 가이드라인은 도시계획 및 개발에 대한

23) 경찰청(2008), 환경설계를 통한 범죄예방 방안 연구, 경찰청 국외훈련(캐나다 필지방경찰청) 결과보고서

24) The guidelines contain two parts. ‘Part A details the need for a formal crime risk assessment (Safer By Design Evaluation) to be done in conjunction with trained police, and Part B outlines basic Crime Prevention Through Environmental Design (CPTED) principles and strategies that can be used by consent authorities to justify the modification proposals to minimise risk.’ (DUAP 2001:2). http://www.police.nsw.gov.au/community_issues/crime_prevention/safer_by_design 참고

범죄영향평가로 인해 도시계획자, 건축가, 범죄예방 전문가 그리고 설계자문위원들이 언제, 어디서, 어떻게 CPTED를 사용해야 하는지 결정하는데 도움을 주고 있다.

나아가 'CPTED 디자인 세부 매뉴얼(Companion to Safer by Design Crime Risk Assessment)'은 위와 같은 CPTED 기반 범죄영향평가를 실행하는 경찰 및 지방자치단체의 실무자들을 위한 각론적인 디자인 지침을 제시하고 있다. 이러한 과정에 따라 생산되는 범죄영향평가 결과보고서는 도시개발허가에 대한 조건을 부과하거나 개발 신청서를 수정 또는 취소(단, 신청자 이에 대해 법원에 이의신청할 수 있음)할 수 있는 근거로 작용하고 있다.



<그림 > 호주 NSW 환경계획평가법, 범죄위험평가, 디자인매뉴얼과의 관계도

6. 네덜란드 및 일본

네덜란드에서는 주택법 1999에서 모든 주택의 창, 도어는 3분 이상 침입시도에 견딜 수 있는 방법성을 필수적으로 요구하고 있다. 이에 따라 범인들의 침입 시도가 주로 이루어지는 건물의 개구부를 중심으로 SKG(도어셋, 창문, 창틀 품질센터)/SKH(목재제품시험센터)인증 제품을 의무적으로 설치 및 사용해야만 한다. 또한 건축법 개정으로 2004년 이후에는 모든 신규건물은 PKVW 기준(경찰안전주택인증, Politie Keurmerk Veilig Wonen.)에 의해 건축되어야 한다. 상당히 강력한 법적인 규제이지만 네덜란드에서는 주거시설 방법의

중요성이 사회적으로 용인되고 있다고 평가할 수 있다²⁵⁾.

일본의 아이치현의 ‘안전한도시계획 조례(2004)’와 가나자와현에서 추진한 ‘범죄없는 안전·안심 마찌쓰쿠리 조례’는 셉테드의 촉진 방안으로 셉테드 사업의 추진체계, 민간단체 지원, 특별주간 및 표창 수여 등을 시행하였고, 셉테드 지침이 필요한 대상(주택, 도로, 공원, 점포 등)을 설정하였으며, 범죄에 취약한 아동이나 여성 등 대상별 지침을 마련하였다. 또한 범죄 안전 관련하여 계몽 사업의 일환으로 매년 안전·안심 마찌쓰쿠리 주간(10. 11~20)을 설정하여 범죄예방 페스티벌, 심포지엄 등을 개최하고 안전·안심 마찌쓰쿠리 공로자를 표창 및 장려상을 수여하고, 안전·안심 마찌쓰쿠리 표어와 심볼 마크에 대한 콩쿨, 안전·안심 마찌쓰쿠리 지역안전맵 콩쿨(소,중학생부, 일반부 대상)을 개최하였다.²⁶⁾ 또한 침입범죄를 경감하기 위해서 관민합동회의라는 범부처협의체에서 ‘건물부품의 방범성능 시험규칙’, ‘방범우량맨션 인증사업지원 요강’ 및 ‘방범우량맨션표준인증규정’ 등을 제정하였는데 자세한 사항은 후술한 셉테드 인증의 장에서 설명하고 있다.

7. 요약 및 소결

전체적으로 볼 때 외국에서는 법, 자치조례, 코드, 가이드라인 등의 형태로 1세대나 2세대 셉테드 요소를 법적인 의무사항이나 권장사항으로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셉테드의 범위나 방법 등이 사회문화적으로 다양하여 이를 전면적이고 포괄적으로 다루는 단일법이 마련된 경우는 아직 나타나지 않고 있다고 분석된다. 다만, 네덜란드의 주택법이나 건축법, 영국의 건축법 등에서 소방시설에 대한 법 규제가 자연스럽게 이루어지듯이 창호 등 건축물의 기초적인 침입방지시설과 같은 방범시설에 대한 법적 규제도 점차 강화되고 권장에서 의무로 가는 것은 세계적 추세로 보인다.

25) Jongejan, Armando, Urban Planning in the Residential Environment using The Dutch 'Police Label Secure Housing, Amsterdam, the Netherlands 14th edition. 2008: 4-6.

26) 박현호(2014) CPTED와 범죄과학, 박영사.

제3장 외국의 CPTED 표준화 사례

1. CPTED 표준의 2대 유형 : 시스템표준과 제품성능표준

표준이 범죄예방 산업을 포함한 산업 경제와 기업성장을 견인하는 국가경쟁력의 핵심 요소인 동시에 각종 테러 공격이나 범죄, 재난으로부터 국민의 편안하고 안전한 삶을 보장하는 국가인프라라는 전 세계적인 인식이 확산되고 있다. 이렇게 향상된 안전한 사회에 대한 요구 등을 만족시키고 기업의 생산경쟁력을 향상시키기 위한 표준화 정책을 펼 필요가 있으며 융·복합분야 등 신성장 분야에 대한 표준을 개발하고 부처간 협력체계를 공고히 하여 신수요 분야에 대한 표준 확대 등을 지속적으로 추진해야 한다. 최근, 표준의 기능과 역할은 사회적 현상과 국민 욕구의 다양화로 인해 그 범위가 대폭 확대되고 있다.²⁷⁾ ISO/IEC Guide 2(표준화 및 관련 활동에 대한 일반용어 및 정의, 1991)에 따르면 “표준은 공통적이고 반복적인 사용을 위하여 합의에 의해 제정되고 인정된 기관에서 승인된 문서로서, 주어진 여건 아래서 최적의 질서 확립을 목적으로 하는 활동이나 그 결과에 대한 규칙, 지침 또는 특성을 제공한다”라고 정의되고 있다. 표준화는 표준을 개발하고 발간하며 이행하는 프로세스를 말하며, 표준의 보급과 이해 관계자들에게 관련된 정보를 제공하는 것 등을 포함한다.

이러한 표준은 다양한 산업 분야에서 채택되어 막대한 경제적 파급효과를 유발하고 있으며, 사회 발전에 의한 시대적 요구에 따라 표준의 니즈가 변화하고 있다. 1980년대에는 산업경쟁력 강화를 위한 전통기간사업 및 정보통신 중심에서 1990년대 산업화가 발달되면서 분야가 다양해졌고 1990년에는 환경, 2000년에는 식품안전 분야가 강화되었다. 2010년에는 안전하고 행복한 국민생활 안전분야 및 사회안전에 대한 요구가 증대하고 있다.²⁸⁾

이런 맥락에서 CPTED 관련하여 표준화가 추진되어 왔다. CPTED 표준에는 크게 2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시스템 표준이고 다른 하나는 제품성능표준이다. 시스템 표준이란 서비스와 처리과정, 프레임워크, 원칙 등 시스템에 대한 기준으로서 가장 잘 알려진 것으로는 품질 경영에 대한 국제표준인 ISO 9000이 있는데, 이것은 조직이나 기업, 처리 과정이나 프로젝트의 품질 경영에 대한 단계별 과정을 정의하고 설명한다. 반면 제품성능표준은 시설이나 제품의 규

27) 국가기술표준원(2014). 국가기술표준백서.

28) 박현호(2016) ISO/TC 292에 의한 산업보안 분야 국제표준화의 동향, 한국경호경비학회-제48호 (2016): 79-111

격, 시방이나 성능의 테스트 기준을 구체화한다.

1. CPTED 관련 시스템 표준

국제표준기구 ISO는 최근에 도시보안 분야 기술위원회 TC292 Security & Resilience(보안 및 회복력)를 통하여 CPTED를 물리적 보안의 중요한 개념으로 포함시키면서 셉테드의 시스템을 국제표준화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표 8> ISO/TC 292 WG6 ‘보호적 보안’ 표준개발 로드맵²⁹⁾

항목	세항목	관련 표준	향후 개발 분야
물리적 보안	-CPTED 계획 및 설계 -접근통제시스템 -물리적 자산 보호	제안 및 개발 예정	보안 및 방법 계획/설계 실행 가이드라인
			물리적 자산보호의 가이드라인

또한 영국, 프랑스 등 서유럽에서는 90년대 중반부터 「도시계획·건축디자인을 통한 범죄예방」 분야의 표준화를 추진하면서 유럽표준인 EN14383(도시계획과 건축디자인을 통한 범죄예방) 시리즈를 제정해왔다. 일부는 제정되고 일부는 제정을 미룬 채 기술시방서(technical specification)나 기술보고서(technical report) 형태로 표준화를 위한 기술위원회(CEN/TC325)의 활동은 계속되고 있으며, 이 표준들의 구체적인 보급 및 활용을 위해 유럽연합 집행위원회(European Commission) 사법자유보안국(Directorate-General Justice, Freedom and Security)의 예산 지원으로 Action SAFEPOLIS라는 프로젝트를 추진하였다. 이 프로젝트의 결과물이 바로 ‘도시방법 설계·관리 핸드북(HANDBOOK of Urban Design and Management for Crime Prevention)’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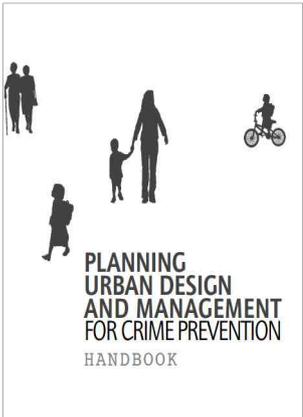
<표 3-3> CPTED 유럽표준화의 틀

분야	유럽표준 및 제목	
용어	EN14383-1	CPTED 관련 용어(terminology)의 정의
원칙 및 프로세스	CEN/TR14383-2	도시계획 및 설계 절차 및 시스템
CPTED 시설 계획, 설계,	CEN/TS 14383-3	주택단지

29) 출처 : TC292 N 265 TC292 Draft Road map from ISO/TC 292/WG 6 Protective security

관리 가이드라인	CEN/TS 14383-4	상가 및 오피스
	prCEN/TS 14383-5	주유소
	prCEN/TR 14383-6	학교 등 교육시설
	prCEN/TR 14383-8	차량이용 공격 등(테러)에 대응한 건축물 보호
	prCEN/TR 14383-7	대중교통 수단 및 시설

이 핸드북은 CEN/TR14383-2(도시계획 및 설계를 통한 범죄예방)의 부속서인 Annex D의 해설서 및 활용자료로서 제작되었으며 셉테드 유럽표준의 보급 및 확산을 위한 사업의 일환인 것이다. 이 핸드북의 특징과 장점은 셉테드 가이드라인의 수준이 주로 북미와 기존 유럽국들이 제시한 다양한 건축물과 공공공간(public space)에 대한 단편적이고 미시적인 디자인 지침 수준을 넘어서 도시설계, 특히 계획(planning) 수준에서 거시적인 셉테드 지침을 제시하고 있으며 나아가 도시관리 전략까지도 상세하게 가이드하고 있다는 점이다.³⁰⁾ 핸드북은 크게 4파트로 구분되어 있는데, ‘①도시계획과 안전의 관계, ②도시계획 전략, ③도시설계 전략, ④도시관리 전략’이 그것이다.

 <p>PLANNING URBAN DESIGN AND MANAGEMENT FOR CRIME PREVENTION HANDBOOK</p>	대범주	소범주	항목
	적용 범위	적용 장소/시설	신규 환경 기존 환경
		범죄 문제	범죄(crime) 두려움(fear of crime)
	전략 (15개)		계획(urban planning) 전략(4) 설계(urban design) 전략(5) 관리(management) 전략(6)
프로세스		지역별 CPTED사업의 절차 및 순서	

<그림 3-3>기술위원회 CPTED핸드북과 CEN14383-2의 주요 내용

셉테드 유럽표준 14383-2는 CPTED의 15대 전략을 제시하고 있다. 이는 셉테드가 단순히 건축물의 설계에서 그치지 않고 도시의 계획 및 설계와 관리의 수준에서 보다 폭넓은 철학과 전략이 필요함을 증명하는 것이다. 이 표준에 제

30) AGIS - Action Safepolis 2006-2007 Planning Urban Design and Management for Crime Prevention Handbook

시된 CPTED 기법과 전략의 적절한 활용은 일정한 수준의 범죄예방효과를 발휘할 수 있는 것으로 분석되며 도시계획가와 설계사들이 범죄의 원인(실업, 가난, 가정 붕괴, 마약, TV와 영화의 폭력성 등)에는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수는 없지만 적절한 CPTED설계를 통해 범죄와 범죄공포를 적절히 경감할 수 있는 것으로 검증되어 왔다. 아래는 범주 별 15대 전략들을 요약해서 보여주고 있다.

<표 8-5> 범주 별 15대 CPTED 전략들

범주	15대 전략	설명
도시 계획 (4)	기존환경 계승	기존하던 사회적, 물리적 구조의 존중 및 반영
	활동성	시설환경의 기능/미적 요소가 복합되도록 계획하여 이용자의 활기 제고
	복합 사용	사회경제적 집단 간 혼합, 특정집단 고립의 최소화
	밀도	긴장 유발하는 초고밀(인구/차량)의 지양. 버려진 공간(不用공간) 방치 최소화
도시 설계 (5)	가시성	건축물의 개방적 설계(창문을 최대한 크게, 폐쇄성 최소화) 개방적 조정 및 식재(교목 및 관목의 높이 유지) 야간조명의 적절한 균제도, 조도, 연색성. 조명 간섭 최소화
	접근성	범죄자의 접근제한(게이트, 펜스, 식재 등으로) 보행루트 등의 명확하고 안전한 방향성(고립/함정공간 설계 지양) 적절한 안내 표시체계(signage) 안전한 보행 동선, 충분한 피신(대체) 루트(alternative route) 배치
	영역성	주차장 등 시설/공간 규모의 적절성(휴먼스케일) 공적/사적 공간의 명료한 zoning(구획) 표시 : 단차, 바닥패턴 변화, 식재, 상징적 문주 등
	매력성	시설물의 인상, 색, 재질, 조명, 소음, 냄새 등 미관과 매력 요소
	강건성	파손에 강한 가로시설물, 건축시설물 등
	대상물 강화/제거(TH)	강건한 재질의 방법창살/방범문/ 셔터/유리/잠금장치 설치 절도/파손 피해 우려 시설물의 제거(눈에 안 띄게)
도시 관리 (6)	감시	경찰, 민간경비원의 순찰 자율방범대의 순찰 CCTV감시(비상벨 포함)
	유지보수	청결 유지와 파손 시설의 신속한 보수 상태
	공공규칙	공공장소 흡연/음주/무질서 규제 및 단속
	취약집단 관리	정신질환자, 청소년, 노숙자, 부랑자, 알콜중독자 시설/쉼터 제공
	방법 홍보	대중 범죄예방 캠페인/경고 메시지 및 행동 준칙 홍보안내(플랭카드, 안내홍보판 등)

2. CPTED 관련 방법제품 성능표준

방법환경시설 관련 제품의 성능에 대한 외국의 기준을 살펴보면, 특히 건축물 개구부(창문, 현관문)로의 침입 저항 성능 표준들이 많다. 먼저 국제표준은 다음과 같다.

- ISO 16936-1:2005 건물의 유리(Glass in building) - 강제침입 방지 판유리 (Forced-entry security glazing) -- 1항 : 반복적 볼낙하 실험 및 등급화(Part 1: Test and classification by repetitive ball drop)
- ISO 16936-2:2005 건물의 유리(Glass in building) - 강제침입 방지 판유리 (Forced-entry security glazing) -- 2항 : 실내 온도에서 반복적 해머, 도끼 충격 실험

험 및 등급화(Part 2: Test and classification by repetitive impact of a hammer and axe at room temperature)

- DD ENV 1627:1999. 창문, 출입문, 셔터. 침입강도 저항력. 필요조건과 등급. (Windows, doors, shutters. Burglar resistance. Requirements and classification.)
- DD ENV 1628:1999 창문, 출입문, 셔터. 침입강도 저항력. 정적 로딩에 대한 저항력 측정 테스트 방법(Windows, doors, shutters. Burglar resistance. Test method for the determination of resistance under static loading)

국가 표준으로는 BS 3621 : 2004 절도방지 락 어셈블리 - 키 출구(Thief Resistant Lock assembly - key egress), 전문산업분야 단체표준으로는 LPS³¹⁾ 1175 'LPCB 인가와 침입자 저항가능 건물요소, 강화지점, 보안구역, 자연방어물의 목록화를 위한 필요조건과 실험절차(Requirements and testing procedures for the LPCB approval and listing of intruder resistant building components, strongpoints, security enclosures and free standing barriers.)'와 ASTM의 유리, 잠금장치, 도어 기준(F588 Glazing, F33 Locks, Doors) 등이 있다.

영국, 네덜란드의 하드웨어 침입 저항성능 등급, 등급 측정기준, 침입도구 및 수법에 대한 비교표이다.³²⁾ 전체적으로 보면 모두 저항성능 등급을 갖고 있으며, 등급 측정 기준을 보면 침입 가능한 구멍이 만들어질 때까지의 해머 등 도구에 의한 타격 횟수가 기준인 유리를 제외하고는 모두 침입공격에 저항하는 시간이 기준이다. 유리의 경우는 소음이 크게 동반하기 때문에 타격횟수가 시간보다 더 중요한 기준인 것으로 판단된다. 뒤에서 설명할 일본 기준의 경우에도 소음을 동반하는 경우에 타격횟수가 기준으로 되어 있다는 점은 동일한 맥락으로 이해될 수 있다. 이밖에 침입도구 및 수법에서 맨손부터 전기를 사용한 도구에 이르기까지 이를 카테고리화 한 점이 다소의 공통점으로 분석

31) LPS는 Loss Prevention Standard의 약어로 영국건설기술연구소(BRE) 산하 손실방지인증위원회(LPCB : Loss Prevention Certification Board)에 의하여 자체 연구 개발된 표준을 말하며, LPCB는 보안과 소방 분야에서 국제적인 명성을 가진 인증기구로 알려져 있다. LPCB에서 제안한 LPS의 상당수가 BS, EN, IS 등 표준으로 채택된 바 있다. LPCB 인증 프로세스는 품질 기준에 부합되도록 법률가, 보험사, 디자이너, 제조업자, 설치업자, 엔지니어, 과학자 등의 전문가 집단에 의한 제품의 분석평가와 테스트를 포함한다. 제품 인증은 세계적으로 알려진 시험소 및 연구소에 의한 테스트에 의해 이루어지며 규칙적이고 지속적인 심사에 의해 유지가 된다. 기준 심사에 통과한 제품을 LPCB에서 인증하여 'Red Book'을 통해 전 세계 지정자(specifier)들과 유저들에게 무료 배포하고 있다 (www.security-int.com 홈페이지 참고)

32) 이러한 SBD제도의 실시효과에 대해서 Armitage는 SBD지역과 非SBD지역 두 군의 재건축 주택단지로 나누어 실증연구 한 바, SBD인증 문창호 제품을 설치하여 재건축 된 주택에서 전체적으로 범죄율이 55%가 감소된 것으로 나타났다(박현호, 2011 참고).

되었다.

<표 8-12> 하드웨어 성능시험에 의한 침입저항 등급

표준	하드웨어	침입 저항 등급	등급 측정기준	침입도구 및 수법
유럽표준 EN356	유리	1~8등급 체계	다양한 높이에서 투석, 해머/도끼 등 도구를 사용한 타격회수에 대한 저항력(하드웨어가 침입 가능한 구멍이 만들어질 때까지의)	투석 및 도구 타격
영국 국가표준 BS EN1627, 1628, 1629, 1630	창, 문, 방범창살, 셔터,	1~6등급 체계	하드웨어가 침입 가능한 구멍이 만들어질 때까지의 저항시간 3분~15분	맨손, 드릴머신, 전기를 사용한 도구 등으로 분류
영국국가표준 BS PAS24	문, 창문, 창살, 샤시창, 실린더락	LPS1175의 약 2~3등급에 해당	맨손이나 간단한 도구에 의한 침입공격 저항 시간(하드웨어가 침입 가능한 구멍이 만들어질 때까지의)	맨손으로 방범창 등의 하드웨어를 타격하거나 제거
영국 단체표준 LPS1175	경보기, 문, 창문, 셔터, 잠금장치 등	1~8등급 체계	하드웨어가 침입 가능한 구멍이 만들어질 때까지의 저항시간 1분~20분	도구 카테고리 A~G까지 다양. G로 갈수록 침입도구가 더 강력하고 전력을 사용
네덜란드 NEN 5096 및 NEN 5089	창, 문, 방범창살, 셔터,	1성(★)~3성(★★★) 등급	1성 및 2성 등급은 3분 이상, 3성 등급은 5분 이상 저항(하드웨어가 침입 가능한 구멍이 만들어질 때까지의)	맨손, 드릴머신, 전기를 사용한 도구 등으로 분류

제4장 외국의 CPTED 인정·인증 사례

1. CPTED 관련 인정·인증

전술한 바와 같이 CPTED는 사회안전을 위한 시스템 중의 하나이고 그러한 시스템이 체계적으로 구축되고 운영되기 위해서 체계적 기준(표준)이나 지침이 마련되어 있는데, 그러한 기준의 요구사항을 적절하게 준수하고 있는지를 평가 및 검증해야 한다. 인증은 그러한 평가와 검증의 중요한 방법과 도구가 된다. 그러나 가장 체계성 있고 엄격한 수준의 인증시스템을 운영하기 위해서는 ISO 나 IEC 표준과 같은 국제적인 기준을 준수하는 것이다. 먼저, 인정과 인증은 구별되는데, 규정된 요구사항(requirements)에 대하여 적합성평가기관이 적격 여부를 공식적으로 실증하는 제3자 증명 활동을 ‘인정(creditation)’이라 하고, 규정된 요구사항에 대한 제품, 프로세스, 시스템, 사람 등의 적합여부를 실증하는 제3자³³⁾ 증명 활동을 포괄적으로 ‘인증(certification)’이라 한다. 여기서 건축물의 CPTED 인증은 건축물이 CPTED의 원칙에 의해 계획, 설계, 관리되고 있는지를 평가 및 실증하는 것이므로 ‘시스템인증’에 해당하며 건축물을 구성하는 부속품으로서 방법기능을 하는 시설로 활용되는 도어락, 창문 등 하드웨어에 대한 방법성능을 시험 확인하는 것이 ‘제품인증’에 속한다. 인정기관은 주로 공공기관(주무기관)이며 인증기관을 통해서 CPTED시스템의 적합성 평가를 하는 경우라면 ‘CPTED 인증’이라고 할 수 있겠지만 공공기관이 적합성 평가를 직접 하는 경우에는 인증이라 할 수 없고 국제표준에 의거하여 정확히 표현하면 CPTED시스템인정이라고 해야 할 것이다. 현재 국내에서는 셉테드 인증이라는 표현을 남발하는 경향이 있어서 향후 관에서 적합성평가를 할 경우에는 그 표현에 주의를 요한다고 할 수 있다.

33) 여기서 제3자란 적합성평가대상 및 그 대상에 대한 사용자와 독립적인 관계에 있는 자를 말한다.



<그림 > CPTED시스템을 위한 인정 및 인증체계³⁴⁾

<그림 >과 같이 인정기관은 적합성평가기관(제품인증기관, 자격인증기관 등)이 국제 규격 또는 기준에 적합하게 운영되고 있는지를 평가하여 확인하고, 사후관리를 통하여 관리·감독함으로써 인증제도의 신뢰성을 유지하고 보장하는 역할을 수행하고, 적합성평가(인증)기관은 적합성평가대상에 대하여 국제규격 또는 기준에 의하여 규정된 요구사항에 적합한지를 평가하고 실증해 주는 기관이며, 인증의 유효성을 위해 지속적인 사후관리 활동을 수행한다.³⁵⁾

2. CPTED 계획·설계 프로세스(시스템) 인정·인증

CPTED의 시스템인증 분야의 국제적인 동향을 살펴보면, 영국의 SBD인증(accreditation) 시스템이 체계적으로 발달하였고, 미국 켄터키주에서 영국의 SBD 인정제도를 조사한 후 그 실효성을 크게 공감하였고, 이를 벤치마킹해서 2011년에 시범운영을 추진하였으나 여러 사정으로 중단된 적이 있다. 이와 관련하여 CPTED 인증과 관련한 교육제도구축을 위해 미국의 CPTED업무를 담당하는 실무자들 및 전문가인 대학 교수 등 연수팀이 직접 영국에서 교육을 이수한 것으로 조사(미국 이스턴켄터키대학 Derek Paulsen교수와 전자우편 조사) 결과 확인되었다. 미국에서의 이러한 동향은 미전역의 대도시에서 높은 수준의 범죄율과 그에 따른 시민들의 범죄에 대한 두려움 등을 사전에 예방하기 위한 노력으로서 긍정적으로 평가할 만하다.

이와 같이 주거시설, 공원, 학교, 상업업무시설 등 건축물/공간 별 CPTED

34) 출처 : 기술표준원(KATS) 및 ISO 홈페이지(시험교정검사 기관 인정 17025 및 표준물질 생산기관의 자격에 대한 일반 요건 Guide 34)

35) 한국인정원 웹사이트(www.kab.or.kr) 참고.

인정은 세계에서 영국이 주도하는 것을 알 수 있는 바, 우선 영국의 SBD 인정 시스템을 살펴보고 이밖에 네덜란드 및 일본의 CPTED인정제도를 각각 설명 및 비교하기로 한다. 더불어 일반적인 건축물/공간 별 셉테드 인정과는 별도로 주차시설에 대한 우수 방법환경 인정제도를 운영하는 국가가 전 세계에서 4개 국가(영국 Park Mark, 호주 멜번시 CPAS, 뉴질랜드 Carpark+, 일본 방법우량주차장인정)가 있는데 이에 대해 각각 설명한 후 상호 비교하고자 한다.

가. 건축물/공간 별 CPTED 인정·인증

1) 영국의 SBD인정

영국의 Secured by Design(이하 SBD)는 영국 전역의 전국경찰지휘관협회인 ACPO³⁶⁾에서 내무성의 범죄예방국(Crime Reduction Unit)의 후원과 교통지자체부(DTLR)와의 협의 하에 발기된 공식적인 CPTED 제도이다. SBD인정은 유럽표준 등을 근간으로 1999년에 설립된 비영리 법인인 CPI가 자체 개발한 인증 요구사항(지침)과 국가표준(BS)을 기준으로 심사하고 있다. 시스템인증을 위한 인증심사원(Inspector)은 ALO/CPDA³⁷⁾라는 이름으로 각 지방경찰청에 소속된 경찰관 또는 계약직공무원들이 인증 심사를 하고 있으며, 외부 민간전문가들도 자문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또한 ALO/CPDA라는 전문가를 양성하기 위해 'Designing Out Crime(DOC)'이라는 나름 엄격한 자격인정 교육과정을 운영하고 있는데 이들은 장기간의 사전 원격 교육(수개월의 인터넷강의 수강)과 2주간의 교육기관 집체 교육, 그리고 현장 복귀 후 수 개월 담당 근무 후 평가와 시험을 통과해야 ALO/CPDA 자격이 주어진다.

시스템인증의 경우에는 개발사업자가 신청하면 인증심사원이 3단계인 계획/설계, 시공, 준공 단계에서 심사 후에 요구사항을 충족할 때 인증서를 발급한다. SBD시설물에 방법 수준에 현저한 저하가 발생하면 인증을 취소할 수 있다. 인증 등급은 시스템인증의 경우 초기에는 Gold, Silver, Bronze 등급제였으나 현재는 등급제가 없어지고 합격 여부만(Pass/Fail)만 결정해 왔으나 최근 들어서 후술할 방법성능인증시설(하드웨어)의 성능 등급과 적용 폭에 따라서 다시 Gold, Silver, Bronze 등급을 적용하기 시작하였다.

36) 경찰법(Police Act)에 의거하여 설치된 법적 경찰기구

37) Architectural Liaison Officer/Crime Prevention Design Advisor

2) 네덜란드의 PKVW

영국의 SBD와 유사하게 이를 벤치마킹하여 네덜란드에서도 ‘경찰안전주택인증 (Politie Keurmerk Veilig Wonen, 이하 PKVW)’ 제도가 1994년에 시작되어 1996년부터는 전국적으로 확대 시행하고 있다. PKVW는 CPTED의 논리대로 경찰과 지방정부, 도시계획가, 건축가, 건축업 및 주택 관련자가 참여하여 잠재적 주거침입절도, 잠재적 건물침입절도, 범죄공포를 줄이거나 예방하기 위해 표준을 만족하는 건축 부품과 가이드라인을 만족하는 구조에 대해서 인증마크를 붙여, 자발적인 범죄예방을 유도하고 있다. PKVW는 신규주택단지과 기존 주택단지를 구분하여 인증에 대하여 탄력적인 요구사항을 제시하며 특히 기존 주택단지는 일반주택(소유자, 세입자), 복합단지(주택조합 등), 근린주구(지자체) 등 3가지 유형과 수준으로 인정한다.³⁸⁾

네덜란드의 PKVW는 영국의 SBD를 모델로 해서 만들어졌기 때문에 외양적으로는 상당히 비슷하나 PKVW 가이드라인에 55가지 패턴의 설계요소가 패턴 언어방식(Alexander's pattern language)³⁹⁾을 적용할 수 있어 도시계획 및 조경에 중점을 두고 있기 때문에 영국 SBD보다 CPTED 적용 면에서 보다 탄력적이고 거시적이라고 평가되고 있다. 시스템인증(PKVW)의 경우 인정기관은 내무부 및 경찰, 인증기관은 CCV(독립적인비영리 법인)로 상호 독립되어 있다. 인증 검토 및 심사는 전문공무원(경찰) 및 민간전문가 등이 맡고 있으며, 전문가 양성은 CCV 등에서 다양한 공공 교육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시험통과 시 정부공인 자격을 인정하고 있다. 절차 면에서 시스템인증은 PKVW위원회가 신청서를 검토하고, 작업이 완료된 후 독립 조사관을 파견하여 적절성 검토 후 유럽표준, PKVW요구사항 기준을 만족하면 인증한다.⁴⁰⁾

3) 일본의 방범우량맨션인증

일본의 방범우량맨션 인증제도는 역사적으로는 1994년 히로시마에서 처음 시도되었고 2006년 4월에 재단법인 Better Living, 재단법인 전국 방범협회연합회와 사단법인 일본방범설비협회 등 3개 공익 법인이 경시청과 국토교통성의 지도 아래, 각 도도부현의 주택관련 공익법인과 방범 관계 공익법인이 방범우량맨션(아이치현의 경우 ‘방범모델단지’라 명명하기도 함)의 공동인증을 위한

38) Cetnum Criminaliteitspreventie Velligheld(CCV), The Police Marque Secured Housing, Alg Presentatie PKVW, 2011. <http://www.politiekeurmerk.nl/downloads>

39) Alexander, Christopher. A Pattern Language, Oxford-UK, 1997.

40) Jongejan, Armando, Urban Planning in the Residential Environment using The Dutch 'Police Label Secure Housing, Amsterdam, the Netherlands 14th edition. 2008: 4-6.

전국 통합의 제도적 기초로서, ‘방법우량맨션 인증사업지원 요강’과 이에 근거한 ‘방법우량맨션표준인증규정’과 ‘방법우량맨션표준인증기준’을 마련하였다.⁴¹⁾

이후 2008년에는 국가통합 인증마크가 결정되어, 지원요강에 따라 사이타마현·카나가와현·아이치현 등 총 7개 기관이 주택과 방법에 대한 평가와 심사를 하는 ‘방법우량맨션 인증기관’으로 등록됨으로써, 공익 법인에 의한 전국통합의 ‘방법우량맨션인증제도’가 시작되었다.⁴²⁾ 이 인증기관에 맨션 소유주나 개발사업자 등이 인증을 신청하면, 건축 확인 신청과 병행하여 방법우량맨션 인증 심사도 받을 수 있다.⁴³⁾ 본 제도는 개발을 행하는 사업자 측에서 신청을 해주는 것으로 절차가 시작되는데, 신청서, 계획 당시의 체크리스트 등의 소정의 양식에 기초한 서류와 함께 대상이 되는 주택 단지의 도면 등의 필요 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주택 단지가 완성되었을 때는, 완공보고서, 완공 시 체크리스트 등의 소정의 양식에 기초한 서류를 제출해야 하며, 해당 단지가 방법우량맨션 인증을 받기 위해서는 크게 주택, 도로 및 공원, 공용시설, 유지관리 등 4개 분야로 나누어져 제시된 기준을 만족시켜야 한다. 그리고 본 제도에 의해서 인증을 받은 주택단지에 관해서는 방법우량맨션 혹은 방법모델단지로서 주택단지의 개요 등에 대해서 공표된다. 본 모델로 지정 등을 받은 신청자는 일정 범위에서 신청자 등이 작성하는 모집광고, 팜플렛 등에 지정 등의 내용 및 「아이치현 안전한 도시계획 심볼 마크」를 담아서 홍보할 수 있으나 인증기관이 제시하는 주의사항⁴⁴⁾을 준수해야 한다.⁴⁵⁾

4) 비교 분석

<표 > 각국의 CPTED시스템인증 비교

기준	영국 SBD	네덜란드 PKVW 및 SKG/SKH	일본 방법우량맨션 및 CP
----	--------	---------------------	----------------

41) 재단법인 전국방법협회연합회 홈페이지 www.cbl.or.jp/info/221.html 참고.

42) 이 중에서 특히 오사카 시에 방법우량인증 받은 맨션이 가장 많은데 그 이유는 2005년도부터 시작하며 비교적 조기에 시작하였으며, 동경에서는 인증을 받은 후에만 이를 홍보할 수 있으나 오사카에서는 인증을 신청한 것만으로도 홍보에 활용할 수 있고, 전국 가이드라인에서와 달리 오사카 기준에서는 반드시 CP제품을 사용하지 않아도 되는 유연성 때문이라고 한다(Kimihiko Hino 교수의 설명)

43) 전국 공익 법인이 책정한 방법 우량 아파트 인증 사업 지원 요강에 따른 방법 우량 아파트 인증 제도의 개요는 <http://www.cbl.or.jp/info/221.html> 참고

44) 아이치현의 방법모델단지 인증제도의 주의사항은 “「방법모델단지 지정제도」는, 범죄 피해의 보상 및 범죄 피해를 당하지 않는다는 것을 보증하는 것은 아니다. 「방법모델단지」에 지정 등이 이루어졌어도, 확실한 문단속, 일용품 등의 정리 정돈, 방법 설비 등의 적절한 유지 관리 등, 거주자도 방법에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등의 내용을 포함한다.

45) 방법 우량 아파트 표준 인증 규정 <http://www.cbl.or.jp/info/img/221-4.pdf> 참고

인증 로고			
역사	1989년 영국 동남부 지역에서 처음 시작	영국의 SBD를 벤치마킹하여 1996년 도입	- 1990년대 각 도도부현 별로 방법모델맨션 제도 시행하다, 2006년에 전국통합인증기준 마련
관련 법규	- Crime and Disorder Act 1998 - 정부도시계획정책고시(PPS1) - Code for Sustainable Homes	건축법 개정 2004년(모든 신규건물은 PKWV기준에 의해 건축되어야 함)	- 방법우량맨션 표준인증규정 - 방법우량맨션 표준인증규정 - 건물부품의 방법성능 시험규칙
인증 심사원	ALO/CPDA 경찰 인력이 인증심사하며 컨설팅은 민간전문가도 가능	전문경찰관 및 민간전문가	방법협회연합회 등의 다양한 공공 및 민간 전문가 합동
전문가 교육	Designing Out Crime 코스 시험 통과시 정부공인자격 인정	- 공공교육 : CCV등에서 다양한 교육프로그램 제공. 시험통과 시 정부공인 자격인정. - 민간교육 : 몇몇 단체에서 교육코스 제공.	JSSA(일본방법설비협회)에 의한 방법설비사 자격인증(민관합동) 교육과정에서 CPTED 관련 시스템에 대한 교육 제공
재인증 여부	재인증 없으나 SBD시설물에 하자가 생기면 인증 취소만 함.	시스템인증 : 주기적 재인증	도쿄의 경우 등록 후 3년 후 갱신
인정 등급	Gold, Silver, Bronze 등급제	Pass/Fail	Pass/Fail
평가 기준	유럽표준 등을 모태로 CPI 자체 인증 요구사항(지침) 기준	EN, PKWV요구사항 기준	별도의 인증기준 마련

나. 주차시설 방법우수환경 CPTED 인정

1) 각 국별 주차시설 방법우수환경 인정제도

우수 방법환경 주차시설에 대한 시스템인정은 영국 Park Mark(PM)인정, 호주 멜번시 CPAS(Car Park Accreditation Scheme)인정, 뉴질랜드 Carpark+ 인정, 일본 방법우량주차장인정이 대표적이다. 인정주차장의 범위 면에서 공통적으로 기존 주차장과 신축 주차장에 관계없이 방법환경 우수 인정의 대상이 되는 주차장의 범위에 포함시키고 있다. 당연히 방법환경이 취약한 기존 주차장은 그 시설과 환경을 리모델링 등을 통해 개선하도록 유도하고 신축하는 주차장은 계획 및 설계 단계에서 비용효과가 최대화되도록 셉테드의 원리를 반영하고자 하는 것이다. 운영 주체에 있어서 공영과 민영에 관계 없이, 그리고 용도에 있어서 주택용과 비주택용(상업·업무 용) 모두 인정평가의 대상이 된다. 또한 구조상으로 지상, 지하, 복층, 기계식 등 관계없이 범죄위험

에 노출되었거나 노출될 가능성이 있는 주차장들은 예외 없이 그 인정 대상에 포함되어 있다.

인정 프로그램을 주관하는 기관이 상호 차이가 있다. 즉, 영국 PM인정의 제도는 경찰청장협회인 ACPO가 여전히 소유하고 있으나 인정제도의 관리운영은 영국주차협회(BPA)의 지역관리팀에서 맡고 있는 이원적 모습을 보이고 있다. 한편 호주 멜번의 CPAS와 뉴질랜드의 Carpark+ 인정제도는 경찰과 지자체(뉴질랜드는 법무부도 참여)가 협동 사업으로 주관하는 형태이다. 범죄예방 관련 협회에서 주관하는 경우도 있는데 일본 도쿄도 방범주차장 인정은 재단법인 도쿄방범협회연합회에서 이를 주관하고 있다. 인정평가원(inspectors) 자격의 경우 크게 아래의 4가지 유형이 있다.

- ① 특화교육훈련을 이수하고 자격 인정을 받은 전담 경찰관(ALO/CPDA)
- ② 특화교육을 이수한 경찰관과 시청공무원으로 구성된 평가팀
- ③ 특화교육을 이수한 경찰관 1명, 시청공무원 1명, 독립적 평가심사원 1명
- ④ 특화교육으로 자격증을 취득한 전문가(퇴직 경찰 다수)와 위촉된 건축사

영국의 PM인정은 ①번에 해당하고, ②번은 호주 멜번시의 경우에 해당하며, ③번은 뉴질랜드의 사례이다. ④번은 일본에만 특화된 사례다. 인정심사의 절차는 크게 볼 때 아래와 같은 공통 단계를 거쳐서 인정 마크가 수여되고 있다.

- ① 셀프평가(self assessment)
- ② 인정 심사 신청, 등록, 관련 서류 제출
- ③ 평가심사팀 구성
- ④ 서류심사(document review) 및 현장심사(site inspection)
- ⑤ 별도의 심사위원회 개최 또는 평가심사팀의 논의에 의한 판정 결과 통보
- ⑥ 인정 마크(패) 또는 등록증 수여

여기서 특히 ‘셀프평가’는 인정을 신청하는 주차장의 관리 및 운영 주체들이 해당 주차시설에 대하여 인정마크를 획득할 정도의 준비를 갖췄는지, 그리고 인정서를 받을 수 있기 위해서 부족한 항목과 요소들이 무엇인지를 검토하고 확인하는 자기점검 단계이다.

인정갱신 면에서 영국 PM인정은 첫 번째 인정 마크는 그 유효기간이 1년 이고 이후 2년(최대 3년) 마다 재심사 후 갱신토록 하고 있다. 호주 멜번시는

3년 마다 재심사 후 갱신하도록 하며, 뉴질랜드는 2년 마다 재심사 후 갱신해야 한다. 일본 도쿄 방법우량주차장 인정은 3년 마다 재심사 후 갱신토록 하고 있는 바, 평균적으로 3년 정도를 재심사 및 갱신의 주기로 규정하고 있다. 인정등급화와 관련하여 호주 멜번시를 제외한 나머지 영국의 PM인정, 뉴질랜드 Carpark+, 일본의 방법우량주차장 인정은 모두 등급제 없이 인정의 가부, 즉 pass/fail만 판정하여 운영하고 있다. 멜번시의 경우 1성(1 Star)~ 5성까지 별의 수로 주차장 안전등급을 부여하고 있는데, 다소 낮은 방법환경 수준의 주차장에게도 기회를 주고 1성이라도 부여하여 조금이라도 보안 수준을 개선시켜 보려는 시와 경찰의 의도가 숨어 있다고 볼 수 있다.

인정 평가의 기준과 방식에서는 상당한 차이를 보이고 있다. 즉, 영국의 PM 인정에서는 평가기준에서 관리체계(절차) 및 방법시설, 디자인이 핵심 요소이지만 체크리스트 항목 모두가 필수는 아니며 주차장의 환경 및 사정에 따라 유연한 평가가 가능하다. 반면 호주 멜번시의 인정 평가 기준은 비상대응관리, 직원/고객 서비스, 부가서비스, 물리보안 등 4개 파트로 구분하면서, 비상대응관리절차는 필수 항목(40점), 나머지는 항목별로 가중치 점수 평가를 하는데 높은 등급(5성)일수록 더 많고 강한 기준을 충족하도록 규정하고 있다는 점이 차별화된 특징이다. 한편 뉴질랜드의 Carpark+는 평가 분야가 감시 및 보안 위험도, 조명, 주차구역 설계, 접근통제, 물리보안, 표지판, 활동성, 관리 요소로 구성되어 있다. 이 중에서도 영국과 마찬가지로 관리체계(절차) 및 방법시설, 디자인이 핵심 요소이지만 체크리스트 항목 모두가 필수는 아니며 주차장의 환경 및 사정에 따라 유연한 평가가 가능하고, 낮은 기존 주차장은 모든 평가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더라도 한계 내에서 개선 노력을 감안하여 인정 마크를 부여하고 있다. 일본 방법우량주차장도 평가기준의 틀은 보안인력, 방법시설, 디자인 등으로 유사하고 주차장 구조, 권리실 운영, 전자감시, 출입통제, 조명, 비상시설 등의 평가항목들을 갖추고 있으나 그 평가 기준 항목들을 전부 충족해야만 인정을 하는 등 다소 경직성을 갖고 있다.

인정 심사 탈락 시 조치 측면에서 영국의 PM은 인정심사위원회의 심사 결과에 대해 1개월 이내 이의신청이 가능하며 위원회에서 이를 재심사 후 인정 여부를 최종 결정할 수 있다. 반면, 호주 멜번시의 CPAS는 등급제라서 탈락은 없으며 최하 1성이라도 받는 구조를 갖고 있다. 더불어 평가팀이 심사 결과에 대해 신청자를 불러서 논의한 후에 추후 등급 상향(예를 들면, 1성에서 2/3성 이상으로) 을 위해 필요한 조치에 대한 조언을 주고 등급 상향을 유도하는 방

식을 취하고 있다. 뉴질랜드에서는 인정 탈락 통보 시에 그 이유와 통과되기 위한 개선조치사항을 명시한 내용의 문서를 신청자에게 전달하도록 하고 있다. 또 첫 심사 후 6개월 이내에 개선조치가 이루어지면 이에 대한 재심사를 완료하도록 하고 있으며, 분쟁 발생 시엔 중립적인 제3의 심사평가원이 관련 과정에 대하여 재검토를 하여 평가 오류 등의 문제가 발견될 때에는 이를 시정하고 인정서를 수여하도록 충분한 기회를 부여하고 있다.

면책규정 및 벌칙 측면에서 사례들의 공통점은 대부분 인정마크의 획득이 범죄발생 제로(없음)을 보장하지 않는다는 것이 강조되고 있다는 점이다. 인정의 총괄 주관기관이 불필요한 책임부담을 떠안아서 다양한 시설에서 방법환경의 확산이라는 본래의 취지와 목적을 달성하는데 장애가 되지 않도록 하기 위한 자연스런 면책규정인 것이다. 나아가 인정마크를 취득한 해당 시설주나 관리자들이 마크 획득했다는 사실을 상업적으로 지나치게 확대 및 과장 광고하고 홍보하는데 이용하거나 남용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주차장에 ‘범죄발생 제로’라고 홍보하는 것을 인정 취소 사유로 하고 있다는 점이다. 이러한 규정과 벌칙을 통해서 합리적이고 수용 가능한 수준에서 이 주차장 방법안전 인정제도를 이해하고 활용하며 접근하도록 시설주나 관리자, 그리고 주차장 이용자들을 교육시키고 그러한 바른 인식을 심어주는 것이 중요할 것이다.

2) 주차시설 방법우수환경 인정제도 비교표

위 외국 사례들을 비교 분석한 것은 <표 >와 같다.

<표 > 국가 별 주차장 인정체계 비교표

비교기준	영국 Park Mark(PM) 인정	호주 멜번시 Car Park Accreditation Scheme (CPAS) 인정	뉴질랜드 Carpark+ Assessment/Accreditation 평가인정	일본 도쿄도 방법우량주차장 인정
인정마크				
역사	1992년 경찰청장협회(ACPO)에 의해 Secure Car Park Award라는 명칭으로 시작됨	1998년 멜번시와 멜번 경찰이 협력사업으로 시작	2008년 영국의 PM과 호주 멜번시의 CPAS, NSW주의 Safer by Design 가이드를 참고하여 평가인정 가이드 개발함	2004년 재단법인 도쿄방법 협회연합회에서 방법우량주차장 인정, 등록제도로 시작
인정 주차장 범위	기축, 신축, 리모델링 공영/민영, 기계식, 지상/지하/복층 주차장 (노상주차장 제외)	기축, 신축, 리모델링 공영/민영 지상/지하/복층 주차장 (노상주차장 제외)	기축, 신축, 리모델링 공영/민영 지상/지하/복층 주차장 (노상주차장 제외)	기축, 신축, 리모델링 공영/민영 지상/지하/복층 주차장 (노상주차장 제외)

인정 주관 기관	제도는 경찰청장협회(ACPO)이 소유하되, 영국주차협회(BPA) 지역관리자들을 통해 관리됨.	멜번시와 멜번 경찰	뉴질랜드 경찰, 법무부, 지자체	재단법인 도교방법협회연합회에서 주관
평가 심사월	특화교육훈련을 이수하고 자격 인정을 받은 ALO/CPDA 경찰관	특화교육훈련을 이수하고 자격 인정을 받은 멜번시청 공무원과 경찰관으로 구성된 평가팀	특화교육훈련을 이수하고 자격 인정을 받은 1명의 지자체공무원, 독립된 평가심사원, 1명의 경찰관으로 구성된 평가팀	위촉된 일급건축사, 방법설비사(퇴직경찰 다수) 등
평가 심사원 교육훈련	치안대학(Colleg of Policing)의 Designing Out Crime 코스 이수 후 평가 및 시험통과 시 자격 인정	특화된 CPTED 교육 과정 이수 후 자격 인정	특화된 CPTED 교육 과정 이수 후 자격 인정	JSSA(일본방법설비협회)에 의한 방법설비사 자격인증(민관합동) 교육과정에서 CPTED 관련 시스템과 방법설비(CP 및 방법수량기기 RBSS)에 대한 교육 제공
인정심사 프로세스	- 셀프평가 - 인정 심사 신청 및 등록 - 평가심사팀 구성 - 서류심사 및 현장심사(site inspection) - 심사 결과 통보 - 인정 마크(패) 수여	- 셀프평가 - 인정 심사 신청 및 등록 - 평가심사팀 구성 - 서류심사 및 현장심사(site inspection) - 심사 결과 통보 - 인정 등급 마크(패) 수여	- 셀프평가 - 인정 심사 신청 및 등록 - 평가심사팀 구성 - 서류심사 및 현장심사(site inspection) - 인정 심사 결과 통보 - 현장평가 후 1개월 이내 결과 통보	- 인정 신청 및 서류 제출 - 서면심사 - 현지조사 - 심사위원회 심사 및 판정 - 등록증, 인정패 교부
인정 갱신	첫 유효기간 1년, 이후 2년(최대 3년) 마다 재심사 후 갱신	3년 마다 재심사 후 갱신	2년 마다 재심사 후 갱신	3년 마다 재심사 후 갱신
인정 등급	등급 없이 마크획득의 Pass/Fail만 있음	1성(1 Star)- 5성까지 별의 수로 주차장 안전등급 부여	등급 없이 마크획득의 Pass/Fail만 있음	등급 없이 Pass/Fail만 있음
심사 탈락 조치	인정심사위원회의 심사 결과에 대해 1개월 이내 이의신청 가능 => 위원회 재심사 후 최종결정	- 등급제라서 탈락은 없으며 최하 1성이라도 받음 - 평가팀이 심사 결과에 대해 신청자를 불러서 논의 후 추후 등급 상향을 위한 조치에 대한 조언을 줌	- 탈락 통보 시 그 이유와 통과되기 위한 개선조치사항을 명시한 내용을 신청자에게 전달함 - 첫 심사 후 6개월 이내에 개선조치 후 재심사 완료 - 분쟁 시엔 중립적인 제3의 심사평가원이 재검토 함	N/A
평가 기준 및 방식	- 관리체계(절차) 및 방법시설, 디자인이 핵심 요소 - 체크리스트 항목 모두가 필수는 아니며 주차장의 환경 및 사정에 따라 유연한 평가 가능	- 비상대응관리, 직원/고객 서비스, 부가서비스, 물리보안 등 4개 파트로 구분 - 비상대응관리절차는 필수 항목(40점), 나머지는 항목별로 가중치 점수 평가 - 높은 등급(5성)일수록 더 많고 강한 기준을 충족해야 함	- 감시 및 보안위험도, 조명, 주차구역 설계, 접근통제, 물리보안, 표지판, 활동성, 관리로 구성됨 - 관리체계(절차) 및 방법시설, 디자인이 핵심 요소 - 체크리스트 항목 모두가 필수는 아니며 주차장의 환경 및 사정에 따라 유연한 평가 가능 - 낮은 기준 주차장은 모든 평가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더라도 한계 내에서 개선 노력을 감안하여 인정 마크 부여	- 평가 기준에 다소 경직성 있음
주관기관의 면책 규정	- 'PM획득이 범죄발생 제로를 보장하지는 않는다' - 주차장 측에서 '범죄발생제로' 라고 홍보 시 인정 취소	'CPAS 등급 획득은 범죄발생 제로를 보장하지 않으며, 주관기관은 이에 대한 법적 책임을 지지 않는다'	'인정 획득은 범죄발생 제로를 보장하지 않으며, 주관기관 및 주차장운영자는 이에 대한 법적 책임을 지지 않는다'	- 주차장 측에서 '범죄발생제로' 라고 홍보 시 인정 취소

3. CPTED 관련 방법하드웨어 성능 시험 및 인증

방법하드웨어는 건축물/공간에 대한 CPTED의 계획 및 설계 프로세스 내에서 건축시설을 구성하는 중요한 부속품을 말하는데 전술한 셉테드 인정·인증 제도를 갖춘 모든 국가들은 건축물의 계획, 설계, 시공에 대한 시스템인정(소프트웨어)과 창, 유리, 도어 등 제품(하드웨어)에 대한 인증제도 모두를 시행하고 있다. 따라서 하드웨어가 시스템인정의 핵심요구사항에 필수적으로 포함되

어 있기 때문에 양자는 실과 바늘처럼 불가분의 관계이다.

가. 영국의 SBD인증과 LPS인증

범죄와 무질서법(Crime and Disorder Act) 1998과 지속가능한 주택 규정 (Code for Sustainable Homes)⁴⁶⁾, 정부 도시계획정책고시(Planning Policy Statement 1)에 의해 SBD인증은 크게 활성화되었으며 방법하드웨어 제품의 경우에는 유럽표준 및 국가표준에 의한 공인시험소의 테스트를 통과한 품목에 한하여 SBD인증을 부여하고 있다.

제품 성능인증도 제조사에서 신청하면 정부 공인시험소에서 유럽표준 EN1627(문, 창, 셔터의 침입저항 시험 - 요구사항 및 등급), EN1628(문, 창, 셔터의 침입저항 시험 - 정하중 재하 방법), EN1629(문, 창, 셔터의 침입저항 시험 - 정하중 재하 방법) 등 테스트장비에 의한 시험기준과 국제표준인 ISO16936(시험원이 유리를 공격하는 형태에 의한 침입 저항 시험 및 등급), EN1630(문, 창, 셔터의 침입저항 시험 - 시험원에 의한 방법) 등 시험원, 즉 사람의 육체적 물리력(맨손 또는 침입도구 사용)에 의한 시험기준에 의해 공인 시험기관이 샘플제품에 대한 성능(performance) 시험을 하여 통과해야 한다. 그와 동시에 모든 해당 제품이 그러한 높은 기준에 의해 일관성 있게 생산 (production)되고 있음을 증명할 수 있도록 수시로 품질경영시스템(quality management system) 심사를 받아 취득한 인증서(certificate)를 받드시 SBD 마크 사용허가 신청서와 함께 제출해야 한다. 여기서 영국전역에 BSI, BBA, BRE, Chiltern Dynamics 등 12개의 성능 시험소가 있으며, ACPO CPI가 요구사항(requirements)으로 규정한 제3자 인증을 위한 제품 성능과 생산에 대한 인증기관은 BM TRADA, BRE Certification, BSI 등 9개가 있다.⁴⁷⁾

46) 공공주택은 의무적으로 SBD 인증을 받아야 하고, 민간주택도 일부 SBD지침 준수는 사실상 의무화 하고 있다.

47) 박현호(2013) 방법인증제 국내 도입 모형 개발 및 법제화, 경찰청/범죄과학연구소



<그림> 영국 방법제품의 성능시험 및 SBD인증 체계도⁴⁸⁾

제출된 신청 서류들은 CPI에서 다시 한번 내부 심사를 하고 이를 통과한 제조사는 해당 제품에 대해 마침내 SBD마크(로고) 사용 허가(license)를 받게 되는 시스템이다. 따라서 SBD는 엄밀히 말하면 인증이라기보다는 경찰의 마크사용 인허가 프로그램이다. 영국정부는 SBD제품의 활성화를 위해 인센티브 차원에서 지속가능한 주택 코드(Code for Sustainable Homes)를 고시하여 주택을 건축할 때 문과 창 등에 SBD제품 설치를 할 경우 지속가능주택 성능등급에서 2.2점이 추가되어 4성(star) 등급이 5성 등급을 받을 수 있게 함으로써 주택 분양에 유리하도록 유도하였다.

그 밖에도 BRE Global에서 운영 중인 국제적 친환경건축물인증 BREEAM(브림)의 평가 지표로 SBD제품 적용이 포함시킴으로써 방법인증 제품의 보급과 확산에 도움을 주고 있다. 구체적인 친환경건축물인증 BREEAM 평가 점수는 CPTED전문경찰의 자문을 기본설계(concept design) 이전에 받고 SBD인증 지침을 준수하면 1점을 부여하고 SBD주택 지침에 나오는 물리적 보안.방법 분야를 준수하면 2점을 부여받게 된다. 이때 신청주체인 시행사는 주택의 물리적 보안.방법 지침에서 창호의 침입저항 성능 표준에 적합한 방법제품을 적용해야만 그 점수를 확보하게 되는 것이다.⁴⁹⁾ SBD 제품인증은 갱신해야 하며 품질유지에 대한 사후 관리가 되고 있다.

48) 한국건설생활환경시험연구원(KCL) 융합안전연구센터 제공

49) http://www.breeam.com/BREEAMUK2014SchemeDocument/content/05_health/hea06.htm

한편 LPS인증이란 BRE Global 산하에 LPCB(손실방지인증위원회)에서 정부, 경찰, 기업과 함께 침입저항 성능등급 체계를 개발하여 도출된 단체표준인 LPS1175(손실방지인증위원회 승인을 받기 위한 요구사항 및 시험 절차와 침입 도구 및 침입저항 건축자재 등의 리스트)에 의해 8등급으로 침입저항 수준을 구분하여 시험원이 도구를 사용한 시험을 통하여 문, 창문, 셔터, 잠금장치 등 하드웨어에 대한 침입저항 성능 인증을 하고 있다. LPCB는 보안과 소방 분야에서 국제적인 명성을 가진 인증기구로도 알려져 있다. LPCB에서 제안한 LPS의 상당수가 BS, EN, IS 등 표준으로 채택된 바 있다. LPCB 인증 프로세스는 품질 기준에 부합되도록 법률가, 보험사, 디자이너, 제조업자, 설치 업자, 엔지니어, 과학자 등의 전문가 집단에 의한 제품의 분석평가와 테스트를 포함한다. 제품 인증은 BRE 등 세계적으로 알려진 시험소 및 연구소에 의한 테스트에 의해 이루어지며 규칙적이고 지속적인 심사에 의해 유지가 된다 (www.bre.co.uk 참고).

특히 LPS 1175의 성능 등급 기준은 8단계의 카테고리에 의해 드라이버처럼 가볍고 간단한 도구에서부터 전기드릴과 같이 강력하고 전력을 사용하는 도구까지 침입도구를 유형화하고 있으며 침입공격에 뚫리지 않고 견디는 시간을 1분에서 20분까지로 구분하여 등급화하고 있다. 침입공격 시험용 도구는 매우 다양한데 해머, 팬치, 노루발장도리, 니퍼, 드라이버, 전동드릴 등을 사용하여 침입공격을 테스트하게 된다. 문과 창문을 끼우고 시험을 하게 되는 틀에 해당하는 시험체는 BRE 시험소에 배치하여 시험원이 인증시험 신청을 의뢰한 관련 개별 제품에 대하여 실시한다. 시험은 BRE가 국가공인 시험기관이므로 자체 시험소에서 시험원에 의해서 맨몸 및 도구/장비를 이용하여 타격, 제거, 절단 등에 의해 저항시간 타이머 측정 방식에 의해 수행하고 있다. 사양요구자 (specifier)의 요구에 따른 LPS 등급인증을 획득한 방법하드웨어 제품들은 주택, 정부, 은행, 상업시설, 학교, 경찰관서, 교통시설, 약국 등에 납품하여 설치가 되고 있다. 인증제품에는 마케팅 차원에서 LPCB인증마크를 부착할 수 있다.⁵⁰⁾

나. 네덜란드의 SKH/SKG 인증

영국과 마찬가지로 네덜란드에서도 제품 성능인증이 있는데 문, 창호 등 제품의 침입범죄 방법 성능인증인 SKG(도어셋, 창문, 창틀 품질시험센터)

50) https://www.bre.co.uk/filelibrary/pdf/Brochures/Security_Brochure.pdf

KOMO인증과 SKH(목재제품품질시험센터) KOMO인증은 목재, PVC, 철재의 창, 샷시, 창살, 유리, 도어, 셔터 등의 방법성능을 테스트한다. 여기서 KOMO 인증(마크)이란 우리나라의 KC⁵¹⁾인증과 유사한 네덜란드 국가통합 품질인증을 말한다.

주택법(Housing Act) 개정으로 아래와 같이 1999년부터 모든 주택의 창, 도어는 3분 이상 침입공격에 뚫리지 않고 저항할 수 있는 방법성능 기준(NEN 5096) 준수를 의무적으로 요구하고 있어서 SKG/SKH KOMO인증 제품을 사용해야 한다.⁵²⁾ 또한 건축법(Dutch Building Decree, Bouwbesluit) 개정으로 2004년 이후에는 모든 신규건물은 방법설계인증인 PKVW⁵³⁾기준에 의해 건축되어야 하는데⁵⁴⁾ PKVW인증 평가기준에 SKG/SKH KOMO인증 문창호 및 관련 하드웨어를 사용하도록 하여 자연스럽게 방법성능 인증제품이 보급 및 확산되는 체계를 갖추고 있다.⁵⁵⁾

제품 방법성능 품질인증인 KOMO획득을 위해 정부에서 공인한 SKG/SKH라는 시험기관에서 시험 업무를 맡고 있다. 영국의 SBD사례에서와 마찬가지로 문, 창호 등 제조사에서 신청하면 공인시험소인 SKG/SKH에서 유럽표준 EN 1627~1630과 국가표준인 NEN 5096 및 NEN 5089기준에 의한 엄격한 침입 저항 테스트를 통과하고, 해당 제품의 지속적인 품질관리를 위한 품질경영시스템에 대한 심사를 통과해야만 KOMO 인증을 받아 인증마크를 부착할 수 있다. KOMO인증을 받은 하드웨어는 추가적인 심사를 통하여 CCV라는 독립적인 비영리법인을 통하여 PKVW제품으로 인정을 받아 이를 적용할 경우에 건축물의 PKVW인증의 요구사항에 해당하는 기준을 충족할 수 있다. KOMO인증에서도 하드웨어의 침입저항 성능에 따른 등급이 1성(★)~3성(★★★) 등급으로 분류되어 있으며 1성 및 2성 등급은 3분 이상, 3성 등급은 5분 이상 침입 공격에 저항성능을 보증함을 의미하는데 주택법 개정 이후 2성급이 최소 기준이 되고 있다. 인증은 새로운 수법에 의한 성능기준 변경으로 인해 주기적으로 갱신이 되어야 한다.⁵⁶⁾ 보험사에서는 인증제품을 설치한 PKVW주택에 대해서는 관련 보험료를 할인하고 있다.

51) 지식경제부·환경부·노동부 등 부처마다 다르게 사용하던 13개의 법정 강제인증마크를 통합한 단일 인증 마크이다. [네이버 지식백과] 국가통합인증마크 [Korea Certification Mark (KC Mark)]

52) www.tuer-tor-report.com

53) 영국의 SBD와 유사하게 이를 벤치마킹하여 네덜란드에서도 '경찰안전주택인증(Politie Keurmerk Veilig Wonen: PKVW)' 제도가 1994년에 시작되어 1996년부터는 전국적으로 확대 시행하고 있다.

54) www.tuer-tor-report.com

55) 네덜란드 PKVW담당공무원 Jongejan의 설명임

56) 앞의 Jongejan, 2008: 25-29

다. 일본의 CP인증

일본에서는 만능열쇠 이외의 공구(철사 같은)등을 사용하여 자물쇠 실린더 부분을 조작하여 키를 여는 수법인 소위 피킹에 의한 침입절도와 드라이버 등으로 구멍을 뚫어 철사 등으로 보조자물쇠를 비틀거나 돌려서 해정하는 수법 등 여러 침입수법에 의한 침입범죄 피해가 증가 추세를 보였다⁵⁷⁾. 이에 대비하여 탄생한 일본의 CP 인증은 네덜란드의 SKG KOMO와 같이 문, 창문, 셔터, 유리, 자물쇠 등의 건물부품 중에서도 특히 방법성능이 높은 건물 부품에 붙여져 있는 방법성능 인증마크이다⁵⁸⁾.

2002년 11월 25일에 일본의 정부 3개 부처인 국토교통성·경제산업성·경찰청과 아래의 9개의 건물부품 민간단체인 유리.필름 단체(판유리협회, 일본윈도우 필름산업협회), 셔터.도어.샷시 관련 단체, 자물쇠 관련 단체(일본 록 공업협회, 재단법인전국방법협회연합회), 주택 관련 단체(재단법인배터리빙, 사단법인건축업협회)가 「방법성능이 높은 건물 부품의 개발 및 보급에 관한 관민합동회의」를 설치하고 건물로의 침입을 막기 위한 각 건물 부품의 기준 등에 대해서 검토를 거듭한 후 방법성능 시험에 관한 총칙으로 「건물부품의 방법성능 시험규칙」을, 품목 별 각칙으로는 「건물부품의 방법성능 시험세칙」을 제정하여 방법성능 시험을 실시하였다. 시험에 통과한 유리, 필름, 셔터, 도어, 샷시 및 자물쇠는 부품별로 인증위원회를 개최하여 인증평가 후 인증 여부를 결정한다.⁵⁹⁾ 나아가 이 후에 사단 법인일본손해보험협회가 부품별 보급촉진방안 검토위원회에 참여를 하면서 인증제품을 적용한 건축물에 대해서는 도난이나 범죄피해보험료를 할인하고 있다고 한다(Sejawa의 설명). 건물부품의 방법 성능시험에 관한 규칙은 방법성능시험 관련 시험의 실시 및 참여자(시험지도원 등), 시험장소와 시험체의 준비 및 설치, 시험방법과 시험결과의 판정, 재시험과 비용부담 등의 항목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내용이 상당히 세부적으로 규정되어 있다.⁶⁰⁾

위 규칙에 의한 성능시험을 거쳐 침입공격에 뚫리지 않고 5분 이상을 버티

57) 주택 등의 건물에 침입 해 행해지는 범죄 (침입 강도 및 침입 절도)는 2003년 337,942건 발생하여, 10년 전 1994년에 비해 8만 9,017건 (35.8 %)도 증가했다(방법성능이 높은 건물 부품의 개발 · 보급에 관한 민관 합동 회의, 2004).

58) 일본 국토교통성 홈페이지 www.mlit.go.jp 참고

59) 재단법인 전국방법협회연합회 홈페이지 www.cbl.or.jp 참고

60) 박현호(2013) 방법인증제 국내 도입 모형 개발 및 법제화, 경찰청/범죄과학연구소.

는 저항 성능이 있다고 평가된 건물 부품 17 종류 3,227품목(2013년 5월 현재)을 공표⁶¹⁾하고, 「방법성능이 높은 건물 부품」의 보급을 촉진하기 위해서 「공통 호칭(방법건물 부품)」과 「공통 인증(CP마크)」를 제정하기로 한 것이다. 이후 2005년 9월에는 국토교통성에서 운영하는 「주택성능등급표시제도」의 평가표에서 방법에 관한 사항으로 ‘개구부의 침입 방지대책’을 성능표시 사항으로 추가하게 되었다. 여기서 방법성능 표시사항이란 주택의 개구부를 외부에서 접근의 용이성에 따라 그룹화하고 각 그룹마다 그에 속하는 모든 개구부에 대한 침입을 방지하는 성능이 확인된 부품(민관합동회의 방법건물부품 목록에 기재된 제품)의 사용량을 표시하는 것을 말한다.

라. 호주의 국가표준 AS5039 인증

호주에서는 문과 창의 보안수준이 높지 않아 침입범죄에 취약한 문제가 있어 방법문, 방법창에 대한 수요가 급증하였다. 그리하여 방법문과 방법창에 대한 성능기준에 대한 표준의 제정이 필요하게 되어(AS 5039), 2003년 3월에 뉴사우스웨일즈경찰청, 빅토리아경찰청, 웨스턴호주경찰청, 퀸즈랜드경찰청, 뉴사우스웨일즈주택국, 호주표준원, 모나쉬대학교, 웨스턴시드니대학교와 호주상공회의소, 그리고 건축부품 관련 민간전문단체인 알루미늄협회, 창문협회, 건축사협회, 주택산업협회, 호주보험협회, 락스미스협회, 방법창협회 등이 「방법문 및 방법창살」전문위원회(CS-023)를 구성하여 건축물, 특히 주택시설의 안전을 위해 방법문 및 방법창살 내부 재질 및 관련 하드웨어의 디자인 및 성능과 설치를 위한 요구사항 기준을 개발하고 표준을 제정하게 되었다.⁶²⁾

그리하여 『AS 5039 방법문 및 방법창살 내부 재질 및 관련 하드웨어의 디자인 및 성능』, 『AS 5040 성능인증 제품의 설치에 관한 시방』이라는 국가표준이 제정되었는데, 또한 보다 상향된 침입저항 등급과 수준을 다루는 표준인 『AS 3555.1 건물부품 - 침입 저항 시험 및 등급』등이 추가로 마련되어 있으며 이러한 국가표준에 따라 다양한 공인시험기관의 엄격한 성능 테스트를 통해 인증된 제품이 판매 및 설치되고 있다⁶³⁾. 이러한 표준에는 방법하드웨어의 재질, 방법하드웨어의 설치의 적정성 및 설치 강도 및 프레임 고정 등에 대한 기준 및 평가방법이 규정되어 있다. AS 3555.1에 따르면 침입공격 저항시험은

61) 국토교통성 홈페이지 www.mlit.go.jp 참고

62) 박현호(2013) 방법하드웨어의 침입범죄 저항성능 시험·인증 체계에 관한 모형 연구, 한국경호경비학회지, 제36호, 255-292

63) <http://www.saiglobal.com/PDFTemp/Previews/OSH/as/as5000/5000/5039-2008.pdf> 참고

공격수법 유형과 건물부품이 공격에 의해 뚫리는데 소요되는 시간에 의해 측정된다. 이 표준에서 다루는 건물의 범위는 주택, 상업건물, 공공청사, 기관 등 포괄적이며 건물부품은 문, 창문, 스카이라이트(천창), 환기구, 마루바닥 등이다.

성능시험의 경우 동적 영향 시험(Dynamic impact test), 쇠막대를 이용한 시험(Jemmy test), 끌어당김 시험(Pull test), 절단 시험(Shear test) 등으로 구성되며 각 단계별 순차적으로 시험이 실시되어 합격/불합격 여부가 판단된다. 어느 한 시험이라도 통과하지 못할 경우 시험은 불합격으로 처리되며, 모든 시험을 통과해야 성능시험을 통과한 것으로 인정된다. 그리고 화재시엔 대피가 쉽도록 침실의 1쪽 창은 항상 키가 없어도 탈출이 가능하도록 강조하고 있다. 인증제품을 사용한 건축물에 대해서는 도난 및 피해 보험료를 할인해주고, AS5039인증 제품에는 별도의 인증마크가 존재하지는 않은 것으로 파악되었으며 인증 갱신에 관한 사항은 아직은 확인되고 있지 않지만 침입수법의 강화와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성능기준이 지속적으로 개정되므로 인증갱신이 있을 것으로 알려져 있다.⁶⁴⁾

마. 미국의 ASTM 등 인증

미국의 방법하드웨어 인증 기준들은 지침이나 가이드라인 수준이 대부분이며 2009년 말 현재까지도 공공·민간 건축물(Public & Private Sector Buildings) 등에 보편적으로 적용 가능한 방법표준규격안(Universal Codes & Standards)은 아직 존재하고 있지 않다. 그럼에도 미국의 여러 주에서 건축물의 침입방지성능의 기준이 빌딩코드 등에서 법적인 의무사항으로 정착된 바 있다.⁶⁵⁾ 2009년 12월 현재 미국 전역에서 방법표준등급으로 정식 인정받고 있는 인증 규격은 미국재료시험학회인 ASTM(American Society for Testing and Materials)⁶⁶⁾과 UL(Underwriters Laboratories)⁶⁷⁾ 표준이 대표적이다.

64) NSW 셉테드 경찰관 Tina Xanthos의 설명임

65) Crowe, T, and Lawrence Fennelly(2013), Crime Prevention Through Environmental Design, 3rd Edition. by Publisher: Butterworth-Heinemann.

66) ASTM은 1898년 발족된 세계 최대 규모 민간규격 제정기구이며 최근 ASTM International로 개칭되었다. ASTM 표준규격은 어디까지나 임의 규격에 속하나 해당 정부기관이 ASTM 기준을 소비자보호 규격으로 적용할 경우 법적 구속력이 수반된 강제적 규정으로 쓰이기도 한다. 비영리기구로 공업 원료와 시험법의 표준화를 관장하는 기관이다. 재료의 용도 및 특성을 시험한 후 재료의 품질을 규격·표준화하여 Maker와 User가 보다 손쉽게 재료를 선정·취급할 수 있도록(increased confidence & reliable product comparisons) 유도한다. 금속, 도료, 플라스틱, 섬유, 석유화학, 건설, 에너지, 환경, 소비자용품, 의료기기, 컴퓨터 시스템, 전자제품 등 130개가 넘는 전문분야의 품질기준 및 시험법에 관한 합의를 도출하고 있으며, 현재까지 약 11,000 여종 이상의 규격이 제정되었다.

67) UL(Underwriters Laboratories): 美 시카고 일리노이주에 본사를 두고 있는 비영리 기관으로 기계류, 산업기기, 재료, 장치, 부품 등의 기능 및 안전성에 대한 평가테스트를 실시하고 각 평가항목별

여기서 미국의 방법제품/설비 성능인증의 핵심은 UL이나 ASTM과 같은 대형 민간시험기관(일종의 민간단체)이 자율적으로 자체적인 시험기준과 인증체계를 갖추어서 보험요율산정과 함께 범죄 등 각종 위험과 손실을 경감해주고 보험료 할인을 통해 비용효과적으로 위험을 관리하도록 유도해준다는 점이다. 관련 전문단체에서 엄격한 실험과 연구를 통해 표준을 개발 및 제정하고 이를 근거로 인증시스템을 구축 및 관리되고 있어서 시장논리에 의해 운영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바. 비교

해외 각국의 방법하드웨어 성능인증 체계를 비교기준에 따라 정리한 것은 <표 5>와 같다. 위 외국사례들의 공통점은 첫째, 인증을 위한 관련 법(직·간접적)이나 적어도 규칙을 마련하고 있다는 점이다. 다만 네덜란드, 영국, 미국의 몇몇 주의 경우에는 주택법이나 건축법이 이러한 인증제품을 강제적으로 사용하도록 의무화하고 있다는 점이 다른 국가에 비해 특징이라고 할 수 있다. 다만, 영국이 2015년부터 법적인 의무를 부과하기 시작한 것을 보면 나름 세계적 추세로 해석될 여지가 있다.

<표 5> 각국의 방법 성능인증체계⁶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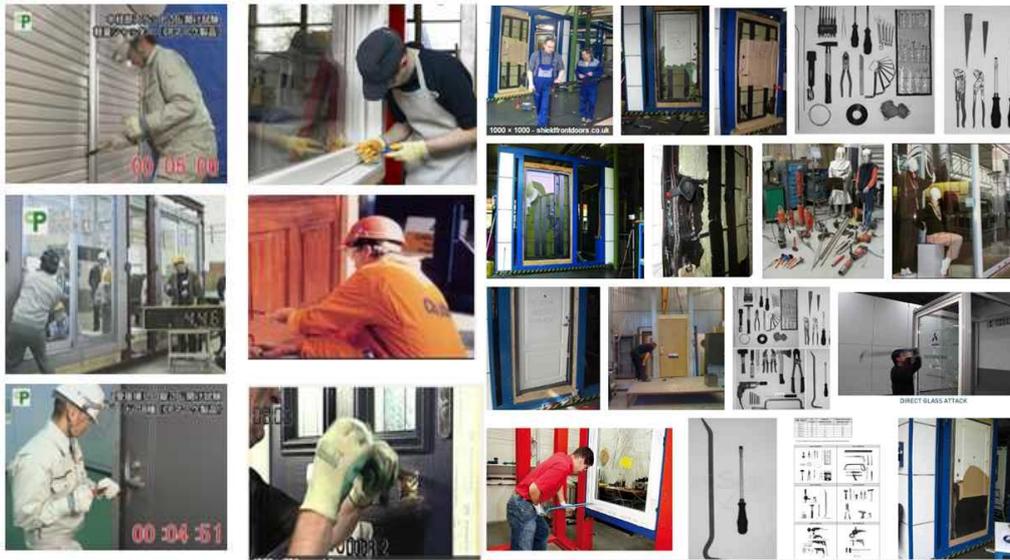
기준	영국 SBD 및 LPS	네덜란드 SKG/SKH	일본 CP	호주 AS	미국 UL/ASTM
인증마크					
관련규	-Crime and Disorder Act 1998 -정부도시계획정책고시(PPS1) -지속가능한 주택코드	- 주택법 1999 - 건축법 2004 개정	- 건물부품의 방법성 시험규칙 - 건물부품의 방법성 시험세칙 - 시험위원의 기준에 관한 세칙	주별로(NSW의 환경영향평가가법)에서 간접적으로 규제함	여러 주에서 방화방법을 인정하는 의무사항으로 규정
관련표준	유럽표준, 영국표준, 단체표준 있음	유럽표준, 네덜란드표준 있음	규칙과 세칙에서 상세 기준을 마련함	호주 국가표준 있음	민간시험기관에 의한 자체 표준

안전등급을 책정한다. 현재는 기계류, 자동차 부품 등 광범위한 품목들을 대상으로 안전도 평가테스트를 실시하고 있으나 애초 회사의 설립취지가 '안전사고 예방'에 있는 만큼 화재감지기, 방법기기, 경보기, 방탄조끼와 같은 방법제품들도 중점적으로 취급하고 있다. 표준규격을 통과한 제품들에 한해 UL 인증 마크 부착 및 UL 리스트 등재를 허가하고 있으며, UL 리스트에 등록된 제품들은 등록자 코드(File Number), 제품 코드 등으로 분류되어 UL 발행서적 또는 UL 홈 페이지에 열람 가능한 형태로 수록된다.

특징	- 경찰이 주도하는 인증과 민간단체가 주도하는 인증의 이분화 - SBD의 경우 인증은 다른 기관이 허용권을 비용받고 허가하는 체계임 - 친환경 건축물 인증 평가기준에 포함됨	- 민간합동 파트너십 사업으로 운영 - 인증제품 사용을 주택법에서 법적 의무사항으로 규정	- 경찰이 다른 기관, 단체와 파트너십으로 운영 - 시험에서 소용기준이 포함됨 - 이법으로 인해 부품이 파손시 부품교체비용의 일부를 지원하고 있음	- 경찰의 관여도가 낮음 - 국가표준에 의해서 시험기관이 작성하는 시험성적서만으로도 완료되며 인증기관은 체계임	- 경찰의 관여도가 낮음 - 민간단체 자율적으로 운영됨
인정기관 인증기관	인정기관은 정부와 경찰청(ACPO)/내무성, CPI(비영리법인)와 BRE	정부에서 인정한 기인 인증 KOMO에서 인정	정부에서 인정을 받은 관민합동회의(경찰청, 국토교통성/경제산업성, 민간단체)가 인증	별도의 인정, 인증기관 없으나 국가표준원에서 당 표준의 규칙에 따라 민간에서 자율적으로 운영	민간 시험기관에서 자율적으로 인증시스템 운영
공인시험기관	SBD는 공인시험기관이 다양하나 BRE가 독점 시험기관임	통합인증인 KOMO 인증을 위해 SKG와 SKH만 시험기관임	주로 3대 시험기관에 의해 이루어짐	시험기관 다양	UL, ASTM 등의 시험기관
인증갱신	인증갱신이 의무적	인증갱신이 의무적	인증갱신 없음	인증갱신이 있는 것으로 추정	인증갱신이 있는 것으로 추정
성능등급구분	저항 성능등급 있음	저항 성능등급 있음	등급은 없으며 Pass/Fail만 있음	저항 성능등급 있음	저항 성능등급 있음
건축물 인증과 연계성	SBD 건축물 인증과 연계됨	PKVW주택 인증과 연계됨	방법우량맨션 인증과 연계됨	확인 안 됨	확인 안 됨
방법효과	SBD주택이 비SBD주택에 비해 범죄피해율이 1/2로 감소하였고, 서 안전감 높음	- 주택침입강도 2%에서 0.1%로 감소 - PKVW주택 주민 안전감 높음	방법우량맨션 (매우) 안심(74.5%) 일반맨션 (매우) 안심(26.3%)	확인 안 됨	확인 안 됨
보험료 할인	인증제품을 설치한 주택의 경우 도난이나 범죄피해 보험료 할인해줌	인증제품을 설치한 주택의 경우 도난이나 범죄피해 보험료 할인해줌	인증제품을 설치한 주택의 경우 도난이나 범죄피해 보험료 할인해줌	인증제품을 설치한 주택의 경우 도난이나 범죄피해 보험료 할인해줌	인증제품을 설치한 주택의 경우 도난이나 범죄피해 보험료 할인해줌

둘째, 건물부품 등 하드웨어의 방법성능 및 디자인에 대한 상세한 시방이나 시험기준이 있다는 점이 공통이다. 또한 주택, 아파트, 상업시설 등 건축물에 대한 방법성능 인증의 중요한 평가기준에 창문, 도어, 잠금장치 등 하드웨어의 인증제품 사용이 중요한 요구사항으로 포함되어 있음으로 해서 건물과 건물부품 간의 방법성능에 있어서의 연계성이 존재한다는 점이다. 셋째, 엄격하고 객관적인 인증 운영이 담보될 수 있도록 주로 관에서 인정을 하고 인증기관과 시험기관에 대한 관리감독을 한다는 점이다. 민간부문인 하드웨어 제조사와 건설업자의 참여를 유도한다는 부분에서 인증제도가 공익성에서 벗어나 영리를 추구하는 방향으로 변질될 수 있다는 우려에서 엄격하게 비영리(non-profit) 공익사업으로 운영되고 있다는 점이다. 넷째, 일본을 제외하고는 인증은 주기적으로 갱신하도록 의무화하고 있으며 침입 저항 성능에 대한 등급제가 시행되고 있다는 점이다. 다만 인증의 갱신은 기술의 변화나 새로운 침입범죄 수법에 대응하여 의무적으로 갱신하고 있다.

68) 박현호(2014) 전게서의 내용을 편집, 수정함.



<그림 > 각국의 방범하드웨어 성능 시험 장면

다섯째, 인증시험원들은 대부분 교육훈련을 받고 경험이 있는 민간전문인이라는 점이다. 일본의 경우에는 독특하게 현직 경찰관들이 직접 시험원으로 활동하고 있는 특징을 보이고 있는데 이는 인증제도 도입 초기에 침입범죄 및 수법 수사 경험이 많은 경찰이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영국 또한 경찰이 인증사업을 주도하고 있는 점을 보면 이런 분야에는 경찰과 같은 사법기관의 적극적 참여가 중요함을 알 수 있다. 여섯째, 대부분 관련 보험료 할인이 되고 있다는 점과 방범효과에 대한 검증이 다소 이루어져 소비자의 신뢰가 있음을 알 수 있다. 미국의 경우에는 시험기관에서 보험요율을 산정하여 범죄피해 보험료 할인율까지도 계산해줄 정도로 보험산업과 연계성이 강하다는 점이 특징이다. 일곱째, 영국과 네덜란드의 경우에는 제품의 성능 시험 평가와 함께 제조사 공장 등의 경영이 제대로 운영되고 있으며 지속적으로 성능품질을 유지할수 있는지에 대한 품질경영시스템 심사도 하고 있는데 일본과 호주에서는 그런 절차는 생략되어 있다. 이는 엄격성과 관련 측면에서 보면 영국과 네덜란드의 인증이 더 우수한 것으로 판단된다. 마지막으로 영국, 네덜란드 사례의 경우 모두 유럽연합의 모든 회원국들(유럽표준 CEN 회원국)에게 적용되는 유럽표준을 준용하여 시험제도가 운영되고 있는 점을 볼 때 27개 회원국 전체가 상호 무역을 위해서는 유사한 시험인증제도가 시행되어야 한다는 점을 고려할 때 이것은 세계적 추세로 해석될 수 있다.⁶⁹⁾

69) 실제로 <http://www.winkhaus.de>, <http://www.holzforchung.at> 등 사이트 기사에서 독일, 오스트리아 등이 EN1627 표준에 의한 시험을 하고 있다는 기사를 쉽게 접할 수 있다.

제4장 외국의 CPTED 실행 사례

물리적 환경개선을 중심으로 한 1세대 셉테드와 사회문화적 네트워크형 참여와 협업 거버넌스를 강조하는 2세대 셉테드를 명쾌히 구분해서 설명하는 것은 쉽지 않은 일이다. 하지만 이 절에서는 독자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 이를 편의상 구분해서 서술하고자 한다. 따라서 이하 내용에서는 1세대 셉테드를 설명하면서 2세대 셉테드의 요소가 불가피하게 다소 가미된 경우도 포함될 수 있음을 밝히고자 한다. 또한 2세대 셉테드 파트에서 1세대적인 요소가 섞일 수 있음도 마찬가지다. 다만, 논의 상 편의를 위해서 1세대와 2세대 각 요소들을 구분하여 아래 <표>와 같이 제시하고자 한다. 원칙적인 측면에서 2세대 셉테드라는 것은 범죄라는 것이 형사사법 기관의 노력만으로는 통제, 특히나 예방하고 경감시키는 것이 근본적인 한계를 갖고 있기 때문에 지방자치단체, 유관 공공기관, 기업, 단체, 주민 개인 등 지역사회 구성원 모두가 책임과 관심을 가지고 공동으로 참여적 노력(participatory effort)을 해야 하는 범죄 예방 책임공유(shared responsibility)의 철학을 바탕으로 한다고 생각한다.

그렇다면 그러한 책임이 공유될 수 있는 사회문화적 구조와 체계를 갖추는 것이 중요한데 이는 지역 네트워크 구성, 다기관 및 주민 파트너십, 자원방법 활동, 이웃돌봄, 협의, 참여, 신고의식 등의 요소에 의해 이루어질 수 있다.

<표> 1세대 셉테드와 2세대 셉테드의 항목들

구분	대항목	소항목(예시)
1세대 셉테드 요소	감시성	-자연감시
		-기계/전자 감시
		-비공식/공식 조직에 의한 인적(人的) 감시
	접근통제	-출입구 차단기, 게이트, 펜스 등
	타겟하드닝(TH)	-현관문/창문의 잠금장치, 창실, 락 등
	영역성	-영역 간 분명한 구분
	활동성 지원	-공공공간에 운동, 휴식, 레크리에이션, 카페 등 시설물 설치
	유지관리	-강건한 공공시설물 -파손시설의 신속한 교체와 보수
표지 체계(signage)	-명료한 표지 체계와 합정구역의 회피	
도시의 미관과 매력	-공공예술품	
2세대 셉테드 요소	범죄예방 책임 공유	-영국 자치단체 별 범죄안전 책임부서 의무 설치
	주민/사법기관 간 파트너십	-영국 지역범죄무질서경감파트너십(LCDRP) -영국 자치형사사법위원회(LCJB) -캐나다 주민/교정국 파트너십 COSA
	지역범죄예방 네트워크	-영국의 지역 범죄안전코디네이터
	참여형 범죄위험평가와	-영국 범죄무질서환경조사(Audit)

	범죄안전지도 작성	-일본 안전지도 작성 프로그램 -네덜란드 Kids & Space 프로그램
	주민자원 범죄예방 프로그램	-자원방범순찰활동(Voluntary Patrol Service) -이웃감시(Neighbourhood Watch)
	주민 범죄예방 교육훈련	-지역안전네트워크 교육 -자원방범순찰대원 교육훈련 -시민법집행아카데미(CLEA)
	주민자치감시활동	-미국과 영국의 이웃감시(NW) -영국 코쿰워치(CW)
	시민자문위원회 및 협의체	-영국 주민경찰협의체(CPCG) -시카고 지역별 시민자문위원회(AC)
	범죄신고유도 및 범죄예방 홍보 프로그램	-크라임스토퍼스
	주민/사법기관 협의회의	-영국 경찰주민협의그룹 -미국 덴빌 범죄안전 타운미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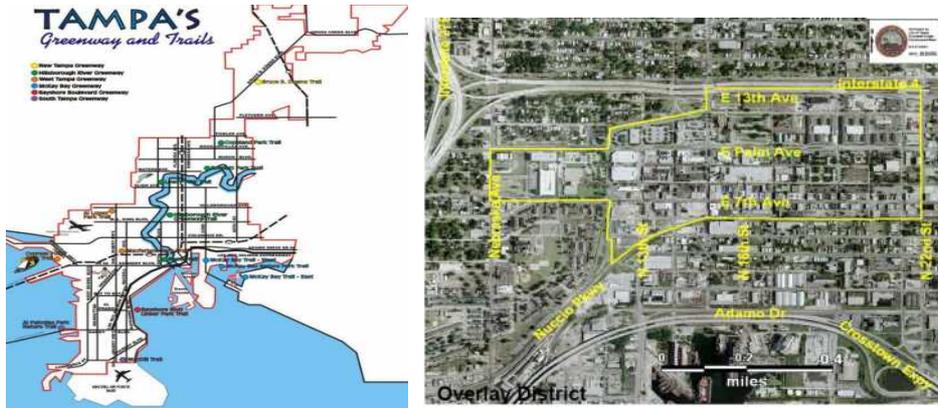
1. 제1세대 셉테드 사례

가. 북미의 셉테드 사례

1) 미국

2013년 기준 인구 35.3만 명의 플로리다 Tampa시(Tampa Metro의 경우 약 2백 97만 명)는 District 내에서의 개발 제안된 토지사용(land use) 변경에 관한 타운의 관심과 우려를 반영할 수 있는 Overlay District⁷⁰⁾, 즉 개발제한 요구사항을 통해 도로, 단지의 규모, 건물의 전면, 셋백(setback), 조경 및 가지치기, 잔디 배치, 주택의 배치, 조명, 공개공지, 공공예술 등에 대한 셉테드 설계 반영을 요구할 수 있다. <그림 3-12>은 West Tampa의 Overlay District 구역을 표시한 것으로 표시된 구역에서는 셉테드 관련 개발 제한 요구사항을 공동체의 이해관계인들이 협의를 통해 정해서 셉테드의 원칙과 철학을 반영할 수 있다.

70) Overlay District란 경관, 근린, 역사적 보존, 야생 동물의 이동로의 보호, 범죄안전 등과 같이 특별한 배려가 필요한 주민 관심 지역을 설정하고 그러한 배려를 반영하기 위해 기존 zoning 지역에 추가되는 건축/도시 개발 제한 요구사항(<http://www.smartgrowthvermont.org> 참고)



<그림 3-12> West Tampa의 Overlay District 구역(71)

<그림 >의 왼쪽 상단은 건축/도시 개발 제한 요구사항 중 가시성 확보와 시각적 차폐를 막기 위한 조경과 식재 기준에 따라 조성되고 관리유지 되고 있는 가로 및 공원의 실제 모습이다. 가로와 공원이 서로 개방적이고 잘 연결되어 있으면서 시야를 가리지 않게 잘 조성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 오른쪽 하단은 공공예술을 적용하여 교통신호제어기 합체(Traffic Signal Boxes)를 도시미관을 위해 책이 있는 책장처럼 디자인 적용을 하였다. 하단 좌우의 사진들은 실내 화장실에 넓은 통유리를 설치하여 자연 감시성을 강화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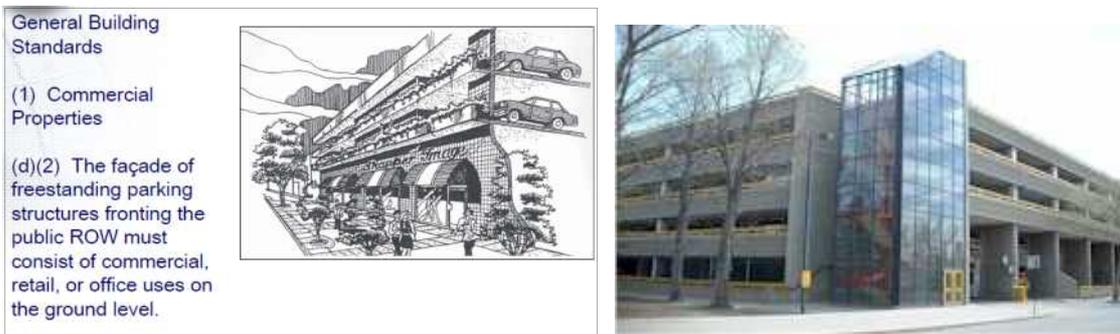


71) NICP(2010) Implementing CPTED into Planning & Zoning: Overlay District, NICP CPTED Training Conference, November 9-11, Crown Plaza San Antonio Riverwalk San Antonio, Texas.



<그림 3-13> West Tampa Overlay District 셉테드 조경 및 공공예술⁷²⁾

또한 상업 주차건물의 경우 <그림 3-14> (좌)와 같이 지상 1층에는 반드시 보행로를 정면으로 바라보도록 상업시설, 소매점, 업무용 시설을 배치하도록 요구하고 있다. (우) 그림은 이러한 자연감시와 건축물의 가시성 원칙을 반영하여 실제 개발된 사례이다.



<그림 3-14> West Tampa Overlay District 주차건물 셉테드

<그림 >은 셉테드의 국가기준을 적용한 디드로이트 시의 공립학교 설계 사례로서 영역성, 출입구 접근통제, 가시성, 타겟하드닝, 활동성 측면에서 모두 우수한 모범사례로 제시되고 있다. 학생들의 정서 순화를 위해서 차분한 계열의 푸른색을 많이 사용하고 있으며 심미적인 요소들을 많이 적용한 것이 특징으로 보인다.

72) <http://connections.greenvillesc.gov/forms/CityPresentation.pdf> 참고.



<그림 4> 셉테드 기준이 적용된 디트로이트 공립학교⁷³⁾

<그림 >은 쓰레기수거함에 대한 공공예술을 적용함으로써 도심의 흉물 중의 하나인 쓰레기함을 친근한 예술품의 하나로 승화시켜 도시 미관을 개선한 사례이다. 지저분하고 불쾌감을 주는 가로의 시설물이나 필요악과 같은 공공기물들이 이렇게 예술적인 노력으로 매력 있는 도시의 구성 품목으로 재탄생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모범적 사례로 평가될 수 있다.



<그림 > 쓰레기수거함에 대한 공공예술 적용⁷⁴⁾

<그림 >과 같은 버스정류장 공공디자인은 정류장 이용자에게는 심리적인 안전감을 줌과 동시에 버스정류장에서 대기 중인 여성을 잠재적 범죄 표적으로 삼아 악용하는 (잠재적 또는 연쇄적) 범죄자에게는 심리적인 억제와 방어기제로서 작용할 수 있는 유용한 셉테드 사례이다. 즉, 이 디자인에는 실제 물리적으로 사람이 존재하지 않으면서도 언뜻 범죄기도자에게는 상당한 수준의 자연적 감시와 조직적 감시(organized surveillance)의 눈초리가 존재하는 느낌을 주어 범죄심리를 위축시키는 효과를 기대해 볼 수 있다.

73) <http://www.walbridge.com/projects/mackenzie-prek-8-school>

74) <http://crimepreventionhq.com/category/cpted>



<그림 1-3> 자연감시 및 범죄방어 심리를 유발하는 버스정류장 디자인⁷⁵⁾

2) 캐나다

온타리오 주 Kitchner시의 도시계획은 온타리오도시계획법에 의해 셉테드 적용이 필수 전제 조건으로서 아래 <그림 7>은 키치너시의 한 근린지구에서 도로의 연결성(connectivity)을 해치지 않으면서 무단 접근을 합리적으로 제한하기 위해 주요 도로축선, 보행축, 공원 입구 시설, 교통정온화, 환승 루트, 커뮤니티 게이트웨이 등에서 가시성, 심미성, 기능성, 활동성, 유지관리용이성 설계를 한 사례이다.⁷⁶⁾ 캐나다의 셉테드는 도시의 연결성에 특히 방점을 두고 도시계획과 설계를 하는 경향이 강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⁷⁷⁾



75) NICP CPTED Advanced Course Manual(2008)

76) City of Kitchner Urban Design Manual 7.0 CPTED. www.kitchener.ca 참고

77) Safe Growth and CPTED in Saskatoon (2010), Crime Prevention Through Environmental Design Guidelines: An Illustrated Guide to Safer Development in Our Community. City of Saskatoon.



<그림 > 연결성, 가시성, 매력성을 고루 갖춘 지하보도⁷⁸⁾

온타리오 헌츠빌 타운에서 시내 곳곳에 장소 별로 지역브랜드 이미지와 랜드마크 표현을 위해 아름다운 동화 같은 벽화나 그림현판을 그리거나 붙여 놓은 사례이다. 미적인 아름다움 외에도 별도의 장소 표지판 없이 방문객의 위치를 알리고 확인하는데 큰 도움을 줄 수 있는 설계 요소로 평가될 수 있다.



<그림 > 지역의 랜드마크를 표시한 벽화 및 현판⁷⁹⁾

오랫동안 비어 있는 건물 벽면이 오히려 격리감을 주고 영역성을 감소시킨다고 판단하여 <그림 3-18>와 같이 Saskatoon시는 지역 예술가와 주민들이 함께 프로그램을 통해 제작한 뮤럴(mural) 벽화를 통해 보다 매력적인 경관과 공공디자인을 창조해낼 수 있으며(좌측), 아이들이 방과 후에 자전거를 타고 노는 공간들의 바닥을 예술가 등과 함께 청소하고 페인트 칠을 돕는 행사 등에 참여하게 함으로써 그러한 공간을 더 많이 사용하고 보존하는 경향을 갖게 된다고 강조한다(우측).⁸⁰⁾

78) <https://mycityspot.wordpress.com/category/connectivity/>

79) <https://mycityspot.wordpress.com/category/connectivity/>

80) Safe Growth and CPTED in Saskatoon (2010), Crime Prevention Through Environmental Design Guidelines: An Illustrated Guide to Safer Development in Our Community. City of

<그림 3-18> Saskatoon시의 셉테드 벽화 사례



*출처 : Safe Growth and CPTED in Saskatoon, 2010

<그림 >와 같이 오타와에서는 의회건물에 야간 조명을 통해 야간 활동성 증진을 통해 가로의 눈과 귀를 확보함으로써 야간에 도시를 이용하는 시민들의 심리적 안전감, 매력성과 평화감을 동시에 제공하고 있다. 이러한 야간 조명은 가로와 도심의 매력성을 증대하여 관광, 산책 등 시민들의 건전한 활동을 유도하고 도시의 건전한 야간 경제에 활력을 불어 넣어 줌으로써 경제활성화에도 도움을 주는 요소로 작용할 수 있다.



<그림 > 야간 도시 매력성과 활동성을 증진하는 조명 활용⁸¹⁾

나. 유럽의 셉테드 사례

Saskatoon. www.saskatoon.ca 참고
81) http://farm5.static.flickr.com/4143/4901820030_75de9ab126.jpg

1) 영국

영국은 셉테드 관련 SBD, Park Mark, LPCB 등 시스템과 제품 인정·인증 시스템이 많이 발달하였고 이는 앞에서 충분히 설명하였다. 여기서는 그 외의 사례들을 중심으로 살펴보았다.

차량을 돌진하여 상점 유리 등 앞면을 부수고 상품을 훔친 시간에 많이 훔쳐서 달아나는 범죄인 ram raiding이 빈발하는 지역에는 <그림 >과 같이 블라드를 설치하여 이를 방지하는데 지역 경찰 등 사법당국이 돕고 있다. 또한 주택가 골목길 사각 공간과 후미진 공간을 악용하여 침입하는 범죄를 막기 위해서 공용 게이트를 설치한 사례이다. 이 게이트는 방범성능에 대한 시험인증을 받은 것을 사용하고 이 골목길을 이용하는 주민에게만 열쇠를 지급하여 사용하도록 하고 있다(키 분실 시에는 지정된 공인열쇠업자에게 연락하면 도와줌).



<그림 > 상업지 차량이용 절도 방지를 위한 블라드와 주택가 침입절도 방지용 게이트 설치. 출처 <https://www.hillingdon.gov.uk>

또 정부 디자인위원회(Design Council)의 후원 하에 각종 공공시설물과 하드웨어 제품(product)에 대한 '방범기능 설계(Design Against Crime, DAC)'를 추진하고 있는 영국의 DAC 운동은 건축, 산업디자인, 엔지니어 등 기술자와 디자이너들이 디자인 실무에서 범죄에 대한 잠재적 피해 대상이 사람과 재물에 대한 저항력과 방어력을 높여 보다 사회적으로 책임성 있게 디자인(Socially Responsible Design: SRD)하려는 범사회적 노력이다.



<그림 3-20> 범죄안전 디자인이 적용된 공공시설물⁸²⁾

미시적으로는 자전거, 핸드백, 가방 도난을 방지하기 위한 제품 디자인, 불법적인 스케이트보드 타기나 낙서를 막기 위한 디자인도 매우 다채로운 셉테드 설계 아이디어로 실행되고 있다(<그림 >).



<그림 > 가방, 핸드백 도난 방지, 자전거 도난 방지, 보딩/낙서 방지 셉테드⁸³⁾

82) 해설 : (좌) 런던 Camden Borough에서 낙서, 광고물 부착, 스케이트보딩, 노숙인 눕기, 오물투기 등의 무질서 행위를 방지할 수 있는 기능과 재질로 설계된 벤치; (우) 런던 상업지역에서 현금인출기 영역성 표시 디자인 사례. * 출처 : Design Council, 2011; <https://kr.pinterest.com>

83) https://www.google.co.kr/search?q=design+against+crime&biw=838&bih=900&source=lnms&tbm=isch&sa=X&ved=0ahUKEwichNyuitPQAhVCi5QKHdBfA6QQ_AUIBigB

2) 네덜란드

<그림 3-24>의 암트테르담 트램역은 셉테드 기법이 적용된 사례로 유명하다. 우측 하단에 언덕 위의 살짝 튀어 나온 건물의 경우 셉테드 전문가에 의해 언덕 아래 트램역을 쉽게 내려다볼 수 있도록 배치 및 설계하였다고 한다. 또 트램으로 내려가는 계단과 승강기가 매우 가시적이고 투명하게 설계되었으며, 계단 아래도 충분히 보일 정도의 디자인이 적용되었으며 트램 정류장은 시각적인 방해요소가 거의 없이 충분한 가시성을 확보하고 있는 잘 된 사례라고 판단된다.⁸⁴⁾



<그림 3-24> 네덜란드 암스테르담 트램역의 셉테드 사례⁸⁵⁾

또한 전술한 네덜란드의 PKVW 인증의 요구사항으로서 주거지역에의 접근을 제한하기 위해 500가구 이내의 주거지역의 경우에는 <그림 3-23>와 같이 상징적 게이트를 갖춘 출입구가 2개 이하, 500가구 이상의 주거지역은 최대 4개의 출입구를 갖추어야 한다. 우측의 건물 사례는 가시성이 현저히 높은 건물 주동 출입구를 보여주고 있다.

84) 박현호(2013) 전게서

85) 2009년 현지 답사하여 직접 촬영



<그림 3-23> 네덜란드 PKVW 인증 받은 주택단지 사례⁸⁶⁾

3) 덴마크

정부에 덴마크범죄예방위원회(Danish Crime Prevention Council)를 운영하고 있는 덴마크는 ‘범죄예방의 날’을 지정하고 있을 정도로 셉테드를 포함한 범죄예방 환경 조성에 열정이 높다.⁸⁷⁾

<그림 3-26>은 주택 단지의 휴먼 스케일(human scale) 적용을 위해서 큰 규모의 단지를 작은 규모로 구역(division)을 만들어 주면 주민들이 자신의 구역에 더 큰 애착을 느끼게 만든다. 또한 마을 곳곳에 범죄예방 공동노력을 독려하는 로고 표지판을 설치하여 이를 독려하고 있다.⁸⁸⁾



<그림 3-26> 덴마크 주택단지의 소규모 블록화와 마을 범죄예방 표지판⁸⁹⁾

86) The Police Marque Secured Housing, PKVW. 2009년 현지 답사하여 직접 촬영

87) http://www.uhms.hr/datastore/filestore/19/AKN_Croatia-danish_crime_prevention_day.pdf

88) 후술한 유럽표준의 경우 휴먼스케일의 구역은 1에이커(4047 평방미터) 당 10~30개의 주택을 권장하고 있다.

89) Danish Crime Prevention Council, 2002

다. 오세아니아·아시아 셉테드 사례

1) 호주 및 뉴질랜드

<그림>에서 호주의 사우스오스트레일리아주는 트램 역을 설계할 때 미적인 아름다움도 충족하면서 자연감시성을 최대화하도록 트램역 하부의 넓은 평면 기둥 벽체에 커다란 둥근 사각형이나 타원형 구멍을 만들고 계단 난간도 투시형으로 디자인하여 이용하는 시민들의 안전감과 가시성을 극대화하고 있다.



<그림> 사우스오스트레일리아주 트램 역의 가시적 설계⁹⁰⁾

<그림>에서 시드니의 골목길에 안전감을 주는 셉테드 관련 조명 디자인과 생기가 느껴지는 화사한 페인트 색깔의 골목길 담벼락 환경 조성을 통해 이용자의 안정감을 제고하고 있다. 특히 여러 행인들이 이면도로에서 자연스럽게 걸어 다니는 모습을 보면서 장소 이용자들은 심리적으로 혼자가 아닌 다수의 사람들이 같이 있다는 안정감을 부여해줄 수 있는 잠재력을 갖는 디자인 요소라고 할 수 있다.

90) <http://www.slideshare.net/circus3d/case-studies-glenelg-tram-overpass>



<그림 > 안전감을 높이는 골목길 조명과 담벼락 컬러 조성⁹¹⁾

뉴질랜드에서는 오페라 하우스 주변 골목과 가로외 조명 개선(그림)을 통해 불안하고 칙칙해서 다니고 싶지 않거나 오히려 피하고 싶던 분위기의 뒷골목이 호기심과 재미로 일부러 이용하고 싶은 심리를 갖도록 유도하는 조명 디자인의 적용이라 할 수 있다.



<그림 > 뉴질랜드 웰링턴 오페라하우스 주변 골목길 조명 개선 사례

2) 일본

도쿄 아다치 구에 있는 방범우량맨션 인증을 받은 공동주택은 <그림 3-30> 과 같이 주동 출입구(좌측 상단)는 전면을 모두 유리로 설계하여 매우 가시적이었으며, 단지 주민이 공동 이용하는 자전거 보관소(우측 상단)는 안전하게 시정되었고 투시형 설계로 내부가 보이도록 하여 통행인에 의한 자연감시가

91) http://safe-growth.blogspot.kr/2011_11_01_archive.html

가능하도록 하였다. 건물 앞 보행로에 배치한 석조 블라드(좌측 하단)는 무단 주차를 방지하여 침입범죄자들이 차량을 건물 바로 옆에 주차해두고 재물 절취 후 신고 신속히 도주하는 것을 방지해준다. 마지막으로 단지 내 주차장을 비추고 있는 카메라와 보안센서등, 그리고 견고한 투시형 출입 게이트(우측 하단)는 주차장에서 발생하는 차량 관련 범죄와 주동 내 무단 진입을 방어해준다.⁹²⁾



<그림 > 도쿄 아다치 구 소재 방범우량맨션 사례⁹³⁾

<그림 >은 일본 아다치구에 있는 CPTED 타운으로서平成 24년 3월 13일 (2012년 3월 13일)에 건립되었고, 규모는 3.23헥타아르에 206 가구가 입주하였으며 가구규모는 평균 85㎡ ~ 130㎡이다. 이 마을개발의 핵심 목표는 범죄 안전이었는데 '방범CCTV가 필요 없는 마을'을 모토로 하고 있다. 우리나라는 CCTV가 셉테드의 핵심으로 이해되고 있으나 일본은 오히려 그 반대로 인식하고 있는 모습이다. 그 마을에는 실제로 마을 입구에 단 1대의 CCTV만 설치되어 있었으며 나머지는 자연적인 개념의 가시성, 접근통제, 영역성, 유지관리성, 타겟하드닝(창문, 현관문, 셔터에 대부분 CP인증 품목을 설치)에 집중하는 경

92) 박현호(2014) 전개서.

93) 2010년 도쿄 현지 방문 촬영 사진

향을 보였다.



<그림 > 일본 아다치구에 있는 CPTED 타운⁹⁴⁾

3) 싱가포르

싱가포르는 범죄율이 매우 낮은 국가로 정평이 나 있지만 국가셍테드가이드 북을 개발하여 보급할 정도로 아시아에서는 범죄안전환경 조성에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특히 가시성이 높은 도시경관과 야간을 중시여기는 경향이 있다. 건축물의 보안과 방범 강화를 위해서 매뉴얼을 제작하여 접근통제와 타겟하드닝 표준화 기술을 보급하고 있다.⁹⁵⁾

94) 2012년 도쿄 현지 방문 촬영 사진

95) www.ncpc.org.sg



<그림 > 싱가포르 도심의 가시적 설계과 야간 조명(www.ncpc.org.sg)

4) 말레이시아

연방정부 주택지방정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2010년 이후 추진해 온 Safe City 프로젝트를 통해 쿠알라룸푸르 시를 중심으로 여러 셉테드 요소들이 적용되어 왔다. <그림 3-32>은 시내 곳곳에 설치된 방범 반사경, 투시형 건물 등에 대한 사례이다.



<그림 3-32> 쿠알라룸푸르에 설치된 방범디자인 요소 사례들⁹⁶⁾

96) Federal Department of Town and Country Planning, Ministry of Housing and Local

<그림 33>은 쿠알라룸푸르 시에 설계된 자연감시성은 높은 상업건물 사례로서 계단실에 매우 가시적으로 밖에서 안이 잘 보이며, 선큰 형태의 지하 공간은 높은 자연채광 수준을 확보하고 있다.

<



그림 3-33> 쿠알라룸푸르 시의 자연감시성이 높은 상업건물⁹⁷⁾

2011년에는 TAMAN TUN DR. ISMAIL(706에이커, 6500세대, 33000명) 안전마을 액션플랜에 의하여 범죄 불안감이 많은 마을을 경계 펜스 설치, 조명 방해하는 수목의 가지치기 및 제거, 반사경 설치, 보행로 안전난간 설치, 가로 등 조도 개선, 교통정온화, CCTV 추가 설치 및 통합관제센터 구축, 이웃감시 구역 설정, 보안등 추가 설치, 블라드 설치, 표지판 개선 등을 실시하였고, 프로젝트 시행 전후 범죄 불안감과 안전 만족도를 조사하였다. 200명의 주민 설문 결과 조성 후에 안전도와 만족도가 크게 개선되는 성과를 보였다.⁹⁸⁾

Government Malaysia, 2010

97) Federal Department of Town and Country Planning, Ministry of Housing and Local Government Malaysia, 2010

98) 2016년 11월에 말레이시아 주택건설부(<http://www.townplan.gov.my>) 담당 공무원으로부터 이메일로 받은 셉테드사업 성과 보고서 참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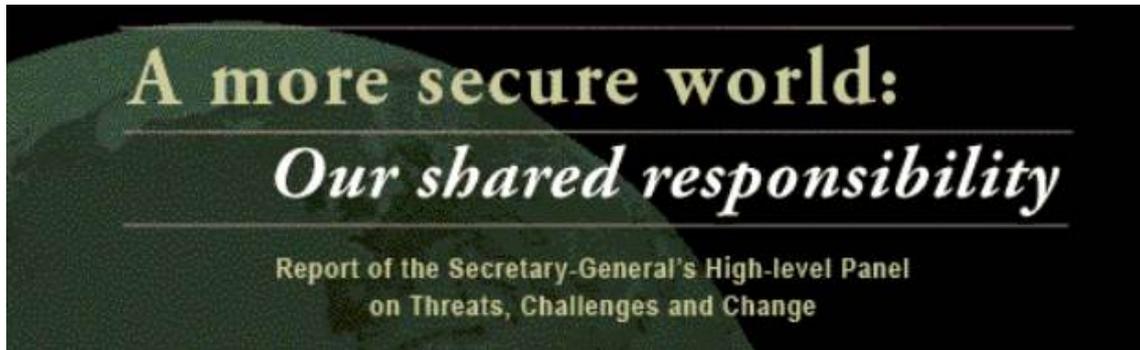
<그림 > TAMAN TUN DR. ISMAIL 안전마을 개선 사업

2. 제2세대 셉테드 사례

가. 범죄예방 책임공유(Shared Responsibility)

1995년과 2002년 UN가이드라인과 결의문들은 기업, 민간단체, 주민을 포함하는 모든 구성원들이 범죄예방 전략을 개발하고 실천하는 것에 대한 책임을 공유해야 한다고 강조한다.⁹⁹⁾

99) UN Guidelines on the prevention of crime 1995 and 2002 - emphasize the benefits of shared responsibility in developing and implementing prevention strategies, and specifically include the business and private sector



<그림 > 범죄예방의 책임공유에 대한 UN의 캐치프레이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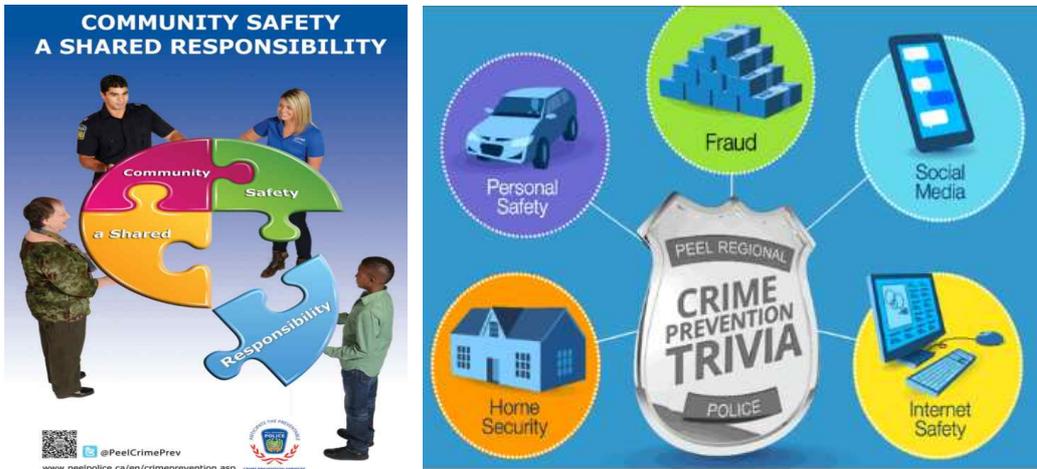
국제표준 ISO 26000 사회적 책임(Social Responsibility)도 기업과 조직의 범죄예방과 보안에 대한 사회적 책임을 역설하고 있다. 이것은 기존의 기업의 사회적 책임(corporate social responsibility)개념이 국제적 기준으로 확대되면서 기업의 활동이 지역사회의 범죄의 위험도를 낮춰주고 이를 예방할 수 있는 방향으로 나아가야 되고 기업이 셉테드와 같은 범죄예방의 사회공헌을 위한 기부활동에도 활발하게 참여해야 한다는 점이 포함되는 개념이다¹⁰⁰⁾

유럽연합 EU도 커뮤니티폴리싱(community policing) 패러다임을 강조하면서 도시범죄로부터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관련된 모든 조직, 기관, 사람들이 파트너십을 형성하여 지역사회의 특성에 맞게 협력적으로 범죄예방을 위해 의무적으로 노력해야 함을 밝히고 있다.¹⁰¹⁾

캐나다 온타리오의 지역안전부(Ministry of Community Safety and Correctional Services)에 의하면 '범죄예방이란 범죄 위험을 예측, 인식, 분석평가하여 이를 제거하거나 경감하기 위해 통합된 파트너십으로 조치를 취하는 노력'으로 개념 정의하면서 경찰 또는 민간의 범죄예방에 대한 지역공동체 구성원 모두의 공유된 책임을 강조하고 있다.

100) <https://www.tanaka.co.jp/english/about/csr/governance.html>

101) European Forum for Urban Safety. Community policing. International conference of Lisbon, 14-15 December 1998.



<그림 > 캐나다 온타리오의 범죠평에 대한 책임공유 철학

나. 민관 파트너십(Partnership)

영국에서는 1997년 신노동당(New Labour)의 대표적 선거 공약이면서 동시에 신공공행정(New Public Management) 정책의 일환으로 ‘범죠평에 단호하게, 범죠평의 원인들에게도 단호하게(Tough on crime, tough on the causes of crime)’라는 치안 정책의 캐치프레이즈를 집권 이후 구체적으로 실현하기 위한 법과 제도적 수단을 모색하였다(Home Office, 1999: 7-9). 더욱이 당시 범죠평로부터의 안전과 보호에 대한 시민의 요구가 거세져갔고 영국의 정치권에서는 치안에 대한 신뢰를 확보할 별다른 묘책도 없이 형사사법시스템은 실패를 거듭하고 있다는 비난을 받아 왔다. 이런 상황에서 정부에서는 지방경찰청의 경찰행정에 성과주의식 관리운영 적용을 강화시키면서 자치단체와 시민사회가 범죉 원인(환경, 보건, 교육, 주택 등)의 통제에 대한 1차적인 책임을 지게 함으로써 정부와 경찰의 치안에 대한 부담을 완화시키는 ‘책임화(responsibilization)’ 전략을 추구하게 되었다(Hope, 2005: 370-387).

결국 이러한 움직임들이 범죉과무질서법(Crime and Disorder Act 1998) 제5조와 제6조가 탄생하는 배경이 되었다. 이와 같이 범죉과무질서법은 입법의 미비로 인한 다기관적 협력체의 여러 문제들을, 지역에서의 범죉과 무질서 문제 해결을 위한 지역협력체의 법령상의 기초를 제공함으로써 해결하고자 도입된 것이다. 동법 제5조와 제6조에 의해 지방자치정부(도청, 시청 등)와 경찰은 다른 기관들과 함께 범죉안전협력체3)(crime and disorder reduction partnership)를 구성하여 매 3년 주기로 구체적인 활동을 수행해야 할 의무를 안고 있다. 예를 들면 인구 20만명 내외의 영국 포츠머스(portsmouth) 시의 경우 1998년 이 법의 시행으로 인해 지자체 산하 부서에 지역안전과

(Community Safety Department)를 시장 직속으로 설치하고 연간 약 50억 원의 예산으로 61명의 전담 직원을 두고 운영하고 있다.¹⁰²⁾

이 법은 또한 그 범죄감축전략의 구체적인 수행을 위해 지방정부의 모든 기관과 부서들이 예산 및 정책 결정과 세부 전략수립에 있어서 지역 내의 범죄와 무질서 감축과 지역사회 안전(community safety) 문제를 고려하여 적용하도록 법적인 의무를 부과하고 있다. 구체적으로, 영국 내무성 지침에 따르면 동법 제17조는“지방정부는 모든 업무에 있어 지역사회의 안전이라는 관점을 반영하여야 한다. 모든 정책, 전략, 계획 및 예산은 범죄와 무질서의 감소에 대한 기여라는 관점에서의 검토를 거쳐야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라고 설명하고 있다.⁴⁾ 이는 제17조로 인해 지방정부에 범죄와 무질서 문제에 대한 법적 책임이 부과됨을 의미하며, 만일 지방정부가 법령상 협력체를 구성하여 적절한 예방조치를 취하지 않아 심각한 범죄나 무질서 문제가 발생했다고 판단될 경우, 행정 또는 민사손해배상소송의 대상이 될 가능성이 있다는 점에서 상당한 의미를 부여할 수 있다.¹⁰³⁾ 즉, 지방정부가 셉테드 사업을 성실히 수행하지 않아서 주민이 쉽게 예방될 수 있었던 범죄피해를 입은 경우(예를 들면, 침입 피해를 입은 적이 있거나 침입에 취약한 구조를 가진 주택에 입주한 세입자가 다시 침입 절도나 강도 피해를 입은 경우)에 경찰과 지자체는 법적 책임에서 자유롭지 못하게 되는 것이다.

도시별 범죄무질서경감파트너십(이하 CDRP)는 다양한 법원, 경찰, 검찰, 민간단체, 시민그룹 등 다양한 주체가 참여하여 구성을 한다. 런던광역시의 경우 <그림 >과 같이 다양한 주체가 참여하고 있는데 이 중의 하나가 형사사법파트너십(Criminal Justice Partnership: CJP)이다. CJP는 영국 내무성, 법무부, 대법원이 협의하여 공동으로 2003년에 ‘국가형사사법위원회(National CJ Board)’와 ‘자치형사사법위원회(Local CJ Board)’를 설치하여 운영 중인데 거버넌스는 검찰청, 경찰청, 법원, 교도소, 보호관찰, 청소년범죄예방팀(YOT)의 수장이 위원으로 참여하고 있다. 자치형사사법위원회의 운영을 위해 정부 ‘형사사법개혁청(OCJR)’에서 달성할 목표와 프레임워크를 제시하고, 국가형사사법

102) 2008년 당시 포츠머스 시청의 홈페이지에는 아래와 같은 내용이 게시되어 있었다.

“범죄를 줄이고 포츠머스 시를 안전하게 만드는 것은 시 경찰과 우리 시청의 최우선순위 정책(key priorities) 중의 하나이다. 이와 관련한 문외는 60여명의 직원을 확보한 우리 시청의 지역안전팀(Community Safety Team)에 하기 바란다” (출처 : 박현호(2003) 범죄 및 무질서 문제와 지방자치 행정, 경찰학연구 제5호)

103) 잉글랜드와 웨일즈 전역에 376개의 법령상의 범죄와 무질서 협력체(statutory crime and disorder

partnership)가 구성되어 있다. 다기관적 협력체(multi-agency partnership), 지역치안 협력체(communitary safety partnership), 지역범죄무질서경감파트너십(local crime & disorder reduction partnership)는 모두 같은 의미이나 범죄와무질서 협력체라는 용어는 범죄와무질서법 시행 이후에 등장하였다.

위원회와 함께 성과를 감독 및 모니터링한다.



<그림 > 런던시의 범죄무질서경감파트너십의 멤버들

자치형사사법위원회의 주요 역할 및 업무는 경찰청장, 검사장, 교도소장, 보호관찰소장, 피해자지원단체장 등이 모여서 주기적으로(4~6주 단위) 만나서 동등한 위치에서 피해자 및 형사증인의 보호 및 지원 강화 대책을 상의하고 범죄와 재범(특히 상습범)의 감축 및 예방 대책 논의 및 결정하는 것이다. 더불어 형사사법기관(시스템 전체)에 대한 국민의 신뢰 개선 방안을 마련하는 것이다. 위원회 각 위원 간의 의사소통 및 지원 체계를 위해서 웹사이트를 구축하였고, 각종 정보의 공유 시스템을 마련하였으며, 예산을 확보 및 운영하고, 성과관리관(performance officers) 및 산하 팀을 운영하고 있다.

2009년 이전에는 CDRP와 LCJB가 별도로 운영되어 오다가 Policing & Crime Act 2009 시행으로 범죄의 예방과 형사사법에 의한 진압은 상호 분리될 수 없으며 유기적인 연계가 중요함을 강조하면서 통합 운영되고 있는데, 이로서 CDRP는 LCJB와 이를 위해 의무적으로 주기적인 회의를 통해 3개년 범죄감축 전략을 같이 세우고 이를 실천에 옮기며, 이를 평가받아야 한다.



<그림 > Policing & Crime Act 2009 시행으로 통합 운영되는 CDRP가 LCJB

캐나다, 영국, 미국 일부 주에서는 주민/교정국 파트너십인 COSA(Circles of Support and Accountability)을 통해 지역주민, 교정국, 관련 위원회가 협력하여 공동으로 출소한 성범죄자에 대해 보자 희망적이고 긍정적인 방식으로 감시, 독려, 관심 부여를 하는 파트너십 프로그램이다. 지역사회로 복귀한 성범죄 전과자들에게 낙인과 무관심, 접촉 회피를 하는 것이 오히려 재범에 적절한 기회를 준다고 판단하고 이들이 재사회화에 성공할 수 있도록 물심양면의 지원을 자원봉사주민들과 외부 전문가그룹이 주축이 되어 1년간 적극적이고 지속적으로 하는 방식이다. 고용, 의료, 사회복지, 주거 등을 지원하고 자주(거의 매일 또는 매주) 연락하여 상황을 파악하고 건전한 생활을 영위하도록 유도하고 감시하는 것이다.¹⁰⁴⁾ 셉테드의 조직적 감시(organized surveillance) 방식이지만 보다 세련되고 인권친화적이며 공동체의 결속력과 통합이라는 바람직한 방향으로 향한 다는 점이 차별점으로 해석될 수 있다.

104) <http://cosacanada.com/>



<그림 > 캐나다, 영국 등의 COSA 파트너십

다. 지역범죄예방 네트워크

유럽연합의 지역 범죄예방네트워크(European Crime Prevention Network: EUCPN)은 유럽 내에서의 범죄의 사회경제적 비용이 너무 크다는 반성에 따라 구축되었고, 웹사이트(<http://eucpn.org>), 세미나, 워크숍 등을 통해 셉테드, 민관파트너십 범죄예방 사례, 지역 범죄예방 성공사례, 유럽의 이웃감시 체계 등에 대한 지식과 경험을 활발하게 공유하고 있다.¹⁰⁵⁾

EUCPN KNOWLEDGE CENTER

Find a topic about crime prevention...

Advanced search

Case Study

Designing Out Crime

Summary

This case study examines the achievements of a partnership initiated & led by a group of local traders lobbying to reverse the economic decline of their shopping precinct serving a large estate of 3000 households in Mansfield. Vandalism in the rear car parking areas was frightening off customers which in turn was having a knock on effect on the economic and social climate of the whole precinct. With the help of Council regeneration, libraries and business support officers together with the local police, practical & highly effective solutions including environmental improvements & CCTV were developed in the first two phases.

Contents

- Aims/Objectives..... 3
- Where 3
- How did it do it?..... 3
- Who was involved?..... 6
- What did it achieve?..... 7
- Check list..... 7
- Contacts..... 9

FILTER RESULTS

RESULTS FOR: DESIGN OUT CRIME
Your search for "design out crime" gave back 335 results.

Designing out crime
Wednesday, 19 November, 2014

This case study examines the achievements of a partnership initiated and led by a group of local traders lobbying to reverse the economic decline of their shopping precinct serving a large estate of 3000 households in Mansfield.

SUBJECT

- Good Practice (261)
- EUCPN Output (174)
- Crime Prevention Policies (120)
- Research (60)
- Strategy (19)
- News (11)
- Members-only (2)

<그림 > EUCPN 홈페이지를 통해 공유되고 있는 국가 별 셉테드 케이스

영국에서는 1995년 이후 법정 기관 그리고 자원봉사단체를 합하여 500여개의 민관 조직들이 전국지역안전네트워크(National Community Safety Network [NCSN])를 구축하여 영국 전역에서 셉테드를 포함한 범죄예방과 지역안전에 참여하는 실무그룹과 실무자들의 업무를 정보 교류, 포럼, 워크숍 등 다양한 형태로 지원하여 왔다.¹⁰⁶⁾ 스코틀랜드에서도 유사하게 네트워크를 두고

105) <http://eucpn.org/about/network?language=24>

각종 행사를 개최하고 교육과 e러닝 교육, 보고서 발간, 마을안전대상 공모사업, 마을 범죄예방 미팅 등 각종 정보를 활발히 제공하고 있다.¹⁰⁷⁾



<그림 > 범죄예방을 위한 영국의 전국지역안전네트워크

또한 내부성(Home Office)와 법무부(Ministry of Justice)가 합동으로 2008년에 전국적으로 60개 지역에 설치한 지역범죄사법조정관(NCJ Co-ordinator)⁶⁾ 파트너십 활동 및 관리를 하면서 각 동(area) 단위의 동장들과 경찰서, 소방, 주택국, 보호관찰소 등과의 파트너십 협력을 조율하고 있다.¹⁰⁸⁾ 2008년 이후에 시행된 지역범죄사법조정관¹⁰⁹⁾ 제도는 Engaging Communities in Fighting Crime: A review by Louise Casey (Cabinet Office, 2008)¹¹⁰⁾ 정부조사보고서의 제안에 따라 이루어진 것으로 1984년 이후 범죄와 무질서법에 의해 시행된 파트너십 활동에도 불구하고 지역의 범죄와 반사회적 행위가 여전히 시민의 중대한 우려사항이고, 시민의 목소리가 작게 전달되지 않으며, 범죄자들이 처벌을 제대로 받고 있지 않고, 파트너십 체계 활동에 대해 제대로 알 수 없다는 지적이 반영된 것이다.

미국의 포틀랜드 Toppenish에서도 2009년 이후 주민들이 중심이 되어 지역안전네트워크(Community Safety Network)를 조직하여 지역의 다양한 범죄와 무질서 문제를 해결하여 왔다.¹¹¹⁾ 약물과 알콜 남용 방지 프로그램, 부모 참여 프로그램, 낙서 제거, 푸드뱅크, 백팩 프로그램, 지역 안전공감 행사, 청소년도서관 설립, 친교를 통한 공동체 의식 함양 등의 사업을 네트워크의 자원

106) <http://streetviolence.eu/?p=212>

107) <http://www.safercommunitiescotland.org/>

108) www.homeoffice.gov.uk 전국적으로 관련 형사사법기관들이 파트너십의 효율적 업무를 위한 실무 행정팀장이 제대로 없어서 파트너십의 관리 운영이 부실하고 어려움이 많다는 지적이 오래동안 제기되어 시행되었다.

109) 기존의 지역안전관에 비하여 보수의 2배 이상을 받고 더 많은 경험과 더 높은 학력, 대인관계 기술 등이 요구되는 직책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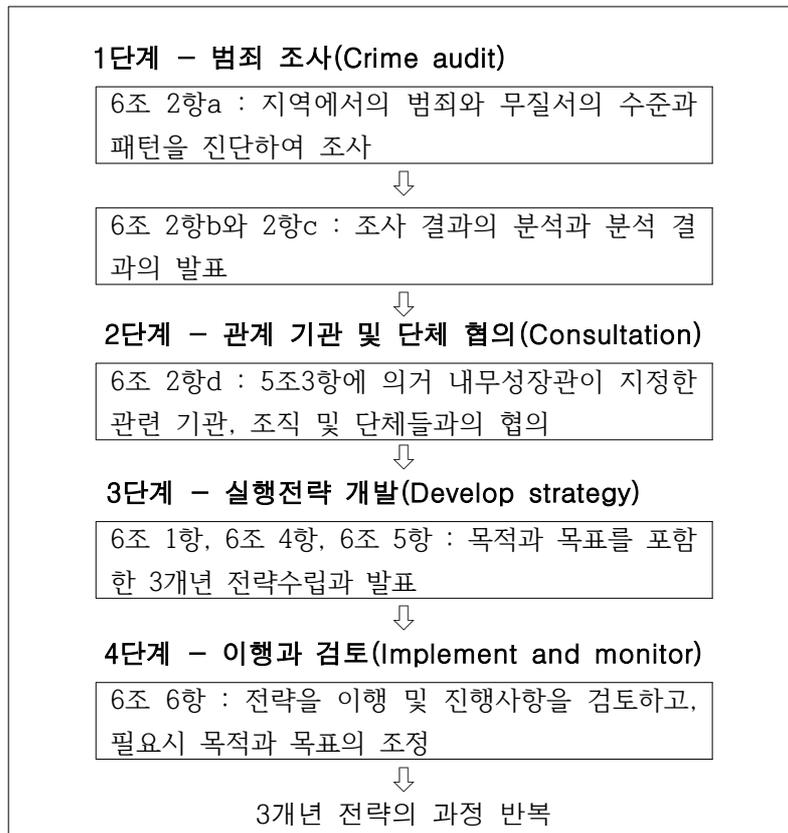
110) Cabinet Office (2008) Engaging Communities in Fighting Crime: A review by Louise Casey. London: Cabinet Office

111) <http://toppenishcsn.squarespace.com/our-story/>

봉사자들이 주도하여 왔다.

라. 참여형 범죄위험평가와 범죄안전지도 작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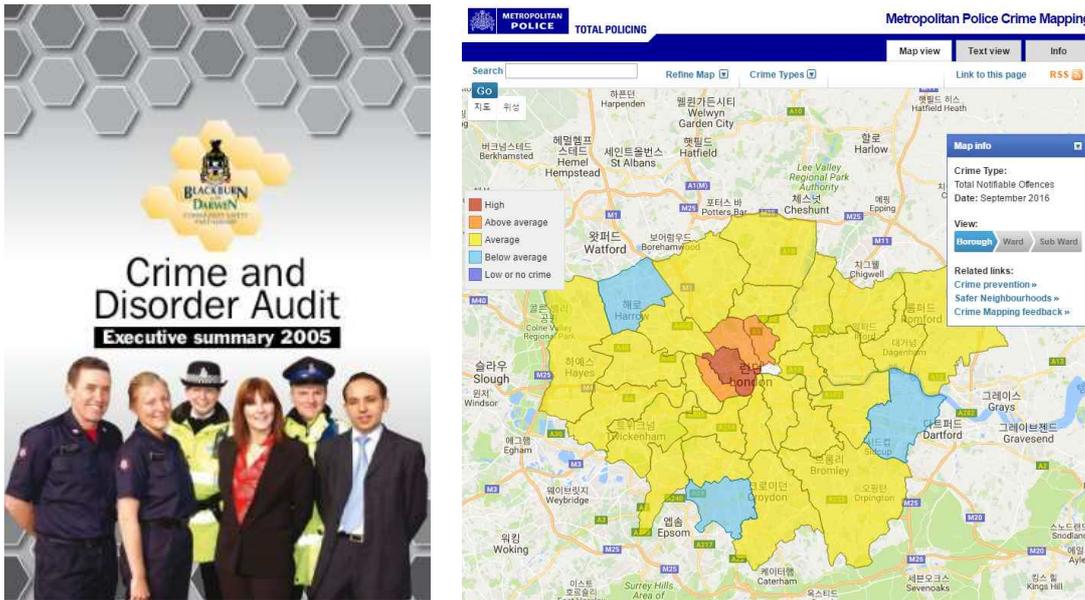
영국의 지역별 범죄무질서경감파트너십(CDRP)의 업무 프로세스는 <그림 > 과 같이 지역의 범죄와 무질서 문제에 대해 정밀 진단한 조사결과를 도출해내고(produce an audit of local crime and disorder problems), 조사결과에 기초하여 지역협의체에서 주민 및 각 단체들과 협의하고(consult locally on the basis of the audit), 조사결과에서 발견된 문제점들을 해결하기 위한 전략을 수립하며, 전략수행의 진행과정을 점검하고 평가하며(monitor and evaluate), 마지막으로 매 3년 주기로 그러한 과정을 반복하는 것이다. 여기서 범죄 및 무질서에 대한 위험평가 조사 단계에서 주민의 다양한 참여가 이루어진다.



<그림 > 영국 파트너십 협력체의 업무 프로세스

물론 경찰 등 사법기관이 범죄통계를 갖고 있기 때문에 주도를 하지만 지역 주민들에게 지역의 범죄와 두려움을 야기하는 장소와 그 위험 요인 등에 다양

한 의견 조사를 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 현재 방법 CCTV 설치된 곳이 어디에 있으며 앞으로 어떤 곳에 설치를 해야 할 것인지 등에 대해 기 공개하고 있는 범죄지도(crime mapping)를 통해 같이 살펴보고 불안을 호소하는 현장에 경찰과 같이 동행하여 그 이유 등을 물으며 자세히 같이 살펴본다.



<그림 > 영국 블랙번 시의 범죄/무질서 조사보고서와 런던시 범죄지도¹¹²⁾

일본에서는 범죄와 관련된 지도의 작성은 종래부터 실시되어 왔으나 그 대부분은 기존의 위험한 장소를 지도에 표시하여 아동들에게 배포하는 방식이었으나, 이와 달리 지역안전지도는 아동이 직접 참여하고 스스로가 작성하는 지도로 자신의 생활근거지의 지역에 대해서 직접 조사를 하여 범죄의 발생가능성이 높다고 판단되는 장소를 발견하여 그 정보를 지도로 작성하여 정리하는 것을 말한다.¹¹³⁾ 예를 들어 인가가 없거나 가로등이 설치되어 있지 않아 아동 혼자서 걷기에 위험한 장소를 기재하여 아동이 범죄의 피해자가 되지 않도록 범죄가 발생하기 쉽다고 생각되는 장소의 정보를 지도에 포함시키고 있다.

이러한 지역안전지도의 작성과정은 다음과 같다. 먼저, (1)범죄가 발생하기 쉬운 환경에 대해서 학습한다. 빈 집 또는 공원, 그리고 도로 등에서 접근하기

112) Blackburn City Council(2005) Crime and Disorder Audit, Executive Summary.

113) 한편 도쿄도에서는 2005년 7월 지방자치단체 직원, 학교교사, 경찰, 교사지망생, 지역방법자원봉사자 등을 대상으로 지역안전지도 만들기 지도자를 양성하는 도쿄도 지역안전지도전담과가 개설됨으로써 그때까지 별개로 진행되었던 정부 학교 경찰측의 담당업무가 일원화되었다. 이후 아동안전지도의 설계자인 코미야교수가 '지역안전지도제작설명서'를 간행하였고 이를 바탕으로 같은 해 12월 교육부에서 '등하교시 유아아동의 안전확보'에 대한 내용을 고시하면서 전국으로 확산되었다. 이승재 (2011). 아동안전지도 제작현황 및 발전방향. 건축, 55(8), 37-43. 참고

가 용이하며 외부로부터 잘 보이지 않는 장소 등을 발견하며, 쓰레기가 버려져 있거나 방치된 자전거 등이 무질서하게 놓여있는 등의 질서가 파괴되어 있는 장소에서 범죄가 발생하기 쉽다는 것을 자료와 시청각 교제 등을 활용하여 아동에게 학습시킨다. 둘째로 (2)지역을 직접 조사한다. 즉, 아동이 직접 지역을 실제로 조사하는 것으로 전술에서 학습한 내용을 구체적인 형태로 찾아내거나 어떠한 장소가 범죄가 발생하기 쉬운가에 대해 학습한다. 이러한 현장조사는 약 4~8명 정도의 집단을 구성하여 통학로 등을 중심으로 실시한다. 셋째, (3)직접조사한 성과를 지도에 표시한다. 즉, (2)의 성과를 지도로 정리함으로써 접근이 용이하며 외부로부터 잘 보이지 않는 장소, 또는 무질서한 장소가 어떠한 장소인지를 표시하여 이와 관련된 이해도를 향상시킨다. 넷째, (4)작성한 지도를 발표한다. 즉, 작성한 지도를 다른 그룹과 함께 발표하여 의견교환 등을 하고 자신들이 생각하는 범죄가 발생하기 쉬운 환경에 관한 이해도를 더욱 높인다.

보고서에 따르면 2006년에 八尾市전체에서는 노상범죄가 전년도와 비교하여 7%가 증가하였음에도 불구하고 八尾市에서 유일하게 지역안전지도의 수업을 실시한 竹淵지역에서는 노상범죄가 전년도와 비교하여 16%가 감소하였다고 보고하고 있다.¹¹⁴⁾



<그림> 일본 초등학교 범죄안전지도¹¹⁵⁾

네덜란드의 Kids & Space 프로그램도 공공디자이너들이 12세~18세 청소년들로부터 지역의 공공장소에서 청소년들을 위해 제공되었으면 하는 각종 용도의 시설과 공간에 대한 희망사항과 의견을 청취하고 청소년들 자신이 직접 도시건축 계획을 수립해보고, 모델을 만들어보며 그들의 아이디어를 발표하도록 지도한다. 이를 위해 처음에는 도시디자인에 대하여 몇 가지를 가르쳐주고, 국

114) 강경래 (2012). 아동의 범죄피해방지를 위한 선택적 전략. 소년보호연구, (20), 1-36.

115) <http://nirasakihokuto.seesaa.net/category/3650706-2.html>

내외의 사례들을 슬라이드로 보여줌으로써 청소년들이 사는 주변을 잘 볼 수 있도록 티칭을 하고, 그런 다음 서로 쟁점에 대해 논의토록 한다. 그 다음에는 현장을 방문하여 정해진 공간의 모델을 만들도록 한다. 마지막으로 그 청소년들이 젊은 디자이너로서 그들의 모델을 전문디자이너, 시청, 주민단체에게 발표할 기회를 부여하는 것이다. 엄격한 프로그램은 아니지만 공원이나 광장 등을 재개발할 때 청소년들이 참여하고 청소년들이 원하는 소비자 맞춤형 시설과 공간을 확보하는 참여형 디자인으로 유용하다고 보고되고 있다.¹¹⁶⁾

마. 주민자원 범죄예방 프로그램

주민의 자원 범죄예방 활동은 자원방범순찰활동(Voluntary Patrol Service)과 이웃감시(Neighbourhood Watch)가 대표적이라고 할 수 있다. 무급으로 자원봉사 차원에서 하는 활동도 있으나 적은 보수를 받고 지역의 범죄 안전을 위해 활동하는 자원방범원도 있다. 여기서는 두 가지 모두를 포함하여 설명하고자 한다.

1) 자원방범순찰활동(Voluntary Patrol Service)

먼저 영국은 다른 어떤 서구 나라들에 비하여 다양하고 다층적인(multi-layered) 지역 주민들이 자원 범죄예방 활동에 참여할 수 있는 제도를 갖고 있다. 지역 협력파트너십 시스템과 더불어 경찰의 지역치안 서비스강화와 확대를 위하여 그리고 보다 실질적이며 주민의 피부에 와 닿는 경찰 서비스를 제공하고 주민의 치안 요구에 부응하기 위해 주민 자원범죄예방 활동 참여 인력 면에서 아래와 같은 구조를 갖고 있다<그림 >.



<그림 > 영국에서 지역의 범죄예방을 위한 자원방범활동 인력 구조¹¹⁷⁾

116) BRE Trust(2005) Crime Opportunity Profiling of Streets (COPS), EU.

117) 본 논문에서 논외로 한 예비경찰(Special Constabulary)은 시간제 경찰관(part-time police force)으로서 지역사회에서 지원하는 무급의 자원봉사자들로 구성되며 모든 특별경찰관은 법정에서

먼저 예비(특별)경찰이란 영국의 시간제(part time) 자원봉사순찰원으로서 근무 시에 경찰제복을 입고 경찰과 거의 똑같은 권한을 갖고 물리력을 행사할 수 있는 일반 시민 자원봉사자들이다. 주로 경찰서에서 정규 경찰관과 같이 근무하면서 그들의 방범 업무를 돕는 역할 하지만 특별한 경우에는 수사나 다중 혼잡경비 등에도 동원이 되고 있다.¹¹⁸⁾ 2015년 3월 현재 현재 잉글랜드와 웨일즈 전역에 16,101명의 예비경찰관들이 있다.¹¹⁹⁾

무급 봉사하는 경우가 대부분이었으나 The Special Constables (Amendment) Regulations 2002의 개정으로 예비경찰관 수당(allowance) 제도가 생겨나면서 지방경찰청장이 정하는 금액의 한도 내에서 근무 시간에 따른 수당을 받는 곳이 많아지고 있는데, 이는 자원봉사하는 예비경찰들의 수가 감소하면서 공여지책으로 이루어진 것이다.¹²⁰⁾ 예비경찰관은 매주 원하는 시간대에 경찰서에 와서 근무를 하기 때문에 특별한 교대 방식이 없으며 필요시에 주로 정규 경찰관을 돕는 역할을 하는데 정규 경찰관과 또는 다른 특별경찰관과 도보나 차량 순찰을 한다. 특별경찰관은 방범, 일제검거(raid), 긴급출동, 영장 집행, 특별한 대규모 행사, 대규모 축구 경기, 미아나 가출인 소재수사, 교통사고 처리 뿐만 아니라 청소년 비행, 주거침입절도, 폭력 및 손괴와 같은 범죄 예방 및 수사 등 모든 현대의 경찰활동에 가담하고 있다. 형사 피고인의 체포에 가담한 경우 형사사건 재판에 출석하여 증언이나 증거 제출을 하기도 한다. 그들의 유니폼과 계급장도 정규 경찰관과 매우 유사하며¹²¹⁾ 조직 구조는 각 지방청이 매우 유사하다.

착용하는 장구는 수갑, 측면 핸들 봉(side-handled baton)이나 삼단봉(ASP baton), CS 스프레이(가스총과 유사) 등으로 동일하며 방검조끼를 포함, 개인 호신 안전 장비를 지급 받으며 특별경찰 지원자의 연령 제한은 보통 18세 3개월 이상 50세 이하의 지역사회 모든 계층의 지역주민이면 누구나 가능하며 그밖에 특별한 자격을 요하지는 않는다. 건전한 상식을 갖추고 합리적

정규 경찰관과 똑같이 선서를 하며, 정규 경찰과 같이 현장 근무를 하는데 근무 중에는 관할 구역 내에서는 정규 경찰과 동일한 경찰력을 갖고 있다. 특별경찰관의 임무는 지방경찰청마다 다양하지만 기본적으로는 정규 경찰과 거의 동일하다.

118) 박현호(2007) 자치경찰시대를 맞는 한국의 일선 경찰서비스 개선 방안 연구 - 영국의 경찰서 단위 치안서비스 모델 분석을 중심으로, 경찰과 사회, 경찰대학

119)

<http://www.homeoffice.gov.uk/publications/science-research-statistics/research-statistics/police-research/hosb1311/hosb1311?view=Binary>

120) <http://legislation.data.gov.uk/uksi/2002/3180/made/data.htm?wrap=true>

121) 이는 일반 시민들이 특별경찰관이 정규 경찰관과 구별되는 복장이나 장구를 착용할 경우 정당한 법 집행을 하는 특별경찰관을 정규 경찰에 비해 무시하거나 경시할 우려가 있기 때문이라고 설명하고 있다.

인 수준의 신체 건강 및 체력을 갖추고 있으며 보통 수준의 읽기와 쓰기 능력을 요구하고 간단한 체력과 신체 검사가 채용과정에서 이루어진다. 한 달에 최소한 16시간을 근무할 수 있어야 하지만 근무 시간은 자유로이 정할 수 있다. 특별경찰에 채용이 되면 정규 경찰보다는 짧지만 단기 훈련을 이수해야 한다.¹²²⁾ 예비경찰관이 정규 경찰관과 거의 같은 제복을 입고 근무 중에는 같은 경찰권한을 부여 받는 이유는 영국의 자치치안 전통에 기인한다. 즉, 영국의 치안 전통이 ‘시민은 경찰이고 경찰은 시민(The public are the police, the police are the public.)’이라는 철학에서 시민도 언제든지 필요시에는 방법 및 치안 인력으로 동원이 되어야 하며, 이를 위해서 가능한 많은 무급 자원경찰 인력을 확보하려 하는 것이고 더불어 그러한 자원 봉사를 통해 경찰 업무의 곤란성을 공감하고 또한 그 업무와 치안 유지의 가치와 중요성을 이해하도록 유도하는 것이다. 즉 모든 시민이 치안유지를 위한 협력방법의 파트너가 되어야 하고 그런 방향으로 제도를 이끌어가는 고도화된 선진국형의 민주적 치안 전략인 것이다.

치안보조관(Police Community Support Officers: PCSO)은 2002년 하반기부터 경찰개혁법(Police Reform Act 2002)이 시행되면서 시작된 정규 경찰 보조 제도인데 Police Community Support Officers라는 용어는 기존의 Police Auxiliary라는 용어보다 지역공동체에 중심을 둔(community-focused) 치안활동을 강조하기 위해 변경된 것이다.¹²³⁾ 런던에서는 2002년 9월에 도입되어 런던 경찰의 보조 역할을 수행하면서 범죄다발지역이나 우범지역에서 단 하루의 공백도 없이 보통 아침 8시부터 밤 10시까지 교대제로 근무하면서 범죄 예방과 진압을 위해 활동 중이다. 2003년에 약 1,200여명이던 치안보조관의 수는 2015년 3월 현재 12,331명으로 크게 증가하여 경찰의 치안 업무를 돕고 있다. 경찰관의 1/2~1/3 정도의 보수를 받고 일하는 계약직의 유급 치안보조관들은 런던시의 각 지역에 고루 배치되어 방범 근무를 하고 있으며 경찰관이 아니어서 동일한 임무를 수행하지는 않으며 Part 1 of schedule 4 of Police Reform Act 2002법에 의해 지방경찰청장(Chief Constable)의 특정한 범위의 경찰권 위임에 의하여 경범죄 통고처분, 흡연하는 청소년의 담배 몰수, 방치 차량 제거, 경찰관이 현장에 올 때까지 30분간 용의자에 대한 구인 등 여러 권한을 행사 한다.¹²⁴⁾

122) 참고 웹사이트 <http://www.scstuff.co.uk/>

123) 웹사이트 <http://www.mpa.gov.uk/issues/police/pcso.ht> 참고 (The term Police Community Support Officers replaces the previously used term Police Auxiliary. This accords with the terminology in the proposed legislation and reflects the community-focused, enabling role that is envisaged.)

124) 박현호 외(2009) 범죄예방론. 경찰대학, 진영디앤피.

지역공인안전관(Accredited Community Safety Officers : ACSOs¹²⁵)은 지역안전공인제도(Community Safety Accreditation Scheme : CSAS)를 통해 경찰청장이 자치단체의 근린방법원, 쇼핑센터의 민간경비원 그리고 스포츠 경기장의 방법 및 보안 인력들에게 낙서행위, 오물투기, 차량 방치 그리고 반사회적 행위를 단속할 권한을 공인하여 활동하는 자원방법원 제도이다. 지역 방법순찰 서비스를 제공하는 조직과 다양한 제도적 및 정책적 요건들을 만족시키는 조직이나 단체는 경찰청장과 이 제도를 통한 공인된 권한을 고용인들이 부여받을 수 있도록 협의할 수 있다. 인정할 만한 수준까지 교육훈련을 받은 조직의 고용인들은 이러한 공인을 각자 스스로 신청할 수 있고 권한을 공인받은 지역안전관들은 그들이 맡은 임무와 역할에 맞는 수준의 일부 또는 전부의 권한을 직무와 관련하여 범칙금 통고처분을 위해 성명과 주소를 말할 것을 요구할 수 있는 권한; 타인에게 부상, 경악 그리고 고통(distress)을 야기하거나 타인의 재물에 피해나 손실을 초래한 사람에게 성명과 주소를 말할 것을 요구할 권한; 반사회적인 방식으로 행동하는 사람에게 성명과 주소를 말할 것을 요구할 권한; 청소년들로부터 술과 담배를 몰수할 권한; 지정된 장소에서 음주를 중지할 것을 요구하고 지정된 장소에서 마시고 있는 술을 몰수할 수 있는 권한; 장기 방치된 차량을 치울 것을 요구할 수 있는 권한 등을 행사할 수 있다.

근린방법원(Wardens)은 2000년에 영국 환경교통지역부(DETR)와 내무부가 공동으로 시작한 제도인데, 2001년 4월에 토니블레어 총리가 영국 내에서 지역 주민들의 삶의 질 개선을 위해서 5천만 파운드(추후 4천 7백만으로 최종 결정됨)의 예산을 배정하기로 발표하고 나서 2002년 이후 약 700여명¹²⁶의 근린방법원 및 그 관리자들이 고용이 되어 지역의 안전과 환경 개선 업무를 수행해 오고 있다. 이 제도는 영국의 유명한 정부의 범죄예방 CCTV 설치제도와 마찬가지로 범죄 및 무질서 또는 환경 상의 문제점이 많은 지자체들이 중앙정부에 교부금 예산에 대한 입찰을 신청하여 경쟁에 의해 선정이 되는 방식을 택하였다. 범죄율, 무질서, 빈곤정도, 도시환경의 낙후 정도를 엄격하게 심사하여 보다 문제가 심각한 지역에 이 예산이 투입되었는데, 모두 84개 지역이 선정되어 이러한 문제 해결을 위한 인력인 근린방법원이 적게는 2~3명에서 많게는 10명 이상의 근린방법원이 배정되어 지역사회 범죄예방, 주거환경 개선 등을 위해 근무해 오고 있다.¹²⁷)

125) 내무성 통계에 의하면 현재 21개 자치경찰청에 약 450명의 지역안전관이 잉글랜드와 웨일즈에서 배치되어 근무하고 있으며 그 수는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http://police.homeoffice.gov.uk/>참고.

126) 2005년 현재 1천 여명을 추산되며 그 수가 증가하고 있다.

127) 박현호(2007) 자치경찰시대를 맞는 한국의 일선 경찰서비스 개선 방안 연구 - 영국의 경찰서 단위 치안서비스 모델 분석을 중심으로, 경찰과 사회, 경찰대학

이 제도는 주거지역을 대상으로 하고 주거지역을 구성하는 주택은 시청이 관리하는 공공주택뿐 아니라 사적인 민영 주택을 포함한다. 지구감시인의 채용은 시청, 민간경비회사, 주민대표기구, 주택연합회(housing associations), 또는 범죄와무질서법 1998에 의한 다기관적 협력체에 의해 중앙 정부예산으로 채용되어 지역의 구체적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이루어진다. 지구감시인은 유니폼을 입고 방범순찰, 환경 관리(직접 간단한 파손된 공공기물 보수, 낙서 및 오물제거, 조경 작업 등을 수행하기도 함), 단순 교통 관리, 경찰이나 시청에 정보제공, 범죄피해자나 범죄 피해우려 주택에 대한 방문 또는 이웃 간의 다툼이나 반사회적 행위(anti-social behaviour: ASB)¹²⁸⁾에 대응하는 업무를 주로 한다. 주민들의 눈에 쉽게 띄어 필요 시 도움을 받을 주민들의 접근성(accessibility)을 높이는 것을 중요시 여긴다.¹²⁹⁾

지금까지의 협력방법 인력구조를 요약 및 상호 비교해서 보면 다음 표와 같다. 각 협력방법 조직마다 인력, 설치 근거, 예산, 경찰과의 관계, 업무 범위, 권한, 장단점이 서로 다. 업무 범위가 매우 포괄적인 예비경찰도 있으나 지역 안전관과 같이 지엽적인 경우도 있다. 예비경찰은 정규 경찰과 거의 동일한 경찰권한을 부여받기도 하지만 근린방범원과 같이 현행범 체포권 외에는 전혀 권한이 주어지지 않는 경우도 있다. 또한 지자체의 사정에 따라 근린방범원을 치안보조관으로 대체하는 경우도 종종 발생하고 있다. 인력 확보를 위한 예산도 경찰, 지자체, 민간 등 다양한 소스에 의하는 차이를 보이고 있다.

<표 > 영국의 자원 범죄예방순찰원 별 비교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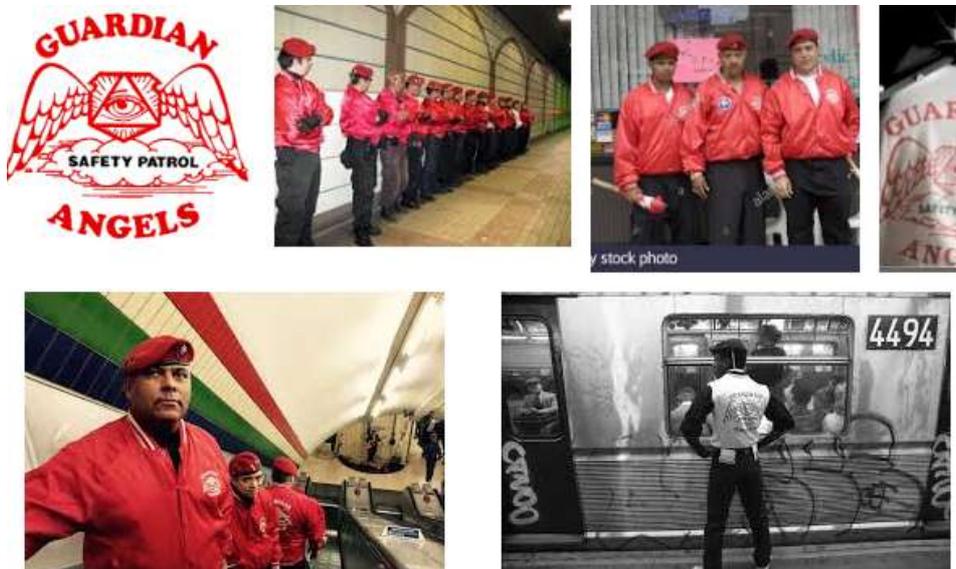
128) 반사회적 행위(ASB)란 언어적 폭력이나 괴롭힘부터 반달리즘(기물 파손행위), 협박 등에 이르기까지 폭넓은 개념이다. 일반 시민들에게 종종 인근에 살면서 경악, 스트레스를 야기할 수 있는 행위를 반복하는 것을 말하여, 넓게는 삶의 질에 관한 문제로서 다음과 같은 사례를 들 수 있다. 지속적인 불쾌감(nuisance), 언어적 괴롭힘(verbal harassment), 일정 장소에 대한 반복적인 무단 사용, 길거리에서 큰 소리로 떠들어대기(street brawling), 소음/대기 오염 및 공해, 손괴행위, 성가시게 굴기 등.

129) 박현호(2007) 자치경찰시대를 맞는 한국의 일선 경찰서비스 개선 방안 연구 - 영국의 경찰서 단위 치안서비스 모델 분석을 중심으로, 경찰과 사회, 경찰대학

구분	예비경찰(SC)	치안보조관(PCSO)	지역안전관(ACSO)	근린방법원(Warden)
사진				
인 력	16,101	12,331	약 4천명	약 1천명
설치 근거	The Special Constables Regulations 2002	경찰개혁법 2002	경찰개혁법 2002 지역안전관인제도(CSAS)	반사회적행위법(ASBA) 2003과 범죄와무질서법 1998
예 산	무급 봉사이나 2002년 이후 수당 지급이 확산 중	현재는 경찰위원회 예산 (경찰 예산), 향후 지자체 예산 부담 예상	공공 및 민간 조직 예산 (지자체, 병원, 민간경비업자, 축구협회 등)	최초 중앙예산, 현 지자체 예산
업무 범위	정규 경찰과 거의 같으나 수사 분야와 같은 특별한 분야에서는 제한적임.	경미한 반사회적 행위에 대해 통고처분(범칙금) 발부; 지정된 공공장소에서 소비되는 주류의 몰수; 흡연하는 청소년의 담배 몰수; 타인에게 위해를 가하는 데 사용되는 차량의 압수; 방치 차량의 제거; 경찰관과 합동으로 도로 검문 수행;	치안보조관과 유사한 범위 *범죄 예방 순찰 *화재 예방 *경범죄 범칙금 통고 처분 *질서 유지	방범순찰, 환경 관리(나서 및 오물제거 등), 단순 교통 관리, 경찰이나 시청에 정보제공, 범죄피해자나 범죄 피해유려 주택에 대한 방문 또는 이웃간의 다툼이나 반사회적 행위에 대응; 오물 투기지(fly tipping)나 범죄 행위자를 채증장비로 촬영 적발하여 행정관청 고발
권 한	정규 경찰과 동일	*경찰관이 현장에 올 때까지 30분간 용의자에 대한 체포 *생명이나 중대한 신체적 상해 또는 재산상의 손실을 방지하기 위한 주거 내 진입과 수색(위협 방지) *추가 입법으로 권한 강화되고 있음(대테러 업무 등)	CSAS에 의해 범칙금 통고 처분 권한 등 권한 범위를 지역별로 경찰청장이 사업자나 자치단체 등 신청 주체와 협의를 통해 직접 결정하여 부여하며 부여된 범위 내에서만 권한 사용 가능	현행범 체포권(citizen's arrest) 외에 특별한 권한 없음
장 점	경찰의 부족한 인력을 보강해주며 보다 공식적으로 협력방법에 도움을 줌	*경찰이 중요 업무에 집중하도록 도움 *수요자(주민) 지향적 치안을 가늠케 함 *실질적 범죄예방서비스 제공 * 긍정적 운영 성과 : 두려움 감소, 안전감, 주민 만족감 증대 (특히, 무질서와 청소년 범죄 관련)	*지역사회 치안에 공헌할 수 있는 공공 및 민간 조직에 경찰 권한을 제한적으로 공식 부여하여 지역의 안전 제고 *경찰의 예방치안의 한계가 있는 장소(놀이공원, 병원, 축구경기장, 유흥업소 등)를 위입을 통해 극복	*경찰의 지역 치안 관련 정보 수집을 도움 *수요자(주민) 지향적 치안을 가늠케 함 *실질적 범죄예방서비스 제공 *자치단체장의 치안에 대한 투자와 관심 제고 *긍정적 운영 성과 : 범죄율, 두려움 감소, 안전감 증대 등

미국의 경우에 시민자원순찰은 많은 지역에서 행해졌었으나 근래에는 민간경비업체에서 용역을 맡아 그 지역을 순찰해 주는 경우가 많아지고 있으며 주민들이 직접 자원순찰하는 경우로는 수호천사(Guardian Angels)와 보조경찰관(Auxiliary Police)이 있다. 수호천사는 비영리의 국제적인 자원봉사조직이다. 다른 시민순찰과는 달리 미국에서 전국적인 규모로 운영되며, 주로 소수민족 젊은이들로 구성되어 있다는 점에서 독특한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수호천사는 1979년에 뉴욕에서 ‘용맹한 13명의 뉴욕시 지하철 안전순찰대’

(Magnificent Thirteen Subway Safety Patrol)라는 이름으로 지하철에서의 범죄를 예방하는 활동을 하면서 시작되었는데, 현재는 전국적인 대규모 시민운동조직으로 성장하였다.¹³⁰⁾ 수호천사는 자신들의 유니폼인 티셔츠와 붉은 베레모를 쓰고 공원, 상가, 거주지역 등에서 범죄가 많이 발생하는 지역을 직접 순찰하며 범죄를 예방하고 범인을 검거하는 역할뿐만이 아니라 지역사회 주민들을 대상으로 범죄예방교육, 범죄예방에 대한 능동적인 참여운동 전개, 길 안내, 만취자, 노약자보호 등 봉사활동을 하고 있다. 일본, 이스라엘, 영국, 남아프리카, 캐나다, 뉴질랜드, 필리핀, 멕시코, 호주 등에 지부를 두고 있다 (guardianangels.org).



<그림 > 수호천사의 자원 방범순찰 활동

미국 자원 보조경찰제도는 뉴욕시를 포함한 여러 주의 도시에서 경찰이 지역주민과 함께 시민들이 자발적으로 지역사회 순찰활동 등에 참여하는 자원봉사 제도이다. 매년 뉴욕시경을 도와서 4,500명이 넘는 자원보조경찰이 활동을 하고 있으며 전국에서 가장 큰 규모이다. 만 17세 이상으로 건강하고 마약 전과가 없으며 영주권자인 영어가능자가 대상이다. 참여자는 보조경찰 제복을 입고 도보순찰, 자동차 순찰, 자전거 순찰을 하며, 해당 경찰부서의 눈과 귀 역할을 한다. 주거 및 상업지역, 공원 순찰, 지하철 출입구 등을 순찰하면서 지역사회의 범죄와 무질서 환경 요소를 발견하고 이를 CPTED차원에서 개선하기 위한 정보를 수집하는 역할도 한다.¹³¹⁾

130) 박현호(2007) 범죄예방론, 경찰대학

131) http://www.nyc.gov/html/nypd/html/careers/auxiliary_police.shtml

이밖에도 홍콩(HK Auxiliary Police), 싱가포르(Certis CISCO auxiliary police officer), 호주(Police Auxiliary Officer), 캐나다(Auxiliary constables), 독일(Freiwilliger Polizeidienst or Sicherheitswacht), 네덜란드(Reserve Police), 러시아(Voluntary People's Druzhina) 등 명칭은 다르지만 무급 또는 유급의 자원보조방법원들이다.



<그림 > 미국의 자원보조경찰 활동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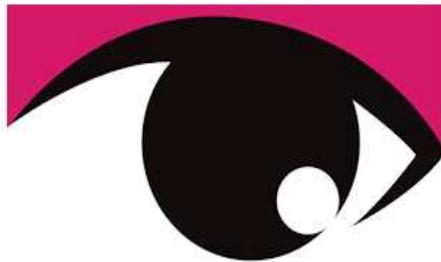
2) 이웃감시(Neighbourhood Watch)

이웃감시 프로그램(Neighborhood Watch Program: NWP)은 미국에서 주민이 주도하는 지역사회 범죄예방활동의 대표적인 사례로서 프로그램의 성과에 대한 긍정적인 평가와 아울러 많은 나라에서 유사한 프로그램을 채택하고 있다. 미국과 영국을 비롯한 각 나라에서 이웃감시활동의 대상구역과 활용 방법에 따라 범죄감시(Crime Watch), 이웃감시(Neighborhood Watch), 구역감시(Block Watch), 가정감시(Home Watch), 지역사회 감시(Community Watch), 코쿤 감시(Cocoon Watch) 등 여러 이름으로 불리는 이 활동은 1960년대 말에 처음으로 시작되었다. 미국은 지방자치제도가 고도로 발달한 나라이고 또 지역에 따라 자신들의 지역에 맞는 제도를 운영하기 때문에, 이 제도도 정형화된 틀이 있는 것은 아니고, 지역에 따라 다양한 방법으로 운영되고 있다. 이웃감시 프로그램은 지역주민들이 서로 간에 친밀한 관계를 유지하여 이웃 사람들의 습관이나 일상 활동에 대하여 잘 알게 되고, 이렇게 되면 자신들의 구역 내에서 의심스러운 사람이나 행동을 쉽게 발견할 수 있어 지역 내의 범죄를 예방한다는 것이다. 즉 이 프로그램은 지역사회의 공동체 의식을 부활시켜 지역사회의 전통적인 비공식적 사회통제능력을 통하여 범죄를 예방하려는 프로그램인 것이다.

이 프로그램은 1980년대 이후 미국에서 가장 대중적인 지역사회 범죄예방

프로그램이다. 여러 조사 결과에 의하면 미국인들은 이웃감시프로그램에 대하여 잘 알고 있고, 이 프로그램의 효용성을 인정하고 많은 사람들이 참여해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¹³²⁾ 미법무부 통계국(Bureau of Justice Statistics)에 따르면 미국의 다섯 가구 중에 한 가구가 이러한 프로그램이 실시되고 있는 지역에 거주하고 있고, 지역 내의 실질적인 참여율이 약 38%에 이른다고 한다.¹³³⁾ 이웃감시 프로그램의 운영에는 지방정부에서 재정적인 지원을 하고 있고, 일반적으로 보안관서(Sheriff's Department)나 관할 경찰국에서 관리하고 있다.

평균 15가정을 하나의 조로 구성된 이웃집단은 먼저 이 프로그램의 운영에 관한 세부적인 내용을 포함하는 규칙과 절차를 만들게 된다. 그리고 지역사회 회의 문제와 관심사를 논의하기 위해서 일반적으로 1달에 1번씩 모임을 갖는다. 또한 참여자들의 관심을 계속 유지시키고 새로운 참여자들을 모집하기 위하여 정기적인 모임을 갖고 지역신문을 발간하여 정보를 제공한다. 회보는 지역범죄통계의 최신정보, 범죄예방정보(특히 휴가나 휴일에 빈집 관리에 대한 조언), 관할구역 내에서 새롭게 형성된 이웃감시집단의 홍보, 지역의 이웃감시집단에 의해 예방된 범죄에 관한 자료 등이다. 이웃감시 프로그램의 효과에 대하여는 이 프로그램이 범죄예방과 범죄에 대한 두려움 감소에 효과가 있다는 연구결과가 있는 반면에, 별다른 효과가 나타나지 않는다는 상반된 주장을 하는 연구도 있어 쉽게 단정할 수가 없다. 그러나 의미 있는 것은 이웃감시의 범죄예방효과에 관한 자료에 상관없이 이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주민들은 그들이 범죄예방에 긍정적으로 영향을 미친다고 믿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는 점이다.¹³⁴⁾



132) Garofalo & M. LcLeod, The structure and operations of Neighborhood Watch Programs in the US, Crime & Delinquency 35, p. 326; D. P. Rosenbaum, A. J. Lurigio & P. J. Lavrakas, Crime Stoppers: A National Evaluation of Program Operations and Effects, NIJ, 1987, p. 104.

133) Bureau of Justice Statistics, Report to the Nation on Crime and Justice, 1988, p. 3.

134) 박현호(2007) 범죄예방론, 경찰대학

<그림 > 미국의 다양한 이웃감시 표지판

영국도 미국의 시카고 프로그램의 성공을 벤치마킹하여 Cheshire몰링턴에서 1982년에 처음 시작되어 현재 3백 80만 가구가 이웃감시 프로그램에 가입하고 있다.¹³⁵⁾ 포츠머스 시의 경우 포츠머스 이웃방범감시연합회(NWA)가 시 단위에서 조직되어 각 지역별 이웃방범감시 프로젝트와 활동을 조정하고 포츠머스 경찰 본부의 지역안전과와 상호 긴밀한 연락 및 주기적 모임을 갖는 등 경찰의 대시민 관계와 협력의 중대한 부분의 하나이다. 이 연합회의 활동을 위해 시청에서는 연합회사무소(Neighbourhood Watch Office)에 대한 운영 예산을 지원해주고 있으며 경찰은 매주 이웃방범감시 뉴스레터(Neighbourhood Watch Newsletter)를 발행하여 지역 주민들의 본 제도에 대한 인식 제고와 범죄 예방 홍보를 시행하고 있다. 이 연합회의 지역 대표들은 각 지역 경찰 지구대의 지역담당관(CBO) 및 지구대장과 매우 긴밀한 관계를 유지하고 있으며, 주민연합회나 주택연합회 등 다른 지역 연합회 조직들과 상호 연락과 왕래를 통해 이웃방범감시 활동을 독려하고 가입을 권유하고 있다. 2007년에 이웃가정감시네트워크(Neighbourhood & Home Watch Network) 웹사이트(<http://www.ourwatch.org.uk/>)가 내무성의 지원을 받아 구축되면서 정보 및 자원 교류가 더 활성화되고 있다.



<그림 > 영국의 이웃감시 프로그램

바. 주민 범죄예방 교육훈련

주민 범죄예방 교육은 다양한 수준과 범위에서 이루어질 수 있는데 자원순찰을 포함한 여러 가지 범죄예방 프로그램에서 참여하는 사람들, 방법활동의

135) https://www.gov.uk/government/uploads/system/uploads/attachment_data/file/115729/hosb1910.pdf

성격, 활동의 방법 등에 따라 교육 내용과 방식이 다르다.

1) 지역안전네트워크 교육

스코틀랜드 지역안전네트워크(SCSN)에서는 지역의 범죄문제에 대해 효과적인 해결책을 주민참여를 통해 도출하기 위하여 1일 6시간(점심 제공) 주민 대상 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범죄예방과 회복(resilience)을 위한 지역 주민의 공동체 참여 경험을 평가하도록 하고, 셉테드와 같은 공공재의 공동생산(co-production) 개념 등을 소개하고 논의한다.¹³⁶⁾

2) 자원방법순찰대원 교육훈련

영국의 자원방법활동제도인 예비경찰(Special constables)은 맨체스터 시를 기준으로 할 때 주중, 저녁시간, 주말시간에 주로 약 4~5개월 간의 교육훈련을 경찰교육훈련기관에서 이수해야 한다. 첫 12일 교육은 매주 토요일이나 일요일에 매주 빠짐없이 참석해야만 한다. 첫 세션에서는 형사 법규, 정책, 형사소송절차, 공공질서, 절도범죄예방, 가정폭력 등 법과목에 대해 배우며, 둘째 세션에서는 개인호신훈련코스로서 9일 간 안전장비(경찰봉, 수갑, 가스스프레이 등)활용, 응급처치, 컴퓨터시스템, 경찰 무전기 사용 교육을 배우게 된다.¹³⁷⁾

미국을 중심으로 한 수호천사(GA)들의 경우 1992년 New York Times 기사를 통해 참여자들이 훈련이 부족하다는 지적이 있었고, 이에 2011년 일리노이 시카고에서 개최된 국제컨퍼런스에서 수호천사 창시자인 커티스 슬리와는 공식적인 기초훈련시스템(the Official Guardian Angels' primary defensive tactics system)에 서명하면서 훈련을 시작하였다. 수호천사 기초훈련프로그램은 전문 법집행체포술담당관이 설계한 순찰팀원의 호신술, 무기 대응 시 생존술, 체포와 제압술 교육 등으로 이루어져 있다.¹³⁸⁾

3) 시민법집행아카데미(Citizen's Law Enforcement Academy)

미국의 시민법집행아카데미 또는 시민경찰학교(Citizen Police Academy) 등으로 불리는 사법기관에 의한 시민 교육은 다양하게 운영되고 있다. 플로리다나 콜로라도 Boulder County 등의 지역주민들이 자발적으로 참여하여 13주~23주 동안 매주 1회 3시간 정도의 교육과정을 이수하고 현장 실습(경찰관

136) <http://www.safercommunitiescotland.org/community-engagement-and-resilience/>

137) <http://www.gmp.police.uk/content/section.html?readform&s=F41265608C50757580257BD B0048CBE1>

138) GuardianAngelsTraining.org

과 인근 합동 순찰 및 범죄위험환경 요소 조사)을 한 후 셉테드 등 다양한 범죄예방 활동을 하는 제도이다. 물론 교육 내용은 법규, 총기사용, 비행청소년 문제, 시민의 범죄안전 외에 CPTED에 특화된 교육과정을 진행하는 곳도 있다.

특히 뉴햄프셔주의 맨체스터 시는 시청에서 12명의 지역경찰에게 셉테드 교육훈련을 통해 공인 자격을 갖춘 셉테드 교관들이 다시 시민경찰아카데미에서 시민들에게 셉테드 교육을 제공하고 있다. 이웃감시프로그램의 주민대표, 지역의 기업책임자, 보건소 등도 이 교육에 참여하고 있다. 교육콘텐츠와 커리큘럼은 전미범죄예방연구소(NCPC)에서 마련하여 지원하고 있다. 대학과 법집행기관이 협정을 맺어 공동으로 시민들에게 셉테드 교육과정을 운영하는 곳도 있다.¹³⁹⁾



<그림 > 다양한 형태의 대시민 셉테드 및 범죄예방 교육

다른 여러 나라를 분석해보면 각 국가별로 셉테드의 교육내용에 공통점이 많은 편으로 CPTED의 역사와 이론, 감시 · 접근통제 · 영역성 · 유지관리와 같은 CPTED 원칙과 원리(principles), CPTED 관점에서 지구단위 또는 단지 계획(neighborhood or site plan)에 대한 이해와 리뷰, CPTED 관련 도시 계획 법(laws)과 지방조례(Ordinance) · 코드(Codes) · 지침의 이해, 설계도면 읽고 해석하기, 조명 · 색과 인간행동, 범죄의 지리적 패턴 및 핫스팟(hot spot) 분석, 거리 현장 프로파일링과 범죄위험평가, 도시의 물리적 환경과 범죄의 상관관계, 현장 실습 등은 공통적으로 포함된 내용으로 분석되었다. 다만 각 국가와 지역 별로 문제가 되는 이슈나 관련 법제도에 차이가 있어서 그에 맞는 교육 내용이 차별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데, 영국의 경우 범죄와무질서법

139) <http://cop.spcollege.edu/AboutUs.htm>

(CDA) 1998에 의해 자치단체 및 타 공공기관 간의 범죄예방 파트너십이 강조되고 있기 때문에 CPTED 파트너십 강화를 위한 협력 방법과 노하우에 대한 내용이 강조되고 있다. 미국은 다른 국가에 비해 교통정온화(traffic calming)와 비디오 동영상을 통한 멀티미디어를 활용한 강의가 포함되어 있는 것이 특징이다. 또한 테러 피해를 경험한 미국과 영국의 경우에는 대테러 위험평가(risk assessment)와 대테러 디자인(anti-terrorism design) 내용이 포함되었고, 미국에서는 공공디자인(public art)이 CPTED 교육에서 강조되는 것이 특징으로 나타났다. 또한 호주와 뉴질랜드에서는 낙서와 밴달리즘에 대한 CPTED 내용이 강조되고 있다.¹⁴⁰⁾ 이 중에서 미국 NCPC를 통해 제공되는 시민 대상 셉테드 교육의 보편적인 커리큘럼을 살펴 보면 <표 >와 같다.

<표 > 미국의 시민 CPTED 교육 프로그램

내용		교육기간
기초	<ul style="list-style-type: none"> - CPTED 전략과 개념에 대한 이해 - CPTED와 조명 - 지역 계획의 이해 - CPTED와 계획, 구획화 - 보고서 작성 - 상징적 장벽과 실제적 장벽 - CPTED와 인간 행동론 - CPTED와 조경 - 실제 계획 사례 리뷰 	3일
고급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빛과 색깔이 인간의 행동에 미치는 영향 - CPTED 법령 - CPTED 법령 작성 - CPTED와 교통 진정화 정책(트래픽 카밍) - CPTED와 학교 - CPTED와 공공 예술 - CPTED와 테러리즘 - CPTED와 공원 - 지역 계획 리뷰 	3일

영국에서도 AKA Security Training & Consultancy Ltd. (ww.aka ltd.com)와 같은 민간전문교육기관에서 관련 실무자나 일반 시민들을 대상으로 5일 과정의 셉테드 교육을 운영(수료 후 시험 통과 시 자격증 부여)한 바 있는데 그 내용은 <표 >와 같다.

140) 신의기, 박현호 외(2008) 범죄예방을 위한 환경설계의 제도화 방안, 한국형사정책연구원.

<표 20> 영국 민간전문교육기관의 셉테드 교육과정

내용	교육기간	교육대상	비고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계획 (planning) - 보고서 준비 (dissertation preparation) - 제정된 법률 (legislation) - 소매점 지역에서의 DOC (designing out crime in the retail sector) - 환경범죄학 (environmental criminology) - 범죄 기회 프로파일링 (crime opportunity profiling) - 침투성 (permeability) - 위험 분석 및 관리 (risk analysis and management) - 조사 분석 (research and analysis) - 방화(放火) 방지 설계 (designing out arson) - 도시 계획 (urban design) - 쓰레기 다수 투여 지점 (tipping point) - 소매점 지역의 설계 (design in the retail sector) - 범죄 예방 조명 (lighting against crime) - 테러리즘 (terrorism) - 프레젠테이션 (presentations) - 사례 연구 (worked examples) - 개인 보고 청취 (personal de-briefs) 	5일	일반시민 법집행관(경찰관) 도시계획가 건축설계사 조경설계사 산업디자이너 범죄학자 민간보안전문가	*연 3회 교육 *교육수료증 및 시험통과 시 자격증 수여

사. 범죄신고 유도 및 범죄예방 홍보 프로그램

Crime Stopper Program(범죄해결사)은 1976년 New Mexico주 Albuquerque에서 처음 시작된 이후로 미국 전역뿐만 아니라 영국, 호주 등 서구사회에서 널리 알려진 범죄정보 보상프로그램이다. 이 프로그램은 시민들에게 익명으로 경찰에게 무료 전화를 걸어 접근이 쉽도록 만든 제도로서 시민들이 경찰당국에게 범죄와 관련된 정보를 제공하는 것이다. 전화를 걸어 범죄의 해결이나 단서로서 중요한 제보를 한 사람들에게는 일정한 보상금이 주어진다. Gresham 외(2001)는 런던, 타인티스(Tyne-Tees), 그리고 도르셋(Dorset)의 3개 지역에서 크라임스토퍼 제도의 효과를 연구하였다. 이 3개 지역에서 2000년 한 해 동안에 약 50만 건의 제보 전화가 걸려왔으며, 이 중에서 85%의 전화가 오퍼레이터에게 제대로 연결이 되었고, 11%는 수사당국이 중요성을 갖게 된 제보였다. Gresham의 분석에 의하면 이 11%의 중요한 제보 중에서 약 17%는 체포, 기소 송치 그리고 경고(caution¹⁴¹)로 이어졌다. 전반적으로는 연구 기간 동안에 접수된 전화의 약 1%만이 경찰 수사로 이어

141) 공식경고(cautioning)와 비공식 경고(informal warning)으로 구분될 수 있는데, 비공식 경고의 경우 훈계 방면과 같이 구속력이 거의 없으나, 공식 경고의 경우 경찰 데이터베이스에 입력이 되고 추후 다시 유사 범죄로 공식 경고를 받을 경우에는 입건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아진다.

지게 된 것이다. 본 제도의 경제적 비용효과분석을 한 결과, 크라임스토퍼 프로그램을 통해 도난당했다가 제보를 통해 회수로 이어진 재물의 가치가 3백 7십만 파운드 이상이 되어 제도 시행 비용을 크게 상회하였다. 이 연구 분석을 통해 크라임스토퍼 프로그램은 비용효과적이라는 충분한 증거를 확보하게 된 것이다.¹⁴²⁾ 물론, Gresham의 연구 분석 결과 크라임스토퍼 제도의 효과성이 지역 별로 편차를 보이기는 하였다.

효과가 높은 지역의 경우 콜센터 인력과 시설 면에서 상대적으로 충분하였으며, 보다 많은 시간 운영되었고(24시간 기준), 수사나 기소가 가능한 전화 제보의 상세한 내용을 잘 기록하였으며, 이 제도에 대한 홍보가 더 잘 이루어졌다. 연구 대상인 해당 3개 지역에서 21%의 중요 제보들은 신문 방송 등 언론매체의 크라임스토퍼에 의한 제보의 촉구에 기인했던 것으로 분석되었다. Callinger(2003)의 호주에서의 연구에 의하면 94%의 시민들이 이 제도의 존재를 알고 있었으나, 크라임스토퍼의 주요 기능에 대한 질문에 대해서는 72%만이 그 제도적 기능에 대해 제대로 알고 있었다. 또 호주에서는 93%, 영국에서는 73%의 응답자가 제보가 있으면 ‘반드시 크라임스토퍼에 전화를 할 것’이라고 응답하여 매우 긍정적이었다. 이렇게 크라임스토퍼 프로그램은 전체적으로 범죄의 성공적인 수사나 기소에 상당한 도움이 되었으며, 이 제도에 대한 홍보는 시민들의 제보를 촉구하는 것뿐만 아니라 그 제도의 여러 긍정적 기능을 사람들에게 알리는 역할을 한 것이다.



<그림 > 다양한 크라임스토퍼스 홍보용 로고

시민들의 범죄피해 행동 패턴에 영향을 미치기 위해 이루어진 홍보 캠페인 사례로는 북아일랜드 사우스 벨파스트(South Belfast)에서 이루어진 ‘갯 홈 세이프(Get Home Safe)’ 캠페인이다. 이것은 반사회적 행위와 음주로 인한 폭

142) Gresham, P., Stockdale, J., Bartholomew, I. and Bullock, K. (2001) *An Evaluation of the Impact of CrimeStoppers*. Briefing Note 10/01. London: Home Office.

력을 감소시키고, 시민들에게 치안에 대한 신뢰를 심어주기 위해 이루어진 것인데, 이 지역에서 폭력 관련 기록들을 분석해 본 결과, 범죄 다발 장소는 폐점 시간대의 지역 술집과 나이트클럽이었음이 드러났다. 이러한 문제 해결을 위해 여러 가지 프로그램과 프로젝트를 수행할 다양한 범 기관적 파트너십(협력체)이 수립되어 술집과 나이트클럽에서 근무하는 경비원에 대한 등록제도 (door supervisor registration scheme)를 통한 폭력 전과자인 경비원의 근무 방지, 길거리 음주 행위 금지 조례 제정, 일명 ‘펍 와치(Pub Watch)’를 통해 주취 폭력에 대한 경찰과의 무전 교신에 의한 신속한 신고 유도, 문제 지역에 대한 방범카메라 설치, 경찰의 알코올사범 지자체 위탁 프로그램(alcohol referral scheme¹⁴³) 등을 시행하였다. 더불어 이 프로그램의 핵심은 전략적 마케팅 캠페인의 개발이었다. 이 캠페인의 목적은 해당 지역에서 18~24세의 청소년들이 음주를 할 때 주의 깊고 현명하게 하도록 촉구하고, 안전하게 귀가 하며, 주취 폭력이 반사회적이라는 메시지를 전달하기 위한 것이었다. 이 캠페인의 구체적 이행을 위해 파트너십에서 ‘Think Twice(두 번 생각하자) - Get Home Safe’라는 마케팅 슬로건을 개발하고, 각 버스 정류장, 화장실, 지역 버스 등에 대형 포스터와 현수막을 부착 및 설치하였고, 지역 신문과 방송을 통해 광고를 하였다. 심지어는 아이디어를 고안하여, 술집 맥주 잔 받침과 화장실 소변기에도 홍보를 하였고, 포켓 사이즈 전단지를 제작하였으며, 미디어는 신문, 잡지, 라디오, TV 전체를 아우르는 폭넓은 홍보가 이루어졌다.¹⁴⁴



<그림 > 벨파스트의 범죄피해 방지를 위한 ‘안전귀가’ 홍보

또한 Web과 Laycock(1992)은 차량의 문을 잠그지 않는 운전자들에 대한 홍보를 통해 차량 문을 시정하지 않은 채 방치한 운전자의 비율이 1972년

143) 주취로 인한 재범과 알코올에 기인한 해악을 감소시키기 위해 경찰과 지자체가 파트너십으로 협력하는 프로그램으로서 시청 등에서 경찰이 위탁한 주취사범에 대한 특별 알코올 관련 교육 (education), 상담(counseling), 치료(treatment) 서비스를 제공한다. 이를 위해 시청은 특정 장소에 주취사범을 위한 특별한 안정 및 치유 시설과 인력을 갖추고 있다(Its objectives are to provide police with the facility to refer offenders whose offence is alcohol related to the scheme.)

참고 웹사이트 http://www.aquarius.org.uk/arrest_referral.htm

144) 박현호(2009) 범죄 예방을 위한 과학적 홍보활동 : 외국 사례를 통한 한국 경찰의 홍보 전략 개선, 경찰학연구, 제6권 제1호 통권10호.

22%에서 1992년 4%로 감소함으로써 차량 운전자에게 홍보 캠페인이 미친 분명한 영향을 강조하였다.¹⁴⁵⁾ 이른 뒷받침하는 근거로 Laycock과 Tilley(1996)는 차량 절도범을 지역 사회의 약자를 괴롭히고 희생양으로 삼는 짐승으로 묘사할 목적으로 시행된 ‘하이에나(Hyena)’라는 캠페인에 대한 효과성을 강조¹⁴⁶⁾하였는데, 이와 관련한 마케팅 리서치에 의하면 하이에나라는 동물의 이미지는 더러운 쓰레기를 수거하는 욕심 많은 짐승이라는 이미지로 사람들에게 각인이 되어 있고, 1992년에 하이에나 캠페인에 전국적으로 3백만 파운드의 비용이 지출되었는데, 이로 인해 차량에 경보기를 설치하거나 주차 시 운전대 잠금장치(crook-lock)를 설치하게 된 운전자가 23%에서 28%로 증가하였으며, 주차를 하기 위해 보다 안전한 장소를 찾게 된 운전자도 9% 증가하였다. 이 홍보에 대한 인지도 조사에서는 96%의 응답자(운전자)가 이 캠페인의 ‘방법과 안전’에 대한 메시지를 이해하고 있었으며, 84%는 하이에나 로고를 인지하고 있음이 밝혀졌다.¹⁴⁷⁾

영국의 클리블랜드 경찰은 정기적으로 범죄예방 홍보용 트레일러를 활용하고 있다. 그 목적은 트레일러의 활용으로 최소의 인력으로 범죄다발 지역을 대상으로 효과적으로 범죄예방 조언(advice)을 전달해 준다는 데 있다. 이 트레일러는 ‘A’ 프레임으로 디자인되어 있고, 양 측면에 범죄예방 관련 조언 문구가 가시적으로 전시되어 있다(<그림 6> 참고). 또 내부에는 육성 또는 녹음 오디오 메시지 전달을 위한 내장 카세트 플레이어가 장착되어 있다. 이 트레일러의 장점은 이동식(mobile)이라는 것이고 움직이는 동안에도 홍보 메시지 전달이 가능하다는 점이다. 트레일러에 쓰여진 문구는 ‘닫자 그리고 잠그자(Shut it and lock it)’라는 것과, ‘차량에 귀중품을 눈에 보이게 놓으세요. 내가 유리창을 깨고 쉽게 집어가도록!’라는 내용과 함께 ‘차량 절도범(A Car Criminal)’이라는 싸인이 되어 있어 생생한 메시지 전달을 하고 있다. 이 트레일러의 방법 효과성 연구에 의하면 주차장에서 활용된 70회의 홍보에서, 차량 범죄가 이 트레일러가 존재하는 동안에는 단 한 차례만이 발생하였다. 차량 관련 절도가 많은 영국에서는 경이적인 감소효과이다.

145) Webb, B.A. and Laycock, G. (1992) *Tackling Car Crime*. Crime Prevention Unit Paper 32. London: Home Office.

146) Laycock, G. and Tilley, N. (1996) Implementing crime prevention, in M. Tonry and D.P. Farrington (eds) *Building a Safer Society: Strategic Approaches to Crime Prevention*. Chicago, IL: University of Chicago Press.

147) 박현호(2009) 상계서.



<그림 6> 영국 클리브랜드 경찰이 활용하는 방법홍보 트레일러¹⁴⁸⁾

아. 주민/사법기관 협의회의 활성화

1982년 런던시 Lambeth Borough¹⁴⁹⁾에 설치된 지역사회와 경찰의 치안문제에 대한 협의기구인 지역주민경찰협의회(Community Police Consultive Group: CPCG)에서 찾을 수 있는데, 영국경찰은 전통적인 경찰(local beat bobby)과 지역사회와의 우호적이고 친밀한 관계에 기초하여 지역사회경찰활동(Community Policing)을 추진하고 있다. 지역주민경찰협의회 모임을 통해 경찰은 지역 당국과 주민들에게 지역의 범죄위험 환경요소 등 당면 현황을 알리고, 지역단체 및 지역주민들은 이에 대한 의견과 여타 범죄 및 무질서 문제에 대한 의견을 제시할 수 있는 기회를 갖게 된다. 영국경찰의 Community Policing의 성공적인 사례로 알려진 프로그램으로는, Humberside시의 경찰에 의하여 시행되었던 청소년범죄에 종합적 대책인 Grange Project와, 1979년에 Northumbria 경찰이 Felling과 Scotswood에서 방법장치의 개선을 통한 공영주택지역의 침입범죄 예방대책을 들 수 있다.¹⁵⁰⁾ 런던수도경찰청(MPS)의 경우 수도경찰위원회의 자금 지원을 받아 보다 공식화된 독립적인 주민공동체 포럼의 형태로 CPCG를 운영하고 있는데 연간 최소 5회의 민관 협의회의를 갖고 치안, 지역범죄안전, 범죄예방, 셉테드 등 현안에 대한 사법기관의 업무와 노력을 설명하고 주민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청취하는 워크숍, 컨퍼런스, 회의, 포럼 등을 시행하고 있다. 특히 3월에 가장 큰 규모로 총회(AGM)를 개최하며 수도경찰청장, 각 국장, 범죄경감파트너십 대표에게 범죄예방, 반사회적 행위 방지 등에 대해 질문하고 답변을 듣는 기회를 갖는데 회의 장소는 보통 시청이나 타운홀이며 참석자는 경찰 외에 주민대표, 일반 주민, 구청장, 시장, 지방

148) http://www.cleveland.police.uk/policing_cleveland/districts/middlesbrough/cprevtrailer_mboro.htm 참고

149) 우리의 군단위 행정기관과 유사

150) 박현호(2007) 전거서.

의회의원 등이다.¹⁵¹⁾

호주 시드니와 캐나다 오타와 등에서도 Police Community Consultative Committees라는 명칭으로 주민과 형사사법기관이 범죄안전과 범죄예방을 위한 관민회의 형태의 유사한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미국에서는 지역 별로 타운홀미팅을 통해서 경찰, 검찰 등 법집행기관과 시장, 주민들이 모여서 지역의 범죄 현안(범죄율의 최근 추세, 주요 범죄, 범죄예방 노력 등)에 대한 설명을 통해 범죄 관련 정보를 공유하고 이런 기회를 이용하여 주민들은 범죄 위험 환경이나 불안 요소에 대해 의견을 제시하고 셉테드를 통한 환경개선을 요구할 수 있다. 또한 사법기관은 자원방범순찰, 시민경찰 아카데미, 청소년범죄예방아카데미(Teen Academy) 등 주민들의 다양한 자원 봉사활동 참여활동을 소개하거나 독려함으로써 실제 지속적으로 주민참여가 자연스럽게 이루어지고 있다.¹⁵²⁾



<그림 > 셉테드 범죄예방을 위한 세계의 다양한 관민협의회의

151) http://content.met.police.uk/Article/Community-Police-Consultative-Group/1300001161496/1300001161496?scope_id=1257246764187

152) <http://patch.com/california/danville/town-meeting-address-crime-reduction-danville-san-ramon-0>

제5장 결론 및 제안

지금까지 1세대와 2세대 셉테드의 범위와 방법, 그리고 그 내용들을 구체적으로 살펴보았다. 지난 수십년 간 세계에서는 국제기구인 UN과 EU, 각 국가별로 셉테드 관련한 법규와 제도를 만들어 왔으며, 방법환경구축 시스템과 방법 관련 하드웨어 시설 면에서 국제적으로 표준화의 경향을 보여주고 있다. 안전에 대한 세계인들의 기본적인 욕구 증대로 인해 권장 사항이던 건축물의 방법시설기준들이 소방방재시설기준과 마찬가지로 점차 법적인 의무사항으로 나아가고 있는 것이다. 나아가 주택과 같은 건축물 자체에 대해 셉테드 시스템인 증 적용을 의무화하는 네덜란드 PKVW의 사례는 보다 진보된 형태의 규제화로 해석될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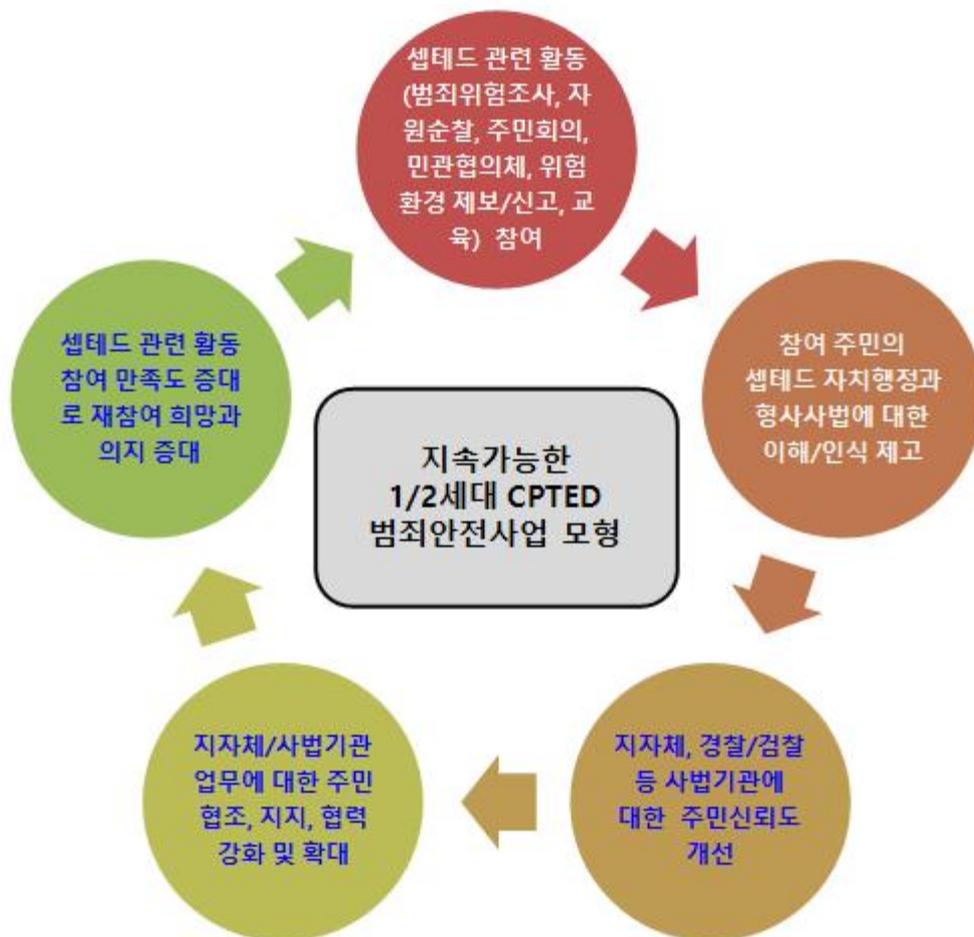
이밖에 주요한 시사점은 첫째, 전체적인 범죄예방의 모니터링과 자원 배분의 합리화를 기하기 위하여 덴마크나 싱가포르와 같이 범정부 차원의 국가범죄예방위원회를 설치·운영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점이다. 둘째, 중앙 정부에 범죄예방의 핵심 책임 부처나 기관을 단수 또는 복수로 지정 또는 설치하는 것이다. 복수의 기관이 파트너십으로 책임을 질 경우에는 기관 간의 수평적이고 유기적인 커뮤니케이션이 중요하다. 셋째, 범죄와 무질서 예방을 위한 민관협력 파트너십 거버넌스 체계를 마련하여 지식과 정보를 상호 공유하고 협의체를 마련하여 정기적으로 또는 수시로 의견을 청취하도록 한다. 넷째, 지역 별로 지역 커뮤니티 범죄예방 사업의 수범사례나 경험을 공유하기 위한 온오프라인 네트워크를 구축하여 운영한다. 다섯째, 다양한 스펙트럼의 주민이 참여하는 범죄위험환경 조사를 공식과 정례화하여 그 조사결과에 기초한 사업계획을 수립한다. 마지막으로 주민의 자원방법활동의 실효적 지원(교육훈련 지원, 보험, 장비, 복장 등)을 위한 법규를 마련하여 시행하는 것이다.

가. 범죄안전 사업의 성공 및 지속가능성 사이클

2세대 셉테드의 사례들은 건축물이나 공간 환경에 대한 물리적 변화나 조치만으로는 도시와 타운, 마을에서 발생하고 이슈가 범죄와 두려움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어떠한 가능성과 잠재력을 갖고 있으며, 반면 어떤 한계가 있어서 이를 극복하게 위해 다양한 공공 및 주민 이해관계자들이(stakeholders) 각자 그리고 함께 책임의식을 가지고 네트워크를 구축하여 공동 노력하기 위해 논의하고 참여하며, 조사·홍보 하고, 봉사하고, 서로 교육 및 학습하며, 실천해야 하는지를 여실히 보여주고 있다. 더불어 이러한 공동의 노력이 얼마나 체계적인 틀과 방법 그리고 내용을 갖추고 있어야 하는지에 대해서도 상세히 안내하

고 있다고 할 것이다.

<그림 >과 같이 이러한 주민들의 범죄예방의 물리적·사회적 환경조성예의 긍정적인 참여는 참여 주민의 셉테드 관련 자치행정과 형사사법에 대한 이해 및 인식을 제고하고 → 이는 지자체, 경찰/검찰 등 사법기관에 대한 주민신뢰도를 개선하며 → 지자체/사법기관의 업무에 대한 주민 협조, 지지, 협력을 강화 및 확대하고(법질서 준수 의식도 개선) → 셉테드 관련 활동 참여에 대한 만족도 증대로 재참여 희망과 의지가 증대됨으로써 지속가능한 1/2세대 CPTED 범죄안전사업 모형과 사이클(cycle)을 만들어 나가는 선순환 구조를 형성하게 되는 것이다.



<그림 > 1, 2세대 셉테드 및 범죄안전 사업의 성공 및 지속가능성 사이클

나. 한국형 주민커뮤니티 범죄예방 모형 제안

앞서 살펴본 많은 외국의 선진 사례들을 토대로 한국형 주민커뮤니티 범죄 예방의 모형을 제시하고자 한다. 이는 1세대 셉테드와 2세대 셉테드가 잘 조화된 셉테드일 수도 있고 UN범죄예방가이드라인에서 제시하고 있는 사회발전형 범죄예방이나 지역공동체 중심형 범죄예방 모형이 될 수도 있다. 다만 중요한 것은 2세대 셉테드조차도 물리적인 요소를 완전히 배제한 채 이를 논할 수 없기 때문에 1차적으로 물리적 요소(Hardware)와 비물리적 요소(Software)를 대략 구분하고, 2차적으로 단기, 중기, 장기 등 사업 기간 단위를 구분하며, 3차적으로 공간/지역의 규모에 따라 구분될 수 있는 한국형 주민커뮤니티 범죄 예방(CPTED) 모형의 틀(Framework)을 제시하면 <표 >와 같다.

<표 > 한국형 주민커뮤니티 범죄예방(CPTED) 모형의 틀

요소 기간	비물리적 요소(S/W)	물리적 요소(H/W)	공간단위
단기 (1년 내외)	<ul style="list-style-type: none"> 인식 제고를 위한 주민·공무원 교육훈련, 세미나/워크샵 개최 단기 셉테드 사업 예산 확보 협의체/운영위 구성 및 운영 범죄예방 전문가 자문 참여 지역자원순찰대 활성화 지원 시민법질서아카데미 기획 	<ul style="list-style-type: none"> 자연적 감시 환경 조성 접근통제 환경 조성 영영성 확보 환경 조성 국가표준, 전문단체표준에 의한 방법인증시설의 단기적 적요 범죄위험·취약 환경 조사 	<ul style="list-style-type: none"> 개별 주택 개별 상업건물 생활가로 골목길 소공원 어린이공원
중기 (2년 내외)	<ul style="list-style-type: none"> 지역 방법환경조성 매뉴얼 개발 참여형 범죄위험평가 및 안전 지도작성 지역특성 고려한 셉테드 로드맵 및 가이드라인 개발 공무원, 주민 등 셉테드 및 방법 교육훈련 프로그램 개발 셉테드 조례 제/개정 셉테드의 성과 평가조사 시민법질서아카데미 운영 	<ul style="list-style-type: none"> 지역 별로 특성화된 셉테드 환경 조성 중간 규모 지구의 방법 환경/시설 구축 범죄위험·취약 환경의 개선 시범사업 수행 및 성과 분석 	<ul style="list-style-type: none"> 소규모 주거단지 상업지구 중규모 공원
장기 (3년 이상)	<ul style="list-style-type: none"> 범죄예방의 '책임공유' 슬로건과 인식 확산 범죄예방 민관 파트너십 체계 구축 및 정착 범죄제보와 방법홍보 문화 확산 주민 자원방법활동의 제도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대단위지구의 방법 환경/시설 구축 범죄위험·취약 환경의 전면적 개선 지속가능한 셉테드 환경 구축 및 성과의 확산 지속적인 셉테드 시설과 	<ul style="list-style-type: none"> 근리주구 신도시, 뉴타운 개발 대규모 근린공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역 범죄예방 네트워크 구축 • 셉테드의 중장기 사업예산 확보 • 셉테드 담당 인력 채용 또는 자체 전문가 양성 및 확보 • 지역 셉테드 관련 통계관리체계 구축 	환경의 유지관리	
--	--	----------	--

단기사업은 1년 내외의 짧은 기간 동안에 실현이 가능한 사업 요소들로 구성되며 상대적으로 실천이 단기간 동안에 용이하고 가능하며 규모가 작은 공간/시설에 적용되거나 큰 예산이 소요되지 않는 사업들로 구성된다. 또한 갑작스런 지역의 퇴락이나 주거 환경 등의 악화로 시급하고 긴급하게 주민 커뮤니티셉테드를 시행해야 하는 상황에서도 단기사업이 필요하다고 볼 수 있다. 중장기 사업은 단기간에 실현이 곤란하거나 불가능한 사업요소들로 구성되고 상대적으로 실천이 장기간에 걸쳐서 가능하며 규모가 큰 공간/시설에 적용되거나 다소 많은 예산이 소요되는 사업들이다.

1년 내외의 단기사업 중 비물리적 사업으로는 인식 제고를 위한 교육훈련, 세미나/워크숍 개최, 단기 사업 예산 확보, 관련 협의체/운영위 구성 및 운영, 관련 사업에 전문가 참여 및 자문, 지역자원순찰대 활성화 지원, 시민법질서아카데미 기획 등이 있으며, 물리적 요소의 사업으로서는 자연적 감시 환경(공원 및 가로의 조명 및 조경 개선 등) 조성, 접근통제 및 타겟하드닝 환경 조성(주택단지의 차량 출입차단기 설치, 방범창호 설치 또는 개선 등), 영역성 확보 환경 조성(주택 지구와 공공 가로 간의 단차 확보 또는 바닥패턴 및 색채 구분 등), CCTV/보안등 등 관련 방범시설에 대한 단기적 개선, 범죄 위험·취약 환경 실태조사 등이 있다. 단기사업이 가능한 공간단위로는 생활가로, 연도형 가로, 골목길, 소공원, 어린이 공원 등이 있다.

2년 정도가 소요되는 중기사업 중 비물리적 사업으로는 지역특성 고려한 셉테드 로드맵 가이드라인 개발, 참여형 범죄위험평가와 안전지도 작성, 방범환경조성 매뉴얼 개발, 시와 구 공무원 및 사법기관 등 관계자 셉테드 교육훈련 프로그램 개발, 셉테드 관련 조례의 제정 또는 개정, 주민 커뮤니티 사업의 성과 평가조사, 시민법질서아카데미 운영 등이 있으며, 물리적 범위의 사업요소로는 중간 규모 지구(예 : 주거환경관리사업 등)의 방범 환경/시설 구축, 범죄 취약 환경의 개선 시범사업 착수 및 성과 분석 등이 있다. 공간 단위로 보면

중기사업 대상은 소규모 주거단지나 상업지구, 중규모 도시공원 등이 있다.

3년 이상이 소요되는 장기사업 중 비물리적 사업으로는 범죄예방의 ‘책임공유’ 슬로건과 인식 확산, 범죄예방 민관 파트너십 체계 구축 및 정착, 범죄제보와 방법홍보 문화 확산, 주민 자원방범활동의 제도화, 지역 범죄예방 네트워크 구축, 중장기 셉테드 사업예산의 확보, 셉테드 전담 공무원의 채용 또는 자체 전문가 양성과 확보, 지역 셉테드 관련 통계체계 구축 등이 있다. 하드웨어 사업으로는 광고/판교 신도시와 같은 대단위 지구의 방범 환경 및 시설의 시공과 구축, 기축도시 범죄 위험·취약 환경의 전반적인 수선과 개선, 지속가능한 셉테드 환경체계의 구축, 지속적인 셉테드 시설물의 유지관리체계 확립 등이 있다. 장기사업 대상 단위로는 근린주구, 신도시, 뉴타운 개발과 대규모 도시공원 등이 있다. 사업 지역에서 어떠한 유형의 셉테드 사업을 어디에 어떤 문제를 대상으로 시행할 것인지는 해당 자치단체의 주어진 예산, 주민의 인구학적 특성, 인력, 장비 등 지역의 자원 여건과 특성에 따라서 결정되어질 것이나 가급적 단편적이기보다 전체적인 커뮤니티 셉테드의 체계를 완성하는 방향으로 사업이 종합적으로 추진되는 것이 바람직스럽다.

한편 자치구 별로 마을 단위 셉테드 사업을 추진할 경우에 로드맵은 사업 기간에 관계 없이 일정한 프로세스를 거쳐서 실천될 수 있다. 즉, 사업 운영은 유럽표준 EN14383과 한국표준 KS A 8800에서 제시하는 셉테드 표준 실행 프로세스(아래 <표 > 참조)가 제시하는 바와 같이 구체적으로 보면 먼저 구청 또는 동/마을 단위에서 사업을 추진할 주체를 설정하고 셉테드 사업을 공표 및 홍보한다. 두 번째로는 각 구청의 가칭 생활안전과, 관할 사법기관 그리고 가칭 안전도시구축팀이라는 워킹그룹(working group)을 조직하여 파트너십 체계를 형성하여 마을 범죄 위험 및 취약 요소를 조사하고 지역범죄환경 실태를 조사함으로써 주민의 안전니즈를 반영하고자 노력한다. 사업기획단계에서의 주민, 특히 노인, 여성들의 참여를 독려하여 세부 사업 목표를 수립하고 목표 달성의 정량적/정성적 지표를 함께 작성한다.

세 번째 단계에서는 가칭 안전커뮤니티추진협의회를 구축하여 마을 단위 셉테드 사업을 심의 및 협의하되 범죄안전커뮤니티 사업 가이드라인도 검토하고 이를 여성/아동을 포함한 폭넓은 이해관계인들과 협의를 한다. 네 번째 단계에서는 각 구청의 생활안전과, 주민단체 및 관계 기관, 관할 사법기관이 협력하여 지역커뮤니티 사업을 집행하고, 물리적/비물리적 사업 내용을 추진하면서

교육훈련 서비스 제공을 통해 주민 전문가를 육성함으로써 사업 추진의 원활한 협력 분위기를 조성한다. 다섯 번째 단계인 사업평가 단계에서는 안전커뮤니티추진협의회, 관할 사법기관, 자치구 그리고 만약 가능하다면 시에 의뢰하여 해당 지역에서의 안전커뮤니티 사업을 평가하면서 주민 안전만족도를 조사하고 공식 범죄통계 및 피해 경험 서베이를 통해 그 성과를 분석한 후 성과가 우수한 마을에 대해서는 시상하고 사업 예산을 위한 인센티브나 보조금을 지급하는 방법이 있다.

마지막으로 자치구, 관할 사법기관, 나아가 중앙정부 부처인 법무부, 국토교통부, 행정자치부에서는 차기 셉테드 사업에 평가 결과를 반영하거나 평가 결과에 의한 일정 사업 사이클(기간)을 설정할 수 있으며 지역 범죄안전커뮤니티 사업 우수사례를 시 전체 도시 또는 전국 단위로 확산시켜 나갈 수 있다.

<표 > 한국형 주민커뮤니티 범죄예방(CPTED) 프로세스 모형

주요 업무	사업 운영	관련 조직	고려사항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업을 추진할 주체를 설정 • 셉테드 사업을 공표 및 홍보 	사업주체 설정 및 사업 공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시청/구청/마을 단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업기간(장단기) 고려 • 물리적 요소와 비물리적 요소의 조화와 균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역 범죄 취약요소 조사 • 지역 범죄환경 실태조사 • 주민의 안전니즈 반영 • 사업기획단계에서의 주민 참여 • 세부 목표 수립 및 목표 달성의 정량적/정성적 체크리스트 작성 	사업기획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각 구청/마을의 (가칭)생활안전과 • 지역 사법기관 • 지역안전공동체 구축팀(워킹그룹) 구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향후 저항이나 반대를 최소화 하기 위해 이해관계자의 참여를 최대화 • 지적과 비판 요소에 대한 적극적 의견 수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주민공동체 사업 심의 및 협의 • 범죄안전커뮤니티 사업 가이드라인 검토 및 협의 	사업심의 및 협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가칭)안전커뮤니티추진협의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업에 대한 주민 협의를 위한 공청회 개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범죄안전커뮤니티 사업의 시행 • 물리적/비물리적 사업 내용의 추진 • 주민 전문가 육성 	사업집행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시청/구청/마을의 (가칭)생활안전과 • 주민단체/기관 공동 • 관할 사법기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업추진을 위한 인력, 예산, 장비, 시설 확보 방안 고려 • 전문가 육성을 위한 강사 풀 구축 및 교재 마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범죄안전커뮤니티 사업 평가 	사업 평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시청 및 구청 • (가칭)안전커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범죄피해와 두려움 조사의 절대적 필요성과 중요성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주민 안전만족도 조사 • 공식 범죄통계 및 피해경험서베이 결과 분석 • 성과 우수 커뮤니티 시상 		<p>니티협의회</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관할 사법기관 	<p>대한 이해</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공식 통계의 단점과 범죄 암수의 이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차기 사업에 평가 결과의 반영 • 평가 결과에 의한 일정 사업 사이클(기간)의 설정 • 범죄안전커뮤니티 사업 우수사례의 확산 	<p>사업 환류 및 개선</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시청, 구청, • 관할 사법기관 • 수범사례 제시할 중앙정부(법무부, 국토부 등) 부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수범사례의 공유를 위한 웹사이트 구축을 통한 보급, 확산

[부록] ‘주민 커뮤니티 셉테드’ 성공사례

1. 케이스 1 : 영국 리버풀의 골목게이트(Alley-gating) 설치 사업¹⁵³⁾

가. 사업 목표

골목게이트 설치하는 주택가 후면 골목길(샷길)에서의 잠재적인 범죄와 무질서(침입절도, 쓰레기 무단투기, 마약 등) 기회를 줄이기 위해 해당 샷길의 입구나 출구 쪽에 거주자 공용 게이트를 설치하여 출입을 제한하는 사업으로서 영국에서 범죄와 두려움을 낮추는데 효과가 좋아서 유행하던 셉테드 프로그램이다. 리버풀과 같이 전형적인 산업도시에 있는 주택의 후면을 따라 만들어진 좁은 골목길이 쓰레기 수거 등의 편의를 위해 과거에 조성된 바 있으나 이 때문에 그 골목이 가시성이 약하여 주택침입 범죄에 취약점으로 지적되어 골목게이트 설치의 주된 대상으로 선정되었다.

나. 사업 내용

리버풀에서 게이트를 설치하는 계획 기간은 약 1년이였다. 설치로 인해 영향을 받는 모든 주민들의 동의서를 받는 것이 중요한 단계이다. 이 골목길이 주민의 길거리 이동의 자유를 심하게 침해할 경우에는 게이트 설치가 금지된다. 또한 시청과 그 길이 사유지일 경우 지주의 동의도 받아야 한다. 다만 시청이나 경찰 등 사법기관은 골목게이트 설치에 대한 이웃 간 분쟁에 직접 개입할 수는 없다. 따라서 주민 간 협의와 커뮤니티의 참여(community involvement)가 이 골목게이트 프로그램의 지속가능한 성공을 보장하는데 핵심 요소이다. 다만, 청결한근린미환경법(Clean Neighbourhood and Environment Act 2005)이 지역 별로 게이트가 필요한 지를 결정하기 위한 커뮤니티 참여와 주민 참여의 절차를 명쾌히 규율하고 안내하게 되었다. 즉, 동의서에 서명하도록 주민 간 어떻게 의사소통을 하고, 일정한 비율의 비용도 부담할지, 상시 게이트를 통제할지 아니면 하루 중 일정시간만 통제할지, 어떤 디자인의 게이트로 할지를 결정하는 방법 등을 제시해주고 있다.

이때 사법기관은 특히 골목게이트가 필요한 지역을 선정하는데 결정적 역할을 하는데 그 이유는 골목길 별로 범죄와 반사회적 행위가 발생한 시공간적 통계와 데이터를 확보하고 있고 이러한 데이터를 갖고 게이트 셉테드 사업이

153) Alley Gating In The Community.

http://www.rbwm.gov.uk/public/meetings_070322_cab_alleygating_appendixB.pdf

필요한 지역의 주민들과 만나 협의하고 설득하는 것이 긴요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이 사업을 위해서는 주민, 지자체, 사법기관으로 구성된 지역범죄경감파트너십(Local Crime Reduction Partnership) 협의체의 조직과 역할에 의존하게 된다.

<다양한 형태의 골목게이트와 주민 공동체 참여>



2003년 5월까지 약 15만의 인구가 사는 리버풀의 주거지역에 10년간 5,700개의 골목게이트를 설치하면서 약 천만 파운드(약 200억 원)의 예산을 투입하였다. 이후 2년 간 100곳을 추가하면서 백30만 파운드를 추가로 투입할 예정이다.

다. 사업 성과

Bowers, Johnson, and Hirschfield (2004) 연구에 의하면 10년간 침입범죄는 37%로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감소를 보였다.¹⁵⁴⁾ 약간의 범죄전이(풍선효과)를 보인 곳도 있으나 전체적으로 약 875건의 침입범죄를 예방하는 등 범죄감소 효과에 비해 전이는 미미한 편이었다. Rachel Armitage & Hannah Smithson(2007)¹⁵⁵⁾의 연구에 의하면 골목게이트 구역 내의 188명, 그리고 게이트 미설치 구역 내 144명의 주민 설문 분석 결과 아래 <표>와 같이 미설치 구역 주민에 비하여 설치 구역의 주민이 주간, 특히 야간에 안전감이 2배 가량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반대로 야간에 뒷골목에서 느끼는 불안감은 미설치 구역 주민이 두 배 가까이 높게 나왔다.

154) <https://www.crimesolutions.gov/ProgramDetails.aspx?ID=135>

155) Armitage, Rachel and Smithson, Hannah (2007) Alley-gating revisited: the sustainability of resident's satisfaction. Internet Journal of Criminology.

<골목게이트 설치 지역과 미설치 지역 주민의 범죄안전감 인식 차이>

Table 2: Feelings of safety in gated versus non-gated areas

	Alley-gated	Non-Gated
Percentage who felt area in which they live was a safe place	80% N = 150	<u>70%</u> N = 80
Percentage of respondents who felt safe at home in the day	99% N = 186	99% N = 113
Percentage of respondents who felt safe at home in the evening	95% N = 179	88% N = 100
Percentage of respondents who felt safe at home at night	90% N = 169	81% N = 92
Percentage of respondents who felt safe on their street in the day	95% N = 179	91% N = 104
Percentage of respondents who felt safe in their back alley in the day	87% N = 164	<u>59%</u> N = 67
Percentage of respondents who felt unsafe in their back alley during the night	24% N = 45	43% N = 49

Note: Figures underlined revealed a statistically significant difference between the gated and non-gated figures, <0.05%.

지난 1년 간 파손행위나 쓰레기 투기 등의 무질서 행위도 설치구역 주민은 36%만이 목격했는데 미설치 구역 주민은 66%나 응답하였다. 더욱이 게이트 설치로 인해 설치 구역 주민들이 불편이나 조명 방해, 구역의 요새화나 낙인 이미지 등의 부정적 인식도 조사했는데 응답 결과를 볼 때 큰 문제로 인식되지 않았다. 오히려 게이트 설치로 골목이 매우 안전해졌으며, 청결해졌고, 골목의 이미지가 개선되었으며, 주민들이 골목을 유지관리하기 용이해졌다는 응답이 지배적이었다. 나아가 2002년 설치 당시 설문조사하고 나서 4년 후에 재설문 응답에서는 긍정적 인식이 지속 및 강화되는 경향을 보였다.

<골목게이트 설치 4년 후 주민의 범죄안전감 인식의 지속성>

Table 4: Sustainability of feelings of safety in gated areas

	Alley-gated 2002	Alley-gated 2006
Percentage of respondents who felt safe at home in the day	91% N = 145	99% N = 186
Percentage of respondents who felt safe in their home in the evening	90% N = 143	95% N = 179
Percentage of respondents who felt safe in their home at night	87% N = 138	90% N = 169
Percentage of respondents who felt safe in the back alley in the day	<u>83%</u> N = 132	<u>87%</u> N = 164
Percentage of respondents who felt safe in the back alley at night	28% N = 45	48% N = 90
Percentage of respondents who felt safe on the street surrounding their home in the day	85% N = 135	95% N = 179
Percentage of respondents who felt safe on the street surrounding their home in the evening	70% N = 111	84% N = 158
Percentage of respondents who felt safe on the street surrounding their home at night	56% N = 89	60% N = 113

Note: Figures underlined revealed a statistically significant difference between the gated and non-gated figures, <0.05%.

2. 케이스 2 : 영국 중부 Mansfield 주상복합지구 환경개선사업¹⁵⁶⁾

라. 사업 목표

영국 Nottingham주 맨스필드에 소재한 Ladybrook 주상복합지구에서 특히 상가 뒷 편 주차구역에서 밴덜리즘(파손행위)과 청소년들에 의한 쓰레기통 방화 등의 위협이 끊이지 않는 문제가 발생하여 왔다. 이로 인해 지역 주민들은 그 주차장 사용에 많은 불안을 느끼고 그 상가 이용을 꺼리면서 지역경제가 악화되고 해당 지역도 쇠락하게 되었다. 이에 그 지역 상인과 주민들이 주축이 되어 3개년의 상가 범죄예방을 위한 환경개선 및 안전도 향상 프로그램을 시작하게 되었다.

<맨스필드 구청의 지속가능한 공동체 전략에서 최우선 순위인 범죄안전>



www.mansfield.gov.uk/cs

Mansfield District Council

Draft Mansfield Sustainable Community Strategy (SCS)

3.2 The overarching vision is further expanded in the Mansfield Sustainable Community Strategy seven priorities for the district as:

- **A safer Mansfield** with reducing crime and anti-social behaviour
- **Children and young people** that achieve their potential
- **Economic prosperity** with a prosperous and thriving economy
- **Our town centre** that is vibrant and successful
- **A healthier Mansfield** with good health and well-being for all
- **Stronger communities** that are confident and content
- **Environmental sustainability** leading to a greener Mansfield.

3.3 The Mansfield Area Strategic Partnership is the district's Local Strategic Partnership (LSP). It brings together leaders from the public, private, business, community and voluntary sectors to establish priorities for joint action and develop a long-term strategic framework for the district (the Mansfield Community Strategy)

마. 사업 장소

레이디브룩 지구는 지역재생기금(Neighbourhood Renewal Fund) 지원을 받아 2001년에 지정된 맨스필드 지속가능한 공동체 전략(Sustainable

¹⁵⁶⁾ 출처: Mansfield District Council(2005) Case Study: East Midlands Designing Out Crime, European Crime Prevention Network (EUCPN)

Community Strategy) 중 최우선순위인 ‘범죄와 반사회적 행위를 경감하는 보다 안전한 맨스필드(A safer Mansfield with reducing crime and anti-social behaviour)’를 이행하기 위해 민관(공공기관, 주민, 기업, 자원봉사단체) 협력 범죄안전 사업항목과 지역의 중장기전략 프레임워크를 개발하는 지역전략파트너십(Local Strategic Partnership)이 설립되었다. 사업 지구는 50년대에서 70년대 사이에 조성되어 3천 가구에 약 7천 명의 주민이 거주하고 있으며 대표적인 빈곤지역 중의 하나이며 실업률로 상대적으로 높은 편이었다.

 **지역재생기금(Neighbourhood Renewal Fund)이란?**

지역재생기금은 영국 부총리실에서 2000년 7월에 시작한 낙후지역재생을 위한 지원금/교부금 사업이다. 이 기금은 공모를 통해 심사를 거쳐 잉글랜드 전역 88개의 낙후 지역에 민관지역전략파트너십(Local Strategic Partnership)에 할당되었다. 지역재생의 중요한 축의 하나는 범죄율을 낮추는 것이다.

바. 사업 방법

레이디브룩은 시청에서 소유하는 10개의 상가주택으로 구성되어 있고, 2002년에 그 주상복합지구는 식료품점, 우체국, 약국, 제과점, 미용실, 채리티샵, 카페 등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구청의 지역관리팀에서 유지관리하는 커뮤니티의 중심지구이다. 그런데 지난 수년 간 이 상가는 이용객들이 급감하면서 영국의 유령타운(Ghost Town Britain) 중의 하나로 전락하게 되었고 지역 주민들도 특히 야간에 쇼핑을 하러 가기가 무서운 곳으로 인식되었다. 이에 2002년에 상인들은 수입이 급감하면서 구청에 강력한 민원을 제기하였고 지역재생팀이 조사를 시작하였다. 이 상가를 재건해야 한다는데 동의하였고 이를 위해 구청, 시청, 경찰이 레이디브룩상가파트너십(LETSGO)이 결성되었다. 동시에 지역관리팀을 통해 지역 주민들의 적극적인 참여로 액션플랜을 같이 짜기 시작하였다.

▶ 단계 1

구청, 지역재생기금, 그리고 내무성의 범죄예방기금(CMF) 등을 합하여 총 2억원 정도의 ‘재건프로젝트’가 시작되었다. 이것으로 모든 상점에 방범셔터가 설치되고, 상가 보안게이트와 펜스가 설치되었다. 그리고 상가 뒤 2곳의 주차장에는 첨단 보안등을 설치하였다. 모든 상인들이 보안게이트의 열쇠를 갖고 게이트의 개폐는 상인들 및 2명의 주민들이 관리하였다. 또 지역의 한 기업

에서 일부를 후원하여 약 6천만원의 설치비와 매월 유지관리비가 소요되는 CCTV시스템을 설치하였다. 구축된 CCTV시스템은 구청이 소유하게 되었고, 매월 유지비는 상가소유자들이 지불하기로 하였다. 이 범죄경감 파트너십 사업에서 여러 가지 쟁점들이 있었는데 하나하나 학습의 기회가 되었다. CCTV의 녹화 및 저장시스템은 지역도서관에 배치하였고, 정보보호관이 배치되어 도서관 직원과 함께 정보관리를 하기로 하였고, 주민들을 초대하여 관제실을 참관토록 하는 행사를 하였다. 이 레이디브룩상가파트너십의 1단계 사업 이후 설문을 한 결과 지역 주민들의 42%가 매일 이 상가를 이용하고 있고, 54%는 매주 2~5회 상가를 이용 중이라고 답하였고 84%는 더 많은 가게가 들어와야 한다고 응답하였다. 또한 50%의 응답자는 1단계 사업으로 상가를 더 자주 이용하게 될 것이라고 답하였다.

▶ 단계 2

2003년 2단계에서는 중앙정부의 지역범죄안전 공모사업(LSP, SRB)로 10만 파운드, 지자체 매칭펀드 등 약 8만 파운드가 확보되어 방법 셔터와 보안게이트가 추가로 설치되었다. 내부 디자인팀을 구성하여 이 외에도 다양한 셉테드를 추진하였는데 방법시설뿐만 아니라 장애인 램프, 벤치, 쓰레기통, 조명등, 차양 등을 수선하거나 새로 설치하였다. 지역 상인들도 일부는 스스로 수선하는 노력을 병행하였다.

▶ 단계 3

2004~2005년 사이에는 노팅햄주정부의 공모 사업에 선정되어 4만 파운드를 지원받아 상가 입구에 공공예술품을 설치하여 보다 아름다운 미관을 갖는 지역으로 개선하였다. 이러한 지역의 성공적인 주상복합지구 환경 개선을 자축하기 위하여 노동절에 마을페스티벌을 개최하였다.

사. 참여 기관 및 단체

구체적인 참여기관은 지역범죄안전파트너십협의체(Local Partnership Against Crime), 상인회, 구청 담당 부서들(도시디자인팀, 지역재생팀, 기술지원팀 등), 맨스필드 경찰, 지역의회, 지역관리팀 등이었다.

아. 성과

해당 주상복합지역에 방문객의 수가 설문조사에 의하면 2003년과 2004년 사이에 보행자는 190% 증가하였고, 차량 방문자는 164% 증대하였다. 상가의 점포는 공실률이 제로화 되었고, 매출은 반전되기 시작하였다. 상가 후면 파손행위는 완전히 중단되었고, 주차장 이용자들의 만족도가 획기적으로 개선

되었다. 맨스필드 경찰에 의하면 청소년들의 비행적 행동도 개선되었다고 한다. 지역관리팀은 그 상가에 자문센터와 주민회의실을 설치하였고 30여명이 지역 주민 자원봉사자들이 상시적인 자문과 회의, 봉사활동을 수행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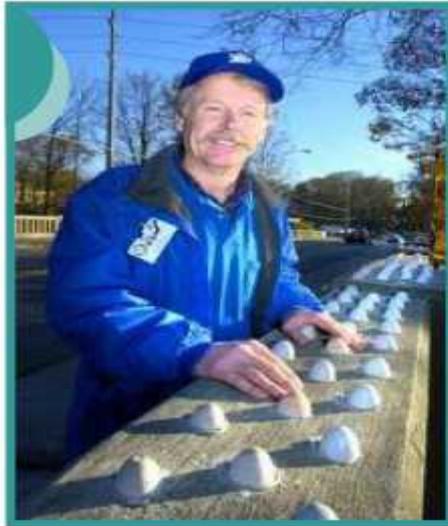
3. 케이스 3 : 미국 신시네틱의 케네디하이츠 지역 마약거래 퇴치¹⁵⁷⁾

2005년에 Kennedy Heights 파트너십팀은 케네디에버뉴와 우드포드가의 마약 거래 범위에 대응하여 경찰, 시청 부서들과 함께 마약거래의 핵심 근거지가 된 한 교각의 환경디자인을 개선하는 프로젝트를 시행하여 마약거래활동을 감소시켰다. 구체적으로 파트너십팀은 마약딜러범들이 마약을 숨겨 놓던 케네디에버뉴교의 금 간 곳을 봉합하고, 교각 하부는 아예 접근을 차단하기 위해 펜스를 둘렀다. 나아가 플라스틱으로 된 이스터 계란 형틀에 콘크리트를 부어서 교각 난간 위에 강력하게 부착시킴으로써 마약사범들이 앉기 편한 평평한 표면 구조의 그 난간 위에 앉아서 지나가는 차량의 ‘손님’들에게 마약을 판매하던 환경을 크게 변화시켰다. 즉, 뽀족한 계란처럼 튀어 나온 그 콘크리트 조각들로 인해 더 이상 그 다리난간 위에 앉아서 마약을 팔지 못하게 된 것이다.

< 마약사범들의 마약 판매를 억제하도록 설계하고 신호를 표시함>



157) 출처: Mansfield District Council(2005) Case Study: East Midlands Designing Out Crime, European Crime Prevention Network (EUCPN)



"King of the Bumps" Ben Pipkin showcases his innovative concrete eggs designed to deter loitering on the Kennedy Avenue Bridge.

그러나 1년 후에 다시 문제지향경찰활동(Problem Oriented Policing) SARA 모델¹⁵⁸⁾을 활용하여 범죄와 무질서 문제를 해결하는 프로세스를 크게 'Scanning(조사단계)→Analysis(분석단계)→Response(대응단계)→Assessment(성과평가단계)' 등 네 단계로 구분하여 이 문제가 지속가능성 있게 개선되어 유지되고 있는지를 먼저 조사하였다.

■ Scanning(조사단계)

- 케네디에버뉴교의 방범환경설계 조치 1년 후에는 인근에 또 다른 문제를 야기하는 풍선효과가 발생하였다. 즉 모퉁이 주택이 압류되어 빈집이 되자 주민들은 케네디와 진슬 에버뉴의 교차로 인근에 마약거래가 증가되는 추세를 관찰하게 되었다.
- 파트너십팀은 또한 근처의 아파트단지에서 119응급신고가 경찰이 당황스러울 정도로 급증하는 것을 확인하였다.

■ Analysis(분석단계)

- 분석을 위해 CPTED 서베이를 실시하였고 파트너링센터에서는 응급신고를 통계를 조사하였다.
- 분석 노력을 통해 총알구멍이 생긴 가로 표지판을 교체하고, 자원봉사자에 의한 주택가 청소, 공공장소에서 마을주민행사 개최, 집 주인들을 설

158) 문제지향경찰활동은 범죄와 무질서가 발생하는 근본원인을 조사하고, 그에 대한 대안을 제시하는 것을 중요시한다. 이와 관련하여 Eck와 Spelman은 'SARA'모델이라 부르는 문제해결절차를 미국 버지니아주의 뉴포트 뉴스 경찰국에 적용하여 그 효과를 검증함으로써 이 SARA 모델이 문제지향적 경찰활동의 핵심적 요체로 정착되게 만들었다. SARA는 문제를 해결하는 과정을 크게 조사단계-분석단계-대응단계-평가단계 등 네 단계로 구분하여 각 단계를 의미하는 영어단어의 첫글자를 조합한 것이다.

특하여 공가 상태의 주택이 범죄자들의 마약 은닉이나 거래 장소로 악용 되지 않게 경찰이 수시로 주인 허가 없이 해당 공가를 불시점검을 위해 진입하는 것에 대한 동의서 확보, 시민자원순찰의 확대 등이 해결책으로 제안되었다.

■ Response(대응단계)

- 케네디하이츠 파트너십팀은 해당 지역의 가로에 합법적인 활동이 많아지도록 하는데 최대 노력을 기울였다. 케네디하이츠의 'Nights Out'이라는 야외 지역미팅들은 시민과 사법기관이 함께 모여서 일하는 기회를 만들었고, 시민순찰대(Citizens on Patrol)의 도보순찰활동은 규칙적인 조직적 범죄 감시 기회를 증대시켰다.
- 지역주민 대표 한 명은 매주 'Bright Walks'라는 도보투어그룹의 도보순찰 활동을 조직하였고 이 케네디와 진슬 에버뉴의 교차로 주변을 꼭 살펴보는 역할을 하였다.
- 지역경찰과 파트너십팀 멤버 간의 회의 결과로 집주인들은 마약거래를 하던 일부 세입자를 축출하기에 이르렀다.
- 지역경찰이 수상할 때는 주인 허가 없이 수시로 해당 주택에 진입하여 살펴볼 수 있도록 집주인들이 동의서에 서명하였다.
- 아파트 주민들도 자신들의 임대한 주택에서 마약거래를 방지할 수 있는 파트너십 전략에 대해 교육을 받았다.
- 신시네티경찰은 학교에서 등하교할 때 학생들이 마약거래 장소에서 벗어나도록 할지를 고민하다가 학생들에게 교복 착용을 의무화하여 어슬렁거리는 수상한 건달들과 쉽게 구분되도록 하였다.

■ Assessment(성과평가단계)

- 이러한 조치 후 관찰을 한 결과 마약거래가 해당 지역에서 감소하였고 파트너십팀은 주민들이 보다 안전감이 증대하였음도 확인하였다. 이를 통해 파트너십팀은 향후 2년간 추가로 2개의 마약소굴 지역을 이러한 방식으로 소탕하기로 계획하였다. 다른 문제지향경찰활동은 지속하되, 주민들의 블록감시(Block Watch)를 통해 민간 주택에 누군가가 마약을 은닉하는 등의 문제를 발견하면 경찰에게 즉시 신고토록 하였고 주민들이 보다 강한 공동체를 구축하고 공공장소에 대한 주인의식도 강화하기 위한 노력도 지속하기로 하였다.

<범죄위험지역에서 Kennedy Heights Nights Out 행사를 하고 시민순찰대를 모집하는 파트너십팀>

